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정책방안

책임연구원: 김송이(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김보람(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함께 그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노동 경험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청소년 노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정책들은 청소년이 노동을 접하는 과정이나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문제, 그 해결 방안이 성별이 따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서울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성별 통계 구축,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및 추진체계 마련 등 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와 FGI, 자문회의 및 토론회에 참여 해주신 청소년분들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Contents

I 서론 _ 0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8
1. 문헌연구	8
2. 2차 자료 분석	8
3. 설문조사	9
4. 초점집단면접(FGI) 실시	9
5.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10
6. 토론회	11
제4절 연구 추진체계	12

II 연구 배경 _ 13

제1절 주요 개념 정리	15
1. 청소년	15
2. 청소년/년의 연령범위	16
3.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17
제2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	19
1.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연구	19

2.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영향에 관한 연구	21
3.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22
4. 선행연구의 한계	24
제3절 왜 ‘청소년’에 주목하는가	28
1. 젠더 관점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	28
2. 청소년/년(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의 필요성	30
제4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 현황 분석	32
1.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의 기본 방향 분석	32
2.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세부 정책 내용 분석	41

III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과 특성 _ 57

제1절 분석자료 개요	59
1. 분석자료 개요	59
2. 분석자료의 일반적 현황	62
제2절 청소년/년의 성별 노동 실태	64
1. 성별 아르바이트 업종 현황	64
2. 성별 근로조건 현황	66
제3절 청소년/년의 성별 노동 경험 특성	74
1. 아르바이트 동기와 수입 사용처에서의 성별 차이	74
2. 아르바이트 영향력 및 만족도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76
제4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79
1. 주요 결과 요약	79
2. 기존 자료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조사 방향 논의	80

IV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경험과 실태 _ 83

제1절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실태 85

- 1. 설문조사 개요 85
- 2.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89
-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0

제2절 서울시 청소녀의 노동 경험과 그 맥락 134

- 1. FGI 개요 134
- 2. 서울시 청소녀의 일 경험 142
-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69

V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방안 _ 173

제1절 정책 기본 방향 175

제2절 정책 목표 179

제3절 세부 정책 과제 181

- 1.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81
- 2. 청소녀 일자리 질 개선 188
- 3. 효율적인 청소녀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01

참고문헌 _ 207

영문초록(Abstract) _ 211

부 록 _ 213

표 목차

■ 표 II-1	청소년/년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	16
■ 표 II-2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중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	33
■ 표 II-3	2013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중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	35
■ 표 II-4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서울시)	35
■ 표 II-5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중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	36
■ 표 II-6	청소년/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 방법	41
■ 표 II-7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현장 관리·감독 주체	44
■ 표 II-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현황	46
■ 표 II-9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현황	47
■ 표 II-10	노동인권교육 방법	48
■ 표 II-11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내용	49
■ 표 II-12	교사 대상 사이버 교육 내용	50
■ 표 II-13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방법	53
■ 표 III-1	분석자료 개요	61
■ 표 III-2	분석자료의 일반적 현황	63
■ 표 III-3	성별에 따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종류(전국 현황)	64
■ 표 III-4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와 일일 근로시간	66
■ 표 III-5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67
■ 표 III-6	성별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아르바이트 청소년/년 비율	68
■ 표 III-7	성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70
■ 표 III-8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현황	70
■ 표 III-9	성별에 따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부당노동 실태	71
■ 표 III-10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동기	74
■ 표 III-11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영향력 인식(전국 현황)	76
■ 표 III-12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영향력 인식	77
■ 표 III-13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만족도(전국 현황)	78
■ 표 IV-1	설문조사 개요	86
■ 표 IV-2	설문조사 내용	87
■ 표 IV-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8

Table Contents

■ 표 IV-4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91
■ 표 IV-5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무	93
■ 표 IV-6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94
■ 표 IV-7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96
■ 표 IV-8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및 일수	98
■ 표 IV-9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수준	100
■ 표 IV-10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제출·작성 여부	104
■ 표 IV-11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여부	106
■ 표 IV-12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경험	110
■ 표 IV-13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정노동 실태	114
■ 표 IV-14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정노동의 요인	115
■ 표 IV-15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십대여성으로서 힘든 점	117
■ 표 IV-16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지속 의향 및 해당분야 구직 의향	119
■ 표 IV-17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중단 요인	120
■ 표 IV-18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122
■ 표 IV-19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경험 여부 ..	123
■ 표 IV-20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129
■ 표 IV-21 ■ FGI 진행 개요	135
■ 표 IV-22 ■ 연구 참여자 특성	136
■ 표 V-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194
■ 표 V-2 ■ 청소년을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안)	196
■ 표 V-3 ■ 알바천국의 구인정보 모니터링 관련 정책 내용	200
■ 표 V-4 ■ 2014년 서울시 주요 부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사업 현황 및 계획 ..	201

그림 목차

■ 그림 II-1 ■ 「근로기준법」상 근로가능 연령	17
■ 그림 II-2 ■ 교내 알바신고센터 운영 시스템	43
■ 그림 III-1 ■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업종 분포	65
■ 그림 IV-1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형태	99
■ 그림 IV-2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한달 평균 소득 분포	102
■ 그림 IV-3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한달 평균 소득	102
■ 그림 IV-4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부당경험에 대한 대응 방식	107
■ 그림 IV-5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산재 경험 및 대처방법	108
■ 그림 IV-6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성희롱 피해 유형	112
■ 그림 IV-7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	112
■ 그림 IV-8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현 정책에 대한 효과 인식	127
■ 그림 V-1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추진체계	178
■ 그림 V-2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목표 도출 체계	180
■ 그림 V-3 ■ ‘청소년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182
■ 그림 V-4 ■ 알바증개사이트 구인정보 예시	199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년기의 노동 경험과 맥락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다르게 나타난다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성별에 따라 상이한 접근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됨.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이 또래 남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시작된 연구임.
- 선행연구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들은 나이, 계층 등의 사회문화적 장벽과 편견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 드러남.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년들이 경험하는 나이, 계층 등의 사회문화적 장벽은 남성, 여성이라는 젠더-섹슈얼리티와 무관하게 나타나지 않음(김혜진, 2009; 윤선미·이나영, 201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 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존재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별화된 특수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가정임. 그러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청소년’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어 남성 청소년과 다르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과 맥락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성별화된 환경과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 어떠한 정책 방안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분석
- 선행연구 및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과 특성 분석
- 설문조사와 FGI를 통한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실태 논의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파악과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현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 분석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젠더 관점의 필요성 논의,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조사 방향 구성
- 2차 자료 분석
 - 분석자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2007년), 한국청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2007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2013년)
 - 분석목적: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 및 특성 고찰
- 설문조사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 거주 만 13~18세(대학생 제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
 - 2014년 7월 24~8월 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11명을 포함하여 총 544명의 청소년이 설문에 참여

□ 초점집단면접(FGI) 실시

-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노동 맥락과 경험, 노동과정에서 나타는 젠더, 계급 등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15명과 십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이십대 여성 3명 대상으로 FGI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4. 연구결과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성별 현황과 특성

- 젠더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성인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와 유사하게 직종, 근로실태, 동기, 아르바이트 만족도 등에서 남녀청소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특히 임금수준,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사회보험가입을 등에서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이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남. 그리고 아르바이트 동기나 임금의 사용처, 아르바이트에 대한 개인적 인식 등에서 우리 사회의 성별화된 사회화 과정이나 여성‘성’, 남성‘성’을 규정하는 인식들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실태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청소년들은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카운터와 서빙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평균 시급은 5,126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5,210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함. 근로계약서 서면체결은 44.9%에 불과하였고, 약 20%의 청소년들은 초과수당 미지급, 강제조퇴 또는 업무중단, 임금체불 등의 부당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FGI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더욱 심각하게 부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와 FGI에서 모두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노동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령 청소년들은 남성에 비해 부족한 일자리, 동일 업종 내에서의 성별 분업, 강요된 여성성과 외모 가꾸기, 성희롱 피해 등 또래 남성과는 다른 성별화된 노동 경험을 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르바이트 동기 및 노동 과정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함. 진학여부 및 연령,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근속기간, 근로일수 및 시간, 업종 및 업무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 경제적 수준, 업종에 따라 법·제도 준수 및 위반실태, 부당노동 실태 등에서도 차이가 나타남.

5. 정책제언

비전	“노동감수성이 있는 서울, 젠더감수성이 있는 서울”		
기본방향	청소년 노동 존중	성인지적 관점 제고	
정책목표 및 세부 정책과제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중심’ 정책 설계 •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 마련 • 채용공고 모니터링 강화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선(성별 분리통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 협의체 구성 • 노동복지센터와 서울 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 강화 • 노동관련기구 BI개발 및 확산

【그림】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추진체계

□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 ‘청소년 중심’ 정책 설계: 십대 청소년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에서 정책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 제고, ‘보호’ 중심에서 노동권 ‘보장’ 중심으로, 청년 중심의 ‘십대’ 배제에서 ‘청소년/년 중심’의 ‘십대’ 포괄 정책으로, 청소년/년 내부 차이를 간과한 정책에서 청소년/년 내부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 젠더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개발 및 포함, 노동인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규모의 정기적인 다회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

-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 마련: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 및 개정, 고객과 청소년 노동자가 상호존중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의 청소년을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영세자영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들을 제안함.
- 채용공고 모니터링 강화: 알바중개사이트의 구인 등록 양식을 근로기준법의 기본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를 구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구인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근로기준법의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시정 조치 실시를 제안함.
-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개선(성별 분리통계 구축): 십대 청소년/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조사 대상 구성, 감정노동, 성희롱 실태 등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 내용 구성, 설문조사 외 심층면접 실시 등의 내용으로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개선하고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 협의체 구성: 서울시 관련부서 간 협의체 구성,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 강화: 서울시 내 4개의 노동복지센터와 개소 예정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담당인력 채용이 필요함. 그 방법으로 '또래알바상담' 활성화를 제안함.
- 노동관련기구 BI 개발 및 확산: 노동관련단체 및 청소년/년 관련 단체 등 청소년/년 노동 이슈를 다루는 기구의 통합 BI를 개발하여 건물 외벽 및 간판에 명시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청소년들의 해당 마크를 보고 부당노동 피해 신고 및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I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연구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1)기의 노동 경험과 맥락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다르게 나타난다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상이한 접근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이 또래 남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시작된 연구이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함께 그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다방면에서의 청소년/년 노동,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년 대상 패널조사와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청소년/년 생활, 인권실태 등에서 아르바이트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꾸준히 조사되고 있으며, 연구 역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서부터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 부당노동 실태,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년들의

1)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성인지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비판하며, 기존의 ‘청소년’으로 통칭되었던 용어를 ‘청소년/년’으로 변화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변혜정·민가영(2007)은 특정 연령을 관할하는 사회적 원리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성 청소년과 구분되는 존재로서 ‘청소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특정한 사회, 문화, 경제적 관할 속에 자신의 삶이 놓여 있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범주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며 남녀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는 ‘청소년/년’을, 여성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무성적 범주로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와 왜 ‘청소년/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왜 본 연구가 ‘청소년’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II장의 1절에서 논의하였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년들의 노동 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 일부 청소년/년 노동인권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들은 나이, 계층 등의 사회문화적 장벽과 편견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소년/년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변혜정, 2006).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증가 요인으로 논의된 소비문화의 확산, 소득양극화, 불안정노동의 증가, 탈학교 청소년/년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를 증가키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년들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다양화시키고 그 지위에 따른 특수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남성, 여성이라는 젠더-섹슈얼리티는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년들이 경험하는 나이, 계층 등의 사회문화적 장벽을 성별화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김혜진, 2009; 윤선미·이나영, 201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²⁾ 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존재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별화된 특수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가정이다.

일부 청소년/년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접근가능한 일자리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며, 가출여부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노동 동기나 업종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임금이 낮고, 부당노동의 경험이 더욱 잦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³⁾. 이는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들이 처한

2) 성별시스템의 작동은 노동현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년 문화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 근본적으로 변혜정·민가영(2007: 8)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성별 시스템은 청소년/년들의 문화를 성별화시키고 그들의 욕구, 경험, 현실을 성별화된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 청소년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차이에 대해 주의 깊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실태 차이에 대해서는 II장의 2절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십대라는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젠더, 계급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청소년/년들의 노동 경험, 삶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 연구들⁴⁾은 ‘청소년’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어 남성 청소년과 다르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과 맥락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왔다. 페미니스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노동경험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연구(추주희, 2009; 윤선미·이나영, 2012)의 일부로 또는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김은정, 2012)나 1980년대 ‘여공’에 대한 연구(성지혜, 2010)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경험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보편적 존재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이나 청소년/년 정책에서도 주된 정책 의제로 논의되지 못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성별화된 환경과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르바이트 관련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재분석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에 대해 논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FGI 조사를 통해 노동 동기는 무엇이며,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젠더, 계급적 배경 등이 노동시장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FGI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부적인 노동 맥락을 파악하기 위함이자, 성인들의 ‘규범’이 아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⁵⁾

후자의 맥락에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가

4) 선행연구목록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정리는 II장의 2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에 정리되어 있다.

5) 변혜정(2006: 7)은 청소년/년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삶을 청소년의 목소리로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편화되었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대의 아르바이트를 ‘문제’나 ‘일탈’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읽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젠더-섹슈얼리티, 나이, 계급을 통한 통제방식을 오히려 더 공고히 한다(김연주, 2003; 윤선미·이나영, 2012).⁶⁾ 단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주체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인의 시각에서 십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고, 어떠한 방향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6) 윤선미·이나영(2012: 121)은 가출 청소년에 대해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통해 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면서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승인받거나, 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일탈적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되는 상황에만 초점을 둔 논의는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사사화하고 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계급과 연관된 이데올로기를 확증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출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맥락과 가출 후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 십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과 서비스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II장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정리, 젠더관점에서 수행된 ‘청소년’ 연구 동향, 정부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년 지원 정책 검토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존 접근 및 선행연구, 정책 현황의 한계를 살펴보고,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및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2011), 전교조 참교육연구소(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의 자료를 통해 전국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패널과 청년패널,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자료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 청소년/년들만 선택하여 재분석 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대학생을 제외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진학 여부, 연령별, 주관적 경제수준 등에 따른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넷째, 서울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이후 기본 방향에 따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목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앞에서 논의한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자료들을 수집,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와 젠더 관점에서의 청소년/년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젠더 관점의 필요성을 논하고,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구체적인 조사 방향 등을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현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현 정책의 한계점을 논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관련 정책이나 예산과 관련된 행정 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은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2차 분석을 위해 활용한 원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2007년), 한국청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2007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2013년), 총 3종이다. 그러나 세 가지 자료 모두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18세 청소년/년'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례 수가 적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큰 한계를 지닌다.⁷⁾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에서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설문 조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7) 2차 분석에 활용된 3가지 자료의 내용과 한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III장에 제시하였다.

3. 설문조사

서울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거주 십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전국 실태조사 자료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대략적인 성별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료의 한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화하여 논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 거주 만 13~18세(대학생 제외)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업체의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주되게 실시하였으며, 패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이 파견되어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111명을 포함하여 총 544명의 청소년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① 근로환경 실태, ② 부당행위 경험 실태, ③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 ④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정책방안에 대한 욕구, ⑤ 조사대상의 인적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IV장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FGI) 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노동 맥락과 경험, 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계급 등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

8) 본 연구가 왜 만 13-18세(대학생 제외)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II장의 1절 청소년/년의 연령범위에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이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노동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들의 노동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녀 15명과 십대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도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는 이십대 여성 3명, 총 18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서는 특정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설명,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왔던 청소녀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력과 청소녀들이 주되게 종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녀, 학교 특성별 청소녀들을 다양하게 섭외하였으며 청소녀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웨딩 및 뷔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녀들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다.

5.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연구설계와 정책대안 개발 단계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내용에 반영하였다.

첫 번째 자문회의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청소녀/년 노동인권 관련 단체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젠더 관점에 대한 논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연구자,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연구방향 선정 및 설계, 설문조사지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녀 아르바이트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의가 주되게 이루어졌으며, 그 외 서울시 정책의 사각지대, 청소녀/년 노동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방법을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병행하는 혼합연구방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서울시 정책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소녀/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내용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자문회의는 연구 후반단계에서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및 FGI 분석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본 연구에서 1차적으로 개발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세부 정책방안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방안의 한 사례로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였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관내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어 정규 수업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의 실태 및 효과,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청소년/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6. 토론회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총 2회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토론회는 2014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4회 정책토론회, 십대 여성들의 ‘알바’ 이야기-5126!」으로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및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번째 토론회는 2014년 12월 15일에 진행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토론회, “젠더관점에서 본 청소년 진로와 노동, 진단과 해법」 토론회로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정책 방안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책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4절 연구 추진체계

단계	주요내용		
1단계 연구 기획 및 착수	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자료 및 패널조사 자료 분석: 전국 및 서울시 남녀 아르바이트 실태 비교 	
	<p>착수자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계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 논의내용: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착수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2단계 조사 단계	<p>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현황 -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p>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환경 실태 - 부당행위 경험 실태 -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변과 본인의 인식 -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정책방안 욕구
	<p>아르바이트 청소년 FGI</p>	<p>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p>	
3단계 정책 방안 도출	<p>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자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청소년/년·노동관련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연구진이 참여 - 내용: 주요 연구결과 공유, 정책대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p>정책방안 도출 및 정리</p>	<p>아르바이트 실태 및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노동권 보장 및 지원 방안 모색</p>	
4단계 최종 보고	<p>최종심의 및 최종보고 연구보고서 발간</p>		

III

연구 배경

제1절 주요 개념 정리

제2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

제3절 왜 '청소년'에 주목하는가

제4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 현황 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연구 배경

제1절 주요 개념 정리

1. 청소년

‘십대’에 초점을 두어 다른 연령집단과는 구별되는 그들의 생활, 문화들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십대 남녀를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십대 남녀를 ‘청소년’이라는 무성적 범주로 묶는 것은 성별화된 청소년/년들의 욕구, 경험, 현실의 차이를 간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여성 청소년의 삶의 경험과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변혜정·민가영, 2007; 윤선미·이나영, 2012 등). 이에 이들은 남성 청소년과 대별되는 ‘청소년’, ‘십대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사회의 젠더-섹슈얼리티 체계가 청소년/년들이 문화를 성별화시키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청소년’은 특정 연령에 기반 한 인구 층을 나타내는 기술적 범주를 넘어서 특정한 사회·문화·경제적 관할 속에 자신의 삶이 놓여 있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범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연령을 관할하는 사회적 원리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을 포함(변혜정·민가영, 2007: 6)”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앞선 의미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청소년/년의 삶이 성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각종 정책과 제도 혹은 십대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성별화된 정책 혹은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이숙진·한설아, 2002: 14)”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 하에 십대 여성을 일컫는 용어로 ‘청소년녀’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녀’에 대별되는 존재로서 십대 남성은 ‘남성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십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로는 ‘청소년녀/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⁹⁾

2. 청소년녀/년의 연령범위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녀/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외 청소년녀/년 관련 법률에서도 법률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소년녀/년의 연령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 표 II-1 ■ 청소년녀/년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

구분	연령기준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²⁾

주: 1), 2)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됨.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로 규정하여 연소자 증명서, 근로시간

9)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십대 여성과 십대 남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청소년녀/년’으로 모두 바뀌어서 서술하였다.

등11)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만 13, 14세는 허가가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13세	만14세	만15세	만16세	만17세	만18세	만19세 이상
조건부 근로가능 (취직인허증 발급 시)		근로가능(만 15세 이상)				
연소자						

그림 II-1 「근로기준법」상 근로가능 연령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에 속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인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¹²⁾ 대학생 신분이거나 이십대의 경우 중고등학생이거나 십대 신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를 포함하여 대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으로 일치된 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도 만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
- 10)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11)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내용을 참고하라.
 - 12) 단 만 18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법 내용(위의 각주 참조)에 대해서 만 18세와는 다르게 법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근로실태를 분석하였다.

존재할 뿐,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년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¹³⁾이며, 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¹⁴⁾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에서 청소년/년의 일에 대해 고용형태나 노동시간 등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명명하는 것은 청소년/년 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Arbeit)는 노동, 일,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가 외래화하여 우리말처럼 쓰이는 것으로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박창남·도종수, 2007). 한국에서 청소년/년의 일은 용돈벌이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단기간에,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명명한다. 연구자에 따라 그 용어를 달리하여 ‘기간제 취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장원섭, 2001; 김기현, 2003)도 있으며, 단기성 일자리는 제외하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 임금을 받고 일을 한 경우’만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규정(김예성, 2006)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안돼서 끝나는 단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문성호, 2003)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조사 범위를 한정할 경우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일수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한 경험을 ‘아르바이트’로 규정하고 해당 경험이 있는 청소년/년들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단, 뚜렷한 이유 없이 호기심이나 단순 재미로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들은 제외하기 위하여 1~2일 하는 아르바이트가 1회성으로만 끝난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FGI에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지속해 온 청소년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3)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근로기준법 제5조 1항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 1항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탈선을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시각의 논의들(한겨레, 1994.07.31 기사; 경향신문, 1997.02.10기사 등)이 대부분이었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청소년/년을 ‘노동하는 존재’로서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노동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캠페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는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청소년/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 논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 둘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셋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1.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초기 논의들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초의 전국규모 실태조사는 2000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이다. 전국 45개 중·고등학생 3,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학청소년/년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9.4%(고등학생의 경우 35.3%)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여주고,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양성화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후 관련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개별연구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실태조사(문혜진, 2002; 김종진, 2011, 2013; 김예성, 2006; 유진이, 2008; 조금주, 2010; 김유선, 201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대상 또한 학교 밖 청소년(전경숙·노재봉, 2003; 이경상·박창남, 2006, 전경숙, 2006; 고용노동부 외, 2011; 임영식·정경은·김윤나, 2011), 가출청소년(김지혜, 2005; 육혜련, 2014; 추주희, 2009), 대학생(김덕순·이명숙, 2002; 고관우·남진열, 2012; 최혜영·백유경·김태훈·최상준, 2012)으로까지 광범위해지고 있다.

실태조사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빈도를 기본으로, 아르바이트 동기, 구직경로, 근로조건, 부당행위 경험 내용 등이 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자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연구마다 조사대상과 시기, 조사의 초점이 상이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청소년/년의 약 20-30%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목적은 대부분 용돈을 벌기 위해서로, 주로 주위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들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초저임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꼴로 법정 노동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파잉 노동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외, 2013: 47).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열악성이 드러남에 따라 아르바이트 중 부당노동 경험 실태에 대한 조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20%에 그치고 있었으며, 임금·시간외수당 체불/폭행·성폭행 등의 부당처우를 경험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년도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년들의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부당노동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청소년/년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종 청소년/년 관련 패널조사(가장 대표적으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아르바이트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중단연구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현,

2003; 이경상·유성렬, 2007; 김종성·이병훈, 2010; 유성렬, 2010; 조금주·정혜원, 2010; 조금주, 2010; 안선영 외, 2013).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폭 증가하여 고3 학생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연령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청소년/년기의 노동경험이 점점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김예성, 2006: 560).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소수의 일부 학생들만의 문화가 아닌 청소년/년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험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족 생계유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주체적 소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더 이상 청소년/년 스스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챙길 일이 아니라 국가정책 수준에서의 청소년/년 노동 경험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년기와 이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근로 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두 번째 연구 흐름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한경혜, 2000; 김기현, 2003; 문성호, 2003; 이경상·유성렬·박창남, 2005; 김예성, 2006; 이경상·유성렬, 2007; 김성언, 2012).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는 일부 청소년/년의 문제로 접근, 청소년/년 삶과 문화의 주된 양식으로 고려하거나 이후 진로선택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보호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발달에 아르바이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업성적 저하(김기현,

2003; 문성호, 2003), 흡연·음주 등의 문화에 노출될 확률 증가(이경상·유성렬·박창남, 2005; 김지혜, 2005; 이경상·유성렬, 2007), 나아가 숙제나 특별활동, 독서 등 학업참여에 지장을 주어 학교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유성렬, 2010)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는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선생님, 부모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년기 아르바이트가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경제관념이 있고,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진로성숙도 향상, 시간관리, 직장체험으로 인한 대인관계능력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달적 관점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있다(한경혜, 2000; 정경은·이혜경, 2005; 구효진·최진선, 2006; 전방연, 2003; 김정현, 2009; 황나영·이자형, 2011; 육혜련, 2014).

이처럼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후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통된 논지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은 일의 성격이나 취업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Hansen and Jarvis, 2000; 장원섭, 2001: 104 재인용).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구 경향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장원섭, 2001; 김기현, 2003; 2006; 김예성, 2006; 김종성·이병훈, 2010; 유성렬, 2010)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 비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편이지만, 연구 결과는 대체적으

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로 나이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출한 청소년/년일수록,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한 학생일수록,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일수록, 수업몰입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용돈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특성으로는 일반계보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수록,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확률이 높다거나(장원섭, 2001)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김기현, 2003)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인식되는 요인들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소수의 특정한 청소년/년의 전유물이 아니라 청소년/년들 사이에 보편화된 문화라는 논의와는 달리 여전히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년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문제집단 청소년/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가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어떻게 접근하여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이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배적인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나 여기서 살펴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구직경로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 결과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음성화, 비공식화 되어 있다. 이에 학교생활의 탈출구로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년들은 저임금의 매우 열악한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의 특성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열악한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년이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년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의 인과관계를 논할 때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가정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문제행동으로부터의 탈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지만, 활용된 연구방법이나 청소년/년과 그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은 제한된 경향이 있다. 특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다음의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 양적연구방법에 기반하고 있어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동기(맥락), 구체적인 노동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청소년/년 자신들의 해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에 논의될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의 논의들이 대부분이라는 선행연구의 한계로도 이어진다.

서구의 논의나 국내의 일부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구체적인 동기, 청소년/년 취업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부정적·긍정적 영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자가 인

식하는 노동 경험이나 노동의 의미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지만, 양적 연구를 통해서도 청소녀/년 아르바이트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내용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적조사를 통해서도 ‘용돈마련’이라는 범주로 청소녀/년 아르바이트 동기가 묶이지만, 질적조사를 통해서도 청소녀/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용돈마련’이라는 범주 안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들¹⁵⁾이 드러나게 된다(김정현, 2009). 또한 양적연구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녀/년들로 묶이지만,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동일 업종의 청소녀/년들 간에 노동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한다(한경혜, 2000).

이는 비단 아르바이트에 대한 논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십대’의 생활, 문화 전반을 제한된 일정한 틀로 이해할 수 없다(변혜정, 2006)는 논의들이 제기되면서 이미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녀/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해왔다. 따라서 청소녀/년 아르바이트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데 있어서는 광범위한 양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청소녀/년 아르바이트의 구체적인 맥락과 노동경험,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조사연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논의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앞서 제기했듯이 청소녀/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내의 논의들이 실태조사에 그치거나, 청소녀/년 아르바이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 또한 학업이나 비행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있는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녀/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근 논의들은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의 당위로 제시하고 있지만,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이는 청소녀/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운 여건을

15) 김정현(2009)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과거 6개월 안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아르바이트 참여동기가 어떠한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용돈 마련’이라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또래관계 유지와 경험의 공유’, ‘부모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자기 선장을 위한 발판’ 등으로 그 구체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냈다.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력이나 노동경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가정 하에 청소년/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단,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과도하게 논의되어 열악한 근로 환경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다양한 맥락과 의미들을 고찰할 때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있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데에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소비주의 문화의 확산이 주되게 영향을 미쳤다(이철위의, 2000; 장원섭, 2001: 104; 조금주·정혜원, 2010: 444).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숙련, 단시간 노동력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파트타임 노동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으며, 특히 청소년/년 노동력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였다는 논의들이 있다(장원섭, 2001: 95; 조금주·정혜원, 2010: 444). 그리고 최근에는 근로빈곤의 확산과 사회양극화 등으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 들이 늘고 있으며(배경내, 2014: 13)¹⁶⁾, 경제상황이 안 좋은 환경의 청소년/년 일수록 부당노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들은 부당 노동의 현실에서도 쉽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조금주·정혜원, 2010: 444)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일자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년들의 노동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르바이트는 십대들보다는 이십대나 대학생을 선호하고,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년 노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불안정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배경내, 2014).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들이 일부 연구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언급되는 것에 그칠 뿐,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청소년/년 노동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16) 예컨대, ‘알바몬’의 2014년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의 경우 자신을 ‘생계형 알바’라는 생각하는 비율이 27.3%로 나타났다.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 경험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 맥락 등을 논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청소년이 처한 개인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맥락 역시 함께 고려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3절 왜 ‘청소년’에 주목하는가

1. 젠더 관점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청소년들을 ‘문제’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고, 이들의 문화와 삶의 양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섹슈얼리티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소비 자본주의체제의 형성과 확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비공식적 십대 노동시장의 확산 등이 이루어지면서(김현미, 2002; 민가영, 2009) 페미니스트들은 청소년/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임을 규명하기 시작하였다(김현미, 1997; 조한혜정, 2000; 김은실, 2001). 이들은 소비, 성적 욕구를 가진 주체로서 청소년/년의 존재를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청소년으로 일반화되지 않는 ‘청소년’의 독특한 경험들에 주목하고,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성별화된 존재로서 ‘청소년’의 삶의 궤적을 다루는 연구들로 이어지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가출, 성매매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주체와 문화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성별시스템이 남성 청소년과 청소년의 삶을 상이하게 구성한다는 점을 논하였다(민가영, 2000; 성운애, 2001; 추주희, 2009). 특히 이들은 청소년들이 가출과 성매매를 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며,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십대 여성(혹은 어린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청소년/년이라는 사회적 범주와 젠더가 상호 교차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청소년의 가출, 성매매를 둘러싼 계급의 문제는 중요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민가영, 2009: 11).

이후 ‘계급’을 함께 분석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변혜정·민가영, 2007; 민가영, 2009; 김은정, 2012; 윤선미·이나영, 2012). 민가영(2009: 11-12)은 “젠더의 문제로만 청소년에 접근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단순한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계급적 저항으로

서 표출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최근의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저소득층이라는 계급적 범주를 문제화하고, 젠더로 환원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행위와 문화의 계급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다. 예컨대 계급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와 맥락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변혜정·민가영, 2007)는 점을 밝히거나, 저소득층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통상적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는 다른 성매매가 현재의 삶과 미래 진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김은정, 2012)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 젠더 정체성이 청소년의 삶에서 발현되는 방식이 계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남과 동시에 젠더로만 설명할 수 없는 청소년의 삶과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의 페미니스트들의 연구들이 쌓여 청소년들의 복잡한 삶의 경험을 분석할 때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빈곤 재생산, 미성년자로서의 노동시장 참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윤선미·이나영, 2012: 163)는 담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 경험은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주된 연구주제로 다뤄지기 보다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등의 연구에서 그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 중 하나로 분석되거나(김은실, 2001; 변혜정·민가영, 2007; 추주희, 2009; 김은정, 2012; 윤선미·이나영, 2012), 1980년대 여공들의 노동경험 연구에서 일부 분석되었다(성지혜, 2010)¹⁷).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 경험이 분석되어 왔지만,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이 젠더, 계급, 노동시장 구조 등을 매개로 남성 청소년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논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노동에는 섹슈얼리티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성매매나 가출 등 특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

17) 성지혜(2010)는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1980년대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여공에 대한 사회적 담론 중의 하나가 ‘타락’이었으며, 청소년 노동을 낭비벽, 무식, 성적 타락을 동반한 의미로 인식했다(성지혜, 2010: 48)는 점을 밝혀냈다.

는 성별화된 경험의 일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년(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의 필요성

지금까지 청소년/년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를 살펴본 바, ‘청소년’이라는 남성중심적인 범주에 가려졌던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주체(성)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연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페미니스트 연구를 통해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이 구성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범주와 젠더가 상호교차하며, 그 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과 문화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령, 젠더, 계급 등의 다양한 사회적 층위가 한데 묶을 수 없는 방식으로 분화되어 청소년들의 삶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를 젠더로만 설명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계급이나 가족환경 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 경험을 분석할 때에도 연령, 젠더, 계급 등 개별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계를 고려하여, 어떠한 맥락에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는지,¹⁸⁾ 아르바이트와 함께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노동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여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책 방안을 구상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년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획일적 잣대로 청소년/년들과 그들의 아르바이트를 이해해서는 안된다(변혜정, 2006:

18) 이는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인지, 소비를 위한 단순 용돈벌이의 목적인지 등으로 이분화하여 해석하는 것과는 반드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년을 노동자보다는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는 인식은 청소년/년의 삶에서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고 청소년/년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하인호, 2014).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맥락을 본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노동 경험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36)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대, 젠더, 계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청소년/년들의 노동 경험을 분석해내고, 이를 토대로 십대의 개별적 위치를 고려한 상이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년의 주체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년들을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미숙한 존재이자 수동적 객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년을 미숙한 존재로 보게 되면 성인들의 규범 기준에서 청소년/년의 노동은 부차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노동을 택한 청소년/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만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하인호, 2014: 9). 그러나 앞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논의하였듯이 아르바이트 경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청소년/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청소년/년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 수 있도록 청소년/년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윤선미와 이나영(2012: 128)이 지적하고 있듯이 청소년/년들의 주체성에 대해 지나치게 초점을 둔 나머지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지나친 낭만화와 일반화하거나 행위성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론에서 논한 것과 같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주체성에 주목한다는 것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논지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FGI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을 분석하되 젠더, 연령, 계급 등의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뛰어넘고 또는 그 경계에서 어떻게 좌절을 경험하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4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 현황 분석

아직까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에 특화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은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앞에서 논의한 ‘십대 청소년/년의 노동’ 과 젠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 방향을 제공해주는 정부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등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의 기본 방향 분석

1)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의 기본 방향

(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2011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관계부처합동, 2012b).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매년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4).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6대 전략목표와 24개 중점과제 81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은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라는 정책 목표 하에 총 4개의 중점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4가지 중점과제는 ‘① 청소년인권·근로 교육 및 홍보 강화, ②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체계 구축, ③ 청소년 근로 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 및 단속 강화, ④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이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2>와 같다.

Ⅱ 표 Ⅱ-2 Ⅰ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중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

중점과제	하위 정책과제	주관부서	내용
청소년 인권·근로 교육 및 홍보 강화	학교 정교 교과과정에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과학 기술부, 고용노동부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등 대상 사이버 교육 지속 실시 및 활성화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고용노동부	-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TV 광고 등) 및 캠페인 전개 - 청소년에 의한 정보 발굴 홍보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고용노동부, 지자체	- 청소년 고용업종 대표간담회를 통한 노동인권 교육 실시 - 단기간 근로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교육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체계 구축	청소년근로 인권 침해 관련 신고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 학습 및 근로시간과 식사,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 제정 - 관계부처 합동 점검 지역·대상 확대 - 안심알바신고센터 지역사회기관에 확대 설치
	청소년근로 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구축 - 경찰서, 여성가족부 등 긴급 신고체계 구축, 신속 출동·조사
청소년 근로 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및 단속 강화	청소년근로 관련 유해행위에 대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민관합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 관계 부처 합동점검 강화 - 방학기간 집중 지도점검 상시진행, 지역 및 점검대상 업소 확대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	건전한 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건전 아르바이트 소개사무소 개설 및 위크넷에 건전한 일자리 소개(유해업종 중사 차단)
	청소년 행복일터 캠페인 전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의 근로 조건 준수 협약 체결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 유해업소 청소년 불법고용 적발 시 벌금 강화, 위반 누적 시 특별관리제도 도입

자료: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p. 57~61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한편 서울시의 「2014년 서울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3가지 추진방향과 5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은 ‘청소년 근로권 시장’이라는 추진방향 중 하나로 “건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청소년 근로 보호”라는 정책과제로 ①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② 건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이라는 2개 사업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2) 2013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서울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청년, 일을 통한 꿈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은 “청년 노동권리 보호”라는 전략과제 하에 2가지 핵심과제로 포함되었다. 2가지 핵심과제는 ‘①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청년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체계 구축, ②노동권리 보호의 사회적 인식 확대’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3>과 같다.

이후 이를 더 구체화하여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만들기 추진계획」이 수립·발표되었다. 먼저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3가지의 주요 추진방향 보면, ‘①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계약 위반 없는 좋은 알바 환경 조성, ②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③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4>와 같다.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만들기 추진계획」은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배부, 노동권리 침해 시 신고 기관, 아르바이트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특히 감정노동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을 가지고 캠페인을 개최한다.

【표 II-3】 2013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중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

중점과제	하위 정책과제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청년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현황 실태조사 -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구성·운영 -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리선언 발표 및 MOU 체결 - 아르바이트 청년·업주대상 노동법 등 인식확산 홍보 -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와 노동관계법 교육 추진 - 업주와 “안심사업장” 또는 “행복한 first job” 캠페인 전개
노동권리 보호의 사회적 인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대 노동관계법 교과목 운영 - 서울소재 대학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 추진 - 민간부문 노동권리 보호 인식 확산

자료: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서울시)」 p. 29~31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표 II-4】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서울시)

중점과제	하위 정책과제
임금체불·부당대우·근 로계약 위반 없는 좋은 알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만들기’ 캠페인 -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실시 - 노동권리 취약부분 노동법 교육 추진 - 노동법 교육 동영상 배포·활용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지원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설치·운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총괄책임자(MP) 운영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청년 무료건강검진 실시

자료: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 p. 6~13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3) 기타: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201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2014)

청소년 근로권익과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청소년 근로환경의 건전성 제고’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4개의 추진계획 ‘①사업장 감독 강화, ②신고체계 구축, ③인식개선, ④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5>와 같다.

표 II -5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중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

중점과제	하위 정책과제		주관 부서	내용
사업장 감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	사업장 감독 강화	감독 사업장 대폭 확대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대상 사업장 대폭확대(2배) 연소자 외에 대학생 포함
		연중 상시 감독 실시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연중 상시감독, 수시감독 추진 연 2회 → 연 4회 이상 확대 실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 강화	고용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 연 4회 확대
	사업장 감독 내실화	법 집행 실효성 제고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 사업장 중 10%에 대해 6개월 이내 확인감독 실시, 즉시 사법처리
		감독의 충실성 강화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집중 감독 청소년 근무시간대 위주 감독 무기명 신고 사업장 및 신고적발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감독 신고 포상제 도입 프랜차이즈 가맹점 결과를 본부에 통보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 확인
		지역·업종별 맞춤형 감독 실시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가 주변 감독 실시 지방관서별로 업종 특화하여 집중 감독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 신고체계 구축	세대통합형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체계 운영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신설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전문 인력 위촉, 청소년 근로조건 점검·홍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관서별 성희롱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여성감독관 지정
		‘청소년 리더’ 활동강화	고용부 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교생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 → 대학생 포함 ‘청소년 리더’로 확대 근로조건 홍보, 위반·의심사업장 발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 신고체계 구축	법 위반 신고 편의성 제고	모바일 신고체계 운영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운영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개설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핸드폰 발신위치, 국번에따라 관할 관서로 연결
		온라인 상담 실시	고용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18 알자알자 사이트를 통한 모니터링 및 상담 고용부 사이트에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알바 Talk’,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중점과제	하위 정책과제		주관 부서	내용
		신고센터 확대 설치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바신고센터 확대 (특성화고, 대학, 청소년 상담원복지센터) 시도교육청별 신고 창구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집중 홍보 담당자 교육 신고센터 연계 강화 신고센터 운영 평가
근로환경 자율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사업주 및 청소년의 인식 개선	사업주 및 청소년 교육 내실화	고용부 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에게 중점 점검항목 공지 청소년 채용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시 교육과 연계 실시
		성피해 예방 활동 강화	고용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확대 성희롱 예방 홍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공감대 확산	학교의 일하는 청소년 보호 역할 강화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에 청소년 근로 조건 보호 제도포함 ‘진로와 직업’ 수업에 근로조건 보호 제도 교육 실시 근로감독관, 근로조건지킴이 등 중·고교 초빙교사로 교육 및 상담 실시 특성화고 학부모에게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성피해 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 실시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랜차이즈와 근로조건 보호 위한 협약 체결 프랜차이즈 자율관리 협조 강화 근로보호 메시지 단순화 홍보 관계부처 역할분담, 주기적 분석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인프라 보강	정기적인 근로환경 실태조사 실시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합동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TF’ 운영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서포터즈’ 운영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으로 서포터즈 구성, 캠페인, 홍보 실시

자료: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p. 3-1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소년의 근로권익 지키기”라는 목표아래 ‘①청소년, 사업주 대상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②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③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각각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의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방학 전 찾아가는 특강, 고용노동연수원 심화교육, 취업사이트를 통한 근로권익 홍보가 있으며,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의 과제로서 상담·신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권리구제 요청시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에 대한 과제로 기초고용질서 확행,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부문 감독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여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제공해주는 정부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책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하다. 앞의 3절에서 청소년/년 (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듯이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년들의 삶이 젠더, 연령, 소득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청소년/년 정책과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에서는 청소년/년들의 다양성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년 정책의 주관부서가 여성가족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기본계획」¹⁹⁾에서조차 성인지적 관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장(관계부처합동, 2012a: 14~21)에서도 ‘청소년’을 초·중·고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타 연령층과 비교를 하고 있을 뿐 젠더나 청소년/년 내부의 차이에 대해 논하

19)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제1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1993년 9월 ‘제1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2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모든 관계부처협동으로 계획이 수립되지만, 계획 총괄 및 보고서 발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는 구절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년 정책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부재하다 보니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에서 성인지적 접근을 찾아보는 것은 더욱 어렵다.

둘째, ‘십대 청소년/년’에 초점을 둔 아르바이트 정책이 매우 드물다. 일부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서 청소년/년 근로를 대상으로 한 보호 정책이 추진 중에 있지만, ‘노동’ 정책 측면에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접근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이 구직·취업난의 문제,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청년고용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013: 1~5;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014a: 1). 그 결과 정책 대상은 15세~29세 청년²⁰⁾을 대상으로 하여 십대 청소년/년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십대 청소년/년들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고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가령 2013년 하반기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의 경우 대학가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실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십대 청소년/년의 비율이 7.15%²¹⁾에 그치고 있어 십대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선도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기업과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약을 맺었지만, 거기에서도 ‘십대’ 청소년/년들은 상대적으로 배제²²⁾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십대 청소년/년에 초점을 둔 아르바이트 관련 정부 정책은 「제1차 청소년보

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1) 전체 조사대상인 1,511명 중 대학생을 제외한 15~19세 청소년/년은 108명에 불과하였다.

22) 서울시와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협약을 맺은 기업과 브랜드는 비알코리아(주)의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주)롯데리아의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TGI fridays,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르팜, 카페 베네의 카페베네, 블랙스미스, 마인즈덤, (주)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주)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 파스쿠치, 퀸즈파크, 라그릴리아, 리나스, 패션 5, 월드바인 등으로 십대 청소년/년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호종합대책(2013~2015)」이나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2013)’,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추진방안(2014)’ 등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매우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소년/년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정부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세 번째 한계이다. 즉, 청소년/년 존재 및 그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 또한 관계법령 위반 사항들을 단속하고 시정하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의 역량 함양이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등이 주된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만(관계부처합동, 2012a: 33),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은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이라는 정책 과제 하에 년 중 1~2회 실시하는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노동법 홍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년 보호 등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에서는 청소년/년의 노동권 보장이 주된 정책 목표가 되기보다는 ‘퇴직인력의 일자리 창출’²³⁾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주된 정책의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넷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모든 정책의 대상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과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선에서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 일하는 청소년/년과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겠지만 청소년/년의 노동시장에서 당하는 다양한 부당 경험은 고객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청소년/년 노동을 존중하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년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에서 일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난립과 그로 인한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잦은 폐업 등이 청소년/년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김원정, 2012)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위해서는 고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역할, 노동시장구조의 문

23)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조건지킴이’의 경우 은퇴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 주된 정책 목표가 은퇴인력의 지식과 재능의 사회 기부, 은퇴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제시되었다.

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의 기본 방향이 갖는 한계에 대해 염두에 두면서 이후 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세부 정책 내용 분석

1)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년들이 부당대우를 신고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외부단체들에 의해 전화, 문자, 인터넷, 어플 등 다양한 경로의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1350'과 '1644-3119', '알바신고센터',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1388 전화/문자/사이버'가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신고 전용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마련한 신고창구에서도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I-6>과 같다.

■ 표 II-6 ■ 청소년/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 방법

신고방법	주관부서	주요내용
1388	여성가족부	청소년 심리상담, 인권상담 24시간 제공 전화, 문자, 채팅·게시판 상담 가능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알바상담실 별도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용, 노동관계법, 부당대우 등 각종 민원 상담 월~금 오전 9:00 ~ 오후 6:00 운영 인터넷, 스마트폰, 우편·팩스 상담 가능
청소년 알바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신고 상담센터임. (내용 설명)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플 실시간 상담, 신고 접수

신고방법	주관부서	주요내용
알바신고센터	고용노동부	'11년 9월,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시행, '13. 2월 기준 225개소 운영 전국 고등학교, 대학교, 시도교육청,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 등에 설치
국민신문고 ²⁴⁾	국민권익위원회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임금 부당삭감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당행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1331)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당행위 문제 신고 접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사)한국성폭력 상담소	남녀차별 및 성희롱 문제에 초점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운영 (※ 온라인상담 2008년에 중단)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 /서울시	성폭력과 성매매에 중점을 둔 신고센터 전국 17개 센터(?? 무슨 센터)에서 운영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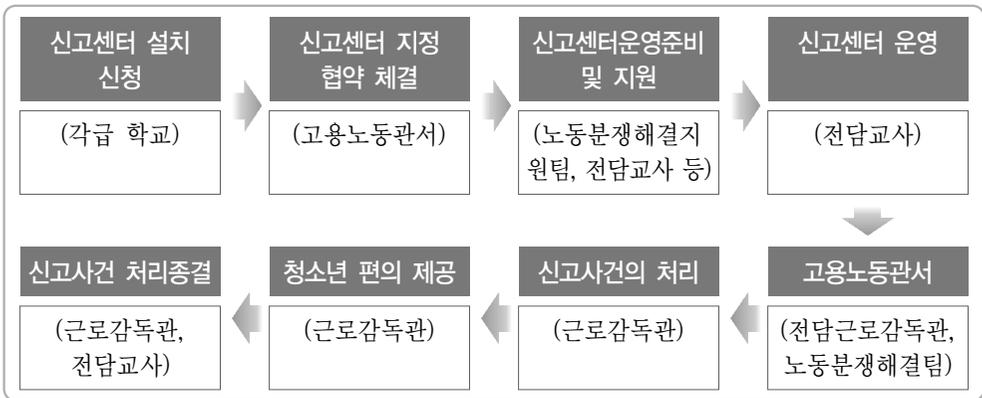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20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년 6월 17일)와 각 주관부서 및 사업 홈페이지 참조하고 재구성

정부부처, 지자체, 법인 등에서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실태조사와 FGI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신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산발적인 신고창구와 운영주체, 그리고 연 1~2회 정도의 단발성 홍보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알바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신고기구이다. 2011년 9월부터 '안심알바신고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 전국 고등학교, 대학교, 시도교육청,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12년 111개 이었던 것이 '13년 225개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3년 8월 1일)로 그 수가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서울시에도 2013년 8월 기준, 46개소(서울시, 2013)가 있을 정도로 양적 확대에 힘써왔다.

24) www.epeople.co.kr

알바신고센터는 아래의 <그림 II-2>와 같이 학교에서 청소년/년의 알바피해사례를 수집하여 센터 설치 지역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 피해자의 진정 절차 없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한 위반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그 운영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박용수(2013: 37)

Ⅱ 그림 II-2 Ⅱ 교내 알바신고센터 운영 시스템

먼저 ‘개점 휴업’²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정도로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 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가령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에 비밀로 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학교에 설치된 알바센터에 접수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실제로 2012년 안심알바신고센터 이용실태 조사 결과, 진정이 단 한 건도 접수 되지 않은 곳이 105곳으로(서울신문, 2012년 10월 8일) 이는 전체의 95% 수준이다. 2012년 서울신문의 기자가 직접 몇몇 학교 내 센터에 전화 조사를 한 결과 담당 교사가 없다는 응답과 센터가 학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교칙 상 자교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답변도 나왔다(서울신문, 2012년 10월 8일). 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신속히

25) 경인일보. “개점 휴업” 안심알바신고센터… 경기지역 피해사례 접수 ‘0’: 인천도 30곳 중 6곳에 불과 홍보 관심부족 제기능 못해“. 2013년 10월 15일자 기사

처리하지 않고 관할 등을 이유로 이리저리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하인호, 2012: 48). 이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내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종 신고전화 및 센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에 그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알바신고센터의 경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담당교사의 노동인권교육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또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현장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근로 청소년들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거나 상담과 홍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주체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며, 2013년부터 실시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2010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는 50대 이상 은퇴 인력으로 구성된 반면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는 중·고등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가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자체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과 구성하여 사업장 점검 및 홍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등과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르바이트 청년 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7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현장 관리·감독 주체

관리·감독 주체	주관부서	주요내용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관리감독 주체로서, 사업장 및 그 외 건물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고용노동부	만 50세 이상 공인노무사나 전직 기업간부 등 퇴직 전문인력 혹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촉하여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함.

관리·감독 주체	주관부서	주요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해피워크 매니저)	여성가족부	연말까지 서울·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함. 일대일 밀착상담이 이루어지며 취업지원(진로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지원, 면접동행, 피해신고 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	고용노동부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청소년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오프라인에서 홍보, 직접 아르바이트 체험, 상담 등 활동함.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서울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13.9.23 위촉), 분기별 1회 운영되며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함.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서울시	서울대·홍익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대학가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조사를 실시함.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총괄책임자(MP)	서울시	'14.4.~12까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협의회 위원 중 1명 선정하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총괄책임자(MP)로 임명, 청년 권리보호 사업 전반 자문 및 노동법 교육, 모니터링 분석 등을 담당함.

자료: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2014),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추진방안(201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201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7.5.)

그러나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의 사업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단속을 하는 인력은 크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정기점검과 정부합동점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1318 청소년리더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의 사업장 선정 방식에도 뚜렷한 기준 없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이라는 명목하에 비체계적으로 선정(윤효식, 2013)하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장 배분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관리감독 인력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어 풍부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아르바이트 청소년/년 규모에 비하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²⁶⁾.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전국 사업장의 부당행위 적발과 신고접수 처리를 통솔하는 것

26) 2013년 말 현재 청소년(15~19세) 인구 335만명 중 24만명(약7.2%)(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년 8월 5일)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반해 근로감독관은 전국 1,095명('14.6 기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도 96명('13년 기준), 청소년 리더도 220명('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8〉 참조).

【 표 II-8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현황

(단위: 명, 개소)

관할 사업장수 (‘12년말 기준)	2013				2014			
	근로 감독관 정원	근로 감독관 현원	근로 감독관 실무 인력	1인당 사업장 수 (실무인력 대비)	근로 감독관 정원	근로 감독관 현원	근로 감독관 실무 인력	1인당 사업장 수 (실무인력 대비)
1,687,476	1,237	1,059	939	1,797	1,250	1,095	972	1,736

주: 1) 사업장 수 출처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12년 말 기준)임. 2013년말 자료는 2015년 상반기 중 확인가능함.

2) 근로감독관 정원/현원/실무인력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팀) 업무담당 감독관 현황으로, 산재예방지도 업무 담당은 제외

3) 실무인력: 실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6급 이하 현원 중 6급 부서장을 제외)

자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3936>)

위의 표를 보면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12년에 1,836개소, 2013년에 1,797개소, 2014년에 1,736곳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1인이 관리하기엔 지나치게 많다. 특히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가 2,000곳이 넘는 지청은 서울 북부와 성남을 비롯한 총 10곳으로 나타나 근로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3936>).

현장 인력의 또 다른 문제점은 FGI에서 드러났듯이 근로 청소년이 부당행위를 신고했을 때 근로감독관, 사업주, 청소년 3자 대면을 요구하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한 학생의 이름을 대고 신고된 내용을 알려주거나, 사업주 편에서 학생에게 이 정도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라는 등 불완전하고 정당하지 않은 해결로 마무리 짓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어, 감독인력들 또한 비밀보장을 엄중히 지키고,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지침 매뉴얼을 재수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하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인력을 활용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현장 관리·감독 외에 각 정부부처에서는 청

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9>는 현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표 II-9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현황

구분	주관부서	주요내용
정기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방학 기간(6-8월/11-1월)에 집중적으로 근로조건 위법 사항에 대하여 집중 관리감독
합동 실태조사	정부합동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주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불시점검, 2012년부터 연 4회로 확대하여 4일간 단기간 점검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서울시	대학가 주변 아르바이트 청년 고용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그러나 이러한 정기 실태조사 또한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체 정기점검에도 문제가 나타났는데, 2012년 11월에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 자체 사업장 점검 대상을 현재 1,900여개에서 3,800개 소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며, 자체점검과 정부합동점검 사업장 점검 횟수를 여름, 겨울방학 연 2회였던 것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발표되었던 대책과 차별화 된 점은 여성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지 않도록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등을 지원·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점검 사업장 수는 943곳(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3.8.1.), 하반기 점검 사업장 수는 939곳(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3.31.)에 불과했고,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은 기존대로 연 2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현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이드북과 리플릿,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며, 무료강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은 매년 여름/겨울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중행사

로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속 사업장 수도 전국단위로 보면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청소년들의 부당행위의 근본적인 요인을 근절하긴 어려우며, 근로 청소년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현장이라는 가장 최전방에서 직접 근로 청소년과 접촉하여 대면할 수 있고, 그 부당한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로서 그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 인력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은 현재 청소년 대상, 사업주 대상, 교사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과 교사 대상 교육은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주 대상 교육은 서울시에서 사용자협회 및 기업에 권고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연중 행사차원의 ‘청소년 희망콘서트’, ‘열린고용아카데미’등이 운영되고 있다.

【 표 II-10 】 노동인권교육 방법

주체	교육내용
청소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진로와 교육」 스마트 교과서 제작 • 특성화고 필수교재 「공업입문」에 근로기준법 내용 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과 취업을 위한 사이버교육 실시 • 방학기간 전후로 알바천국과 ‘청소년 희망콘서트’ 공동진행 • 시립청소년 수련관 등 28개소에 청소년 대상 노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14.4~) • 서울지역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이전에 「열린고용아카데미」 실시('12.7~)
사업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회 간담회 시 노동관계법 교육 • 신규 식품접객영업자 교육 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 식품업자 위생교육 시 노동인권교육 권고 • 서울시에서 사용자협회와 기업에 자체 제작한 ‘노동법 교육동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사용자 협회 소속 사업장 대상 자치구 상공회(25개소)에서 실시하는 노무교육 안내 및 참여 독려 • 서울시 협약기업에 업체 신규 개설 및 업주대상 전체 교육시 노동법 교육 시행 권고

주체	교육내용
교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심화연수 실시('13) • 특성화고 교원 대상 직업윤리와 노동인권 직무연수(15시간) 운영('13. 7) • 학교관리자 교육과정²⁷⁾에 근로기준법 이해교육 실시('11~) • 중학교·일반고·특성화고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매뉴얼 제작·배포('12)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교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실시

자료: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2014), 박용수(2013)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주로 현장실습이나 근로 청소년이 많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서에 노동관계법 내용을 수록하여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②실업계, 평생직업학교 대상으로, ③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Job School 운영시, ④범죄예방프로그램인 『청소년교실』 운영시 노동관계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노동부 보도자료, 2005.6.20).

교육내용은 근로관계법 위주의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유급휴일, 휴게시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이버 노동인권교육은 현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노동관계법 내용을 포함하여 성희롱 예방과 안전교육, 산업재해 보상, 퇴직과 재취업제도, 실업급여 등 오프라인 교육보다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표 II-11> 참조).

표 II-11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내용

모듈명	주요교육내용
기본 과정	<p><모듈1>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 및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의 인정요건과 유형, 산업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p><모듈2> 취업과 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업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과 휴가, 임금, 직장예절과 성희롱 예방 등 <p><모듈3> 퇴직과 재취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과 해고, 경력개발 및 재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의 종류와 청구방법 등

27) 중앙교육연수원, 학교경영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원노사관계 선진화전략 연수과정

모듈명	주요교육내용
심화 과정	<p><공통과목> 산업보건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및 안전교육, 주요 공업분야의 위험성과 안전대책, 응급처치 <p><전공분야별 심화> 기계/자동차/건설/일반부문 산업안전</p>

자료: 박용수, 2013

교사 교육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특성화고 교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수과정을 별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 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 교사 활동 매뉴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부터 아르바이트 시 주의 사항, 연소 근로자 보호 관련법, 근로계약서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며 주로 노동관계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12).

표 II-12 교사 대상 사이버 교육 내용

주관	연수과정	대상	연수내용
교육부	교원노사관계 선진화전략 과정	학교 경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교원 노사관계법 쟁점 해설 및 관련 판례 분석 •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노동관계법 이슈 사례별 연구
	진로교사 부전공 연수과정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마인드, 직장상황 적용하기 • 근로기준법 해설 및 적용 사례 • 산업안전관리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교육(교직원집합연수)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관련 규정, 근로기준법(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 비정규직 보호 • 산업재해보호(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등)
서울시 교육청	직업윤리와 노동인권 연수(15시간)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이해, 직업윤리,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역사, 노동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실습 등

자료: 박용수, 2013

청소년과 교사 대상의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 대상의 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신규 업체 등록 시 혹은 사용자협회 간담회 시 노동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노동인권교육의 총체적 문제점은 첫째,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교육강사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사업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조차 정규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단체의 교육 협조 요청에도 응하는 학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실상이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외부단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해본 결과, 교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와 교육 담당 교사의 의지가 가장 핵심 요인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한 곳만 1학기 15주, 2학기 10주 과정을 진행했을 뿐, 그 외 학교들은 방학 전 일회성 교육만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FGI에서도 노동권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예절교육의 차원에서 고객응대방법에 관한 교육을 들어본 적 있다는 학생이 드물게 있었다. 물론 학교차원에서 노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데는 학교특성에 따른 예산이 고려 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에서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청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교육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정부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도 근로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정기적인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재개발에 힘써야 하고, 전문강사 양성도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부천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실상을 보면, 강사는 전문강사가 아닌 활동가 중심으로 6명 남짓한 외부단체의 소속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강사로 또한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 노동인권교육 인증교과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도교육청과 광주교육청에서 만든 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정부가 교과서로 인증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GI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는 사업주의 법적 내용 인지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권리를 찾으라는 것부터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주는 사전에 청소년보호법(특히 청소년출입과 고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허가신청 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법 등 근로관련 법령 및 위반사례, 노동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법적 강제 조항이 없어 권고만 하는 수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주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이 정부주도 하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여전히 위법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다소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위협적인 내용의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주로서의 애로사항과 청소년의 부도덕한 행위로 손해를 본 상황에 대한 보상 등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의 근로보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의식 위주가 아닌 참여형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교재와 전문강사 양성에 힘써야 하며, 정부주도의 노동인권교육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캠페인 및 홍보: 캠페인, 홍보물, 매뉴얼 보급 등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와 관련된 법조항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이나 만화삽화로 구성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주로 근로연령부터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야간·휴일근로, 산재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외에 신고가능 기관과 연락처를 함께 수록하였다.

표 II-13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방법

구분	주관부서	주요내용	
홍보물	노동인권 희망수첩	교육청	학생용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희망수첩'과 교사용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매뉴얼' 제작·배포함('12. 3). 노동법에 관련한 권리와 현장감독 인력소개, 각종 신고 가능 기관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함.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교육청	위법할 여지가 많은 임금, 휴일, 야간·연장근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 내용, 신고센터 기관 연락처정보를 적어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함.
	표준근로 계약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관행적으로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고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배포함.
홍보물	업종별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법조항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업종 6가지(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를 선정, 근로계약 체결 전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서울시	근로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내용을 삽화와 Q&A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13. 8 발간)하였고, 처벌규정 및 노동관련 기관 연락처 함께 제공함. 서울 4개 근로자복지센터에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였으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배포 예정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서울시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청년권리(8개)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무(12개), 서울시 책무(6개)를 구성하여 명시하고, 10개 프랜차이즈 기업 ²⁸⁾ 과 청년단체, 관련 사용자협회와 MOU 체결함.
캠페인	알지?최서방!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준수, 서명근로계약서 작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 '의 줄임말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임. 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함.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고용노동부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함.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정착화를 목적으로 함.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약 45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 신고 사업장 의 10% 이상을 방학 중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감독결과 동일한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함.

구분	주관부서	주요내용	
청소년 안전사업장 발굴	여성가족부	'13. 6월부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청소년 안전 사업장 발굴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들의 추천을 받은 업소는 현장 확인후 안전 근로 사업장으로 관리되며, 안전사업장 인증 스티커 부착.	
꿈일터 지정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잘 지키고 근로보호에 함께하고자 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꿈일터 지정 스티커를 붙이면, 구직청소년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효과를 위함임.	
캠 페 인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	서울시	'알바하기 좋은 동네', '알바하기 좋은 기업' 두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며, 동네는 신촌과 홍대 일대를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 하였으며, 업종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5개 프랜차이즈 소속 사업장 ²⁹⁾ 이 대상임. 노동권리 취약부분 점검 및 홍보를 진행함.
	무료건강 검진	서울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병원 의료진이 직접 강남, 홍익대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혈액검사(18종) 및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함.
	행복한 첫 일터 만들기 캠페인	서울시	홍대역~합정역 사이와 홍대앞 견고싶은거리(와우산로길) 일대에서 개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편의점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마포구청, 서울시노동복지센터(4개소) 등 10여개 기관 및 150여명이 참석함. 개별사업장에 노동법 홍보, 노동상담 제공, 노무교육을 실시함.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만들기 캠페인	서울시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버스 등 32,674면에 노동권리 홍보 및 라이브서울, 유튜브, 다음TV팟, 유튜브, 판도라, 기타 SNS 등 영상물을 게재함으로써 노동권리 홍보/건강한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칭찬 릴레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시청홈페이지, 월간 서울사랑에 지속적으로 홍보함.

자료: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20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6.17.), 청소년근로보호센터(<http://blog.naver.com/hwml388/220026183826>), 윤효식(2013), 서울시 보도자료(2013.9.17, 9.23, 2014.4.11.)

28)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 포털(주)아르바이트친국,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

29)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파리크라상, 코리아세븐 등 5개 기업

하지만 학생들의 체감도는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인쇄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근로권을 인지하고, 이를 마땅히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이름만 다른 홍보물들이 많고, 연중 1-2회 여는 거리캠페인 때 한 번씩 나눠주는데 사용하거나, 서울 내 고등학교에 학교당 100부 정도 배포하는 방식으로 인해 홍보물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학교에 배포를 할지라도 이에 대해 선생님들이 단순히 인쇄물만 전달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세세히 살펴볼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FGI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리플릿 제작에 참여한 사람을 마침 알고 있었기에 볼 수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이 1명 있었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받아 본 적이 없다’, ‘받아도 그냥 버린다’와 같은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청년권리장전과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봤자 이를 사업주가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 불가능하고, 청소년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인쇄물 제작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보다 효용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확장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인쇄물처럼 청소년의 근로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지고 밟히는 상황이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연중 1-2회 정도의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 2회 정도로 목적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릴레이 캠페인이나 같은 시간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을 통하여 이슈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현 정책 중 무료건강검진,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이 효과성 높은 정책 1, 2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제는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캠페인 콘텐츠는 실제로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내용의 캠페인을 원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업종으로 인종된 사업장들이 하나 둘 씩 늘어갈수록 학생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 학생들이 이런 일자리를 먼저 찾음으로써 비인종 사업장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어 확산효과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 기대한다.

III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과 특성

제1절 분석자료 개요

제2절 청소년/년의 성별 노동 실태

제3절 청소년/년의 성별 노동 경험 특성

제4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과 특성

III장에서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및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의 젠더 차이를 논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그 안에서 주목할 수 있는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 간의 차이와 그 의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1절 분석자료 개요

1. 분석자료 개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성별 현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은 전국 수준과 서울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별도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전국 규모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임영식 외, 2011)가 있다. 그 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2011)의 연구와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안선영 외, 2013)가 전국 규모로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조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남녀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필요

에 따라 그 외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들을 보충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패널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을 활용하였다.³⁰⁾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이하 서울시 실태조사)’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 자료이며,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연령제한 없이 서울시 대학가를 중심으로³¹⁾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 이십대 초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56.4%), 대학생은 제외한 십대 청소년/년은 106명에 불과하며, 조사에 포함된 아르바이트 직종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조사문항이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이나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하되, KYPS 5차년도(2007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자료³²⁾와 YP2007 1차년도(2007년도) 자료³³⁾를 함께 활용하였다. KYPS와 YP2007 모두 전국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자료에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서울시

30)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청년층 대상 대표적인 패널조사 자료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청년패널조사(YP200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가 있다. 그 중 KEEP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각 2,0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하는 연구로 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이 고졸 청년층에게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각 년도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31) 서울시에서 가장 아르바이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였다.

32) KYPS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3년(1차년도)부터 2008년(6차년도)까지 직업선택, 진로설정 및 준비(아르바이트 경험 포함), 여가, 일탈, 자아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5차년도(2007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을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12.5%, 2차년도에는 9.3%, 3차년도에는 9.8%, 4차년도에는 12.1%, 5차년도에는 25.7%로 나타났다. 6차년도에는 조사대상의 나이가 20세에 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년의 연령범위에 맞지 않아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33) YP2007은 2007년 기준 만15~29세 청년층 10,206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관련 문항으로는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종류, 기간,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년의 연령범위인 14세~19세 응답자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1차년도(2007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18세(대학생은 제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년만을 선택하여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각 자료의 대략적인 개요는 <표 Ⅲ-1>과 같다.

Ⅰ 표 Ⅲ-1 Ⅰ 분석자료 개요

조사명(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 문항 ¹⁾
전국 분석자료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전국 (제주제외) 2,842명 (학교 밖 142명)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최초시작시기,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방식, 급여액 • 아르바이트 종류, 취업경로, 동기, 수입사용처 • 중단이유 •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기재사항 안내여부 • 서류작성여부, 미작성 이유, • 연장근로 수당지급, 폭행경험, 부당해고 경험 • 아르바이트 만족도, 법령 인지도, 바라는 정부 역할
2011 전국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국 고등학생 1,618명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법 인지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서류작성유무, 임금수준 • 업종/직무, 근무일수/시간, 야간노동유무 • 산재시 해결방법, 부당대우경험정도/대처방법 • 정부의 과제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국 중 1 ~고 3 10,054명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법 인지도, •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경험없는 이유, 시작시기, 종류, 수입사용처, 업종, 총 기간, 근무일수/시간, 시급 • 구직경로, 직원수, 만족도 • 부당경험 여부/대처방법, 서류미작성 이유, 재해경험빈도
서울시 분석자료			
KYP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 3 2,967명	2007년 (5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속성: 업종, 시작시기, 근로동기 •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부모동의서 작성유무 • 노동시간: 근로시간 • 임금: 수준 • 부당경험: 임금체불, 야근휴일수당미지급, 초과수당미지급, 계약과 다른 업무, 부상, 인격모독, 구타/성희롱 • 미래직업에의 도움정도

조사명(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 문항 ¹⁾
YP2007 (한국고용정보원)	만15~29 세 청년층 10,206명	2007년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속성: 업종/업무, 근로횟수, 근로동기 • 노동시간: 근로시간 • 임금: 지급방식, 수준 • 아르바이트 영향
2013 서울시 실태조사 (서울시)	서울시 대학가 알바생 1,544명 (연령제한 없음)	2013년 하반기 (10.14~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속성: 업종/업무, 근무기간, 인력규모 • 근로계약 방식, 형태 • 노동시간: 근로/휴게시간 • 임금: 지급방식, 수준 • 부당경험: 임금체불, 업무중단, 제품구매, 대체인력, 폭언/폭행/성희롱/따돌림

주: 1) 각 자료별로 아르바이트 관련 조사 문항을 요약한 것임.

2. 분석자료의 일반적 현황

조사에 따라 남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율의 차이가 커 조사 결과를 일반화 하여 논하는 것은 어렵다.³⁴⁾ 그러나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십대 청소년/년의 약 30%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율은 고용노동부(2011) 조사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마다 통계적 유의성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율의 성별 차이를 일반화하여 논하기는 어렵다.

각 분석자료 별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3~18세(대학생 제외) 청소년/년 수’는 아래 <표 III-2>와 같다. 한편 서울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조사자료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분석 사례수가 1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³⁵⁾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서울시 전체 아르바이트 실태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

34) 선행연구의 아르바이트 경험율 차이는 조사대상 표본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학교 밖 청소년/년이 포함된 고용노동부(2011) 조사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참교육연구소(2011)의 조사는 그 조사대상의 특성 상 다른 자료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5) KYPs는 남성청소년 54명, 여성청소년 66명, YP2007은 남성청소년 65명, 여성청소년 66명, ‘서울시 실태조사’는 남성청소년 34명, 여성청소년 72명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수이다.

Ⅲ 표 Ⅲ-2 Ⅰ 분석자료의 일반적 현황

(단위: %, 명)

분석자료	아르바이트 경험율		분석 사례 수				전체
			성별		연령(만)		
	남	여	남	여	13-15세	16-18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6.6	17.4	876	831	331	1,376	1,707
고용노동부(2011) ¹⁾	32.2	25.9	-	-	-	-	830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2011) ²⁾	36.4	38.3	312	310	-	622	622
KYPS(2007) ²⁾	23.0	28.4	54	66	-	120	120
YP2007(2007)	16.3	17.2	65	66	18	113	131
서울시 실태조사 (2013) ³⁾	-	-	34	72	1	105	106

주: 1) 고용노동부(2011) 자료의 경우, 원자료 확보가 어려워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아르바이트 경험율과 전체 분석 사례 수만 파악할 수 있었음.

2) 전교조 참교육연구소(2011)와 KYPS(2007) 자료는 13-15세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울시 실태조사(2013년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 조사)'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율을 산출할 수가 없음.

제2절 청소년/년의 성별 노동 실태

1. 성별 아르바이트 업종 현황

성별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아르바이트 업종 차이이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전단지 돌리기, 패스트푸드점, 식당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성 청소년에 비해 서빙이나 사무보조 업무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청소년은 배달, 주유소, 건설·공장노동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예성, 2006: 558-559; 고용노동부, 2011: 54-55; 참교육연구회, 2011: 11 등).

【 표 III-3 】 성별에 따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종류(전국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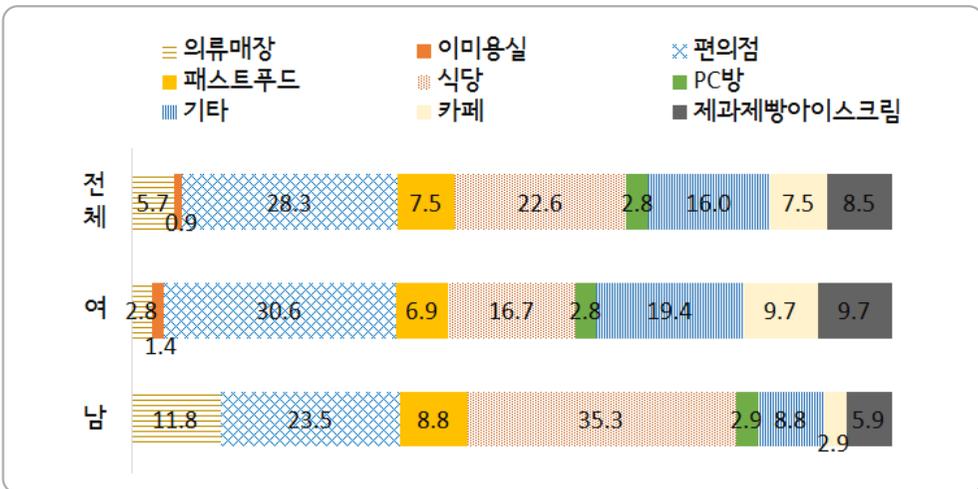
	전체	여	남
전단지 돌리기	24.8	26.2	23.8
배달	7.7	0.7	12.5
카운터 및 서빙	50.9	61.4	43.7
주유소 주유원	4.8	4.2	5.1
건설 공장노동	6.2	2.1	9.0
제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1.4	0.9	1.8
기타	4.2	4.5	4.1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노동부(2011)

성별에 따른 업종 차이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³⁶⁾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의 경우

36)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패널 5차 자료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년들은 주로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22.5%)과 분식점·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14.2%), 카페 및 주점서빙(13.3%)에 종사하는 것

대학가 주변 아르바이트만을 조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주된 업종(업무)인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 식당 배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업종 및 업무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업종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성별 업종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시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년들의 업종 분석 결과, 여성 청소년의 경우 편의점(30.6%)과 기타(화장품가게, 문구점 등)(19.4%)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의 경우 식당(35.3%)과 편의점(23.5%)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재분석

그림 III-1 |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업종 분포

으로 나타났다. 남녀차이를 보면,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남성청소년의 22.2%, 여성청소년의 22.7%)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남성 청소년의 경우 여성청소년에 비해 편의점과 게임방 아르바이트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성청소년에 비해 분식점, 중국집 서빙/카운터/배달(18.2%)과 카페 및 주점(16.7%)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성별 근로조건 현황

성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수준, 법적·제도적 안정망 실태, 부당노동 실태, 감정노동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주당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청소년에 비해 남성청소년이 더 길어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국 자료와 서울시 자료에서 모두 대체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년들의 절반 이상은 주 5일 일하며, 일일 평균 7시간 내외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 참조). 이는 청소년/년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이나 부당노동의 문제점 개선 등과 함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표 III-4 ■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와 일일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서울시	전국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 1-2일	11.8	26.0
	주 3-4일	9.7	25.0
	주 5일	53.8	49.0
	주 6일 이상	24.7	-
일일 평균 근로시간		7.6	6.94

자료: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 전국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2011) 조사결과, 전국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2011) 조사 결과임.

특히 모든 조사결과에서 일관되게 남성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청소년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황을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일주일 평균 4.6일, 32.2시간, 일일 평균 7.3시간 일을 하며, 남성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5.1일, 40.3시간, 일일 평균 8.3시간 일하고 있었다(<표 III-5> 참조).

【 표 Ⅲ-5 】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일, 시간, %)

	전체	남	여
주당 근로일수(평균)	4.8	5.1	4.6
주 1-2일	11.8	6.5	14.5
주 3-4일	9.7	6.5	11.3
주 5일	53.8	54.8	53.2
주 6일 이상	24.7	32.3	21.0
주당 근로시간(평균)	35.8	40.3	33.2
주 1-14시간	13.2	3.6	18.8
주 15-34시간	35.5	39.3	33.3
주 35시간 이상	51.3	57.1	47.9
일일 근로시간(평균)	7.6	8.3	7.3
일일 1-5시간	18.4	20.6	17.2
일일 6-10시간	70.4	61.8	75.0
일일 11시간 이상	10.4	17.6	7.8

자료: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재분석

이와 같이 주당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 상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성별 업종 분포 차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한데, 업종별 주당근로일수, 주당/일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식당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편의점으로 나타난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60%가 식당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³⁷⁾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7)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의 성별 업종 분포 현황은 앞의 <그림 Ⅲ-1>에 제시되어 있다.

2) 임금수준: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의 임금수준 낮아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살펴보면 2011년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청소년/년 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교육연구소, 2011; 고용노동부, 2011). 반면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안선영 외, 2013)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22.2%,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에서는 12.5%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안선영 외(2013: 184) 연구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조사마다 조사대상의 연령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표 III-6 ■ 성별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아르바이트 청소년/년 비율

(단위: %)

	전체	남	여
고용노동부(2011) ¹⁾	46.7	40.7	54.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²⁾	22.2	15.9	28.8
서울시 실태조사(2013) ²⁾	12.5	5.0	15.9

주: 1)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미만 비율

2)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미만 비율

이러한 임금수준의 열악성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 III-6>에 나타나듯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비율이 낮게는 1.5배에서 높게는 3배 가까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평균 시급에서도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약 4,505원, 남성 청소년들은 약 4,680원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약 5,052원, 남성 청소년들은 약 5,115원으로 남성 청소년들의 평균 시급이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패널(5차년도)과 청년패널(1차년도)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³⁸⁾. 즉, 청

소년/년 아르바이트에서도 성인 노동시장에서와 동일하게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의 근로일수 및 시간에서의 성별 차이와 동일하게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역시 자료의 한계 상 기존 자료를 통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여러 논의를 종합해보면 성별에 따른 업종 및 업무의 차이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남성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배달이나 택배 상·하차, 매니저 업무 등에 주로 종사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서빙 등에 종사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3) 법적·제도적 안정망: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이 더욱 취약

법적·제도적 안정망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과 사회보험 가입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2011) 조사 결과에서는 23.6%,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에서는 55.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훨씬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특히,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안정망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8) 청소년패널 결과 남성청소년 임금은 4,338원(시급), 여성청소년 임금은 3,969원(시급)으로 나타났으며, 청년패널 분석결과, 남성청소년 임금은 3,510원(시급)/32,920원(일급)/481,300원(월급), 여성청소년 임금은 5,220원(시급)/28,210원(일급)/315,380원(월급)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성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단위: %)

	전체	남	여
전국	23.6	27.6	19.8
서울시	55.8	72.7	47.9

자료: 전국 자료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2011), 서울시 자료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

한편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율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아르바이트 청소년/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용보험 34.5%, 건강보험 35.7%, 국민연금 33.3%), 사업주 의무 가입 적용대상인 산재보험은 18.4%(잘모름 52.0%)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 모두 가입률이 절반 미만에 그치는 수준이나,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3명 꼴 정도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정망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잘모름	
성별	남	44.4	47.4	47.4	25.8	45.2
	여	27.8	29.7	27.8	14.9	55.2
전체		33.3	35.7	34.5	18.4	52.0

자료: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재분석

4) 부당노동 실태

조사마다 부당대우 경험 비율 및 성별 현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경향은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 표 Ⅲ-9 Ⅲ 성별에 따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부당노동 실태

(단위: %)

	전국			서울시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임금지급 지연	12.6	13.8	11.3	7.7	5.9	8.8
임금미지급 또는 저임금 지급	14.2	12.7	16.3	7.7	5.9	8.6
초과수당 미지급	15.6	16.9	14.2	54.9	46.7	59.0
일방적 해고	5.4	4.9	6.1	-	-	-
손실책임 부당 전가	-	-	-	17.9	10.7	21.4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11.8	13.8	9.9	11.9	21.9	7.2
고객으로부터의 폭행	2.1	3.7	0.3	1.0	3.1	0.0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1.6	2.3	0.9	2.0	0.0	2.9
고용주·상급자로부터의 폭언	8.6	11.4	5.7	2.0	3.0	1.5
고용주·상급자로부터의 폭행	3.0	4.7	1.2	0.0	0.0	0.0
고용주·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	1.9	2.5	1.4	1.0	0.0	1.5
업무 상 산재 경험	-	-	-	6.7	8.8	5.7
산재에 대한 무보상	4.1	5.9	2.3	-	-	-
강제업무 중단(꺾기)	-	-	-	5.8	3.0	7.1

주: 1) -표시는 미조사항목임.

자료: 전국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187-190), 서울시 자료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

첫째, 남성 청소년의 경우 고용주나 고객으로부터 폭행, 폭언의 비율과 산재 비율이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과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한국청소년패널(5차년도) 분석 결과에서 모두 약 11~12% 정도의 청소년/년들이 고객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에서는 남성 청소년의 고객 폭언 경험 비율이 청소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와 한국청소년패널(5차년도) 분석 결과³⁹⁾에서 모두 남성 청소년의 업무 도중 질병이나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 업종 및 업무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업종 및 업무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주로 가게 내에서 하는 카운터, 서빙 업무가 주된 반면, 남성청소년의 경우 배달과 건설 현장 노동과 같이 사고의 위험이 높고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현상이 성별에 따른 산재 비율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산재를 당한 경우 청소년/년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며, 이는 산재 노출 비율이 높은 남성 청소년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조사에서 청소년의 경우 성희롱 피해 및 임금 지급과 관련된 피해 비율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성별 임금수준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는데 여기에 더해 임금을 못받거나 늦게 받는 등의 피해 역시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청했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경우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응답이 27.3%로 남성 청소년에 비해 지급이 약속된 임금에 대한 권리 행사에서도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이나 고용주·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의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 청소년의 피해 비율이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 조사결과에서는 모두 청소년의 피해 비율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9) 한국청소년패널(5차년도) 분석 결과, 전체 25.8%, 남성 청소년 58.1%, 청소년 19.7%로 성별 차이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나 산재비율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의 경우 대학가 주변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실태로 다소 안전하고, 덜 위험한 업종(업무)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감정노동: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의 감정노동 노출 가능성 높아

한편 ‘감정노동’⁴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알바몬, 2013년 5월 발표).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73.5%, 남성 응답자의 60.2%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들이 감정노동을 겪는 비율이 높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퇴사충동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뉴스, 2013.05.31). 조사대상이 청소년으로 한정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문제로 단순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감정노동을 겪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고객상담직(77.8%), 서빙/안내(74.8%), 매장관리/판매(69.3%)로 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0)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으로 엘리 러셀 혹실드의 <관리된 심장(The Managed Heart)>(1983)에서 처음 등장했다.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직업상 속내를 감춘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손님을 대하는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다. 항공기 승무원과 판매원, 전화상담원,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속한다.

제3절 청소년/년의 성별 노동 경험 특성

본 절에서는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동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아르바이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성별 노동 경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아르바이트 동기와 수입 사용처에서의 성별 차이

청소년/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용돈을 벌기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1: 59). 이러한 경향은 서울시 거주 청소년/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패널(1차년도)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Ⅲ-10】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동기

(단위: %, 명)

	전국			서울시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생활비(학비) 벌이	6.5	7.5	5.2	8.3	10.8	6.0
용돈벌이	79.4	77.3	82.1	75.6	78.5	72.7
취업경험	5.4	6.4	4.1	6.1	6.2	6.1
여가시간 활용	5.1	6.0	3.8	6.1	1.5	10.6
주위권유	2.3	2.1	2.5	0.8	0.0	1.5
친구가 하나까	-	-	-	3.1	3.1	3.0
기타	1.3	0.7	2.3	-	-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청년패널(1차년도)은 서울시 거주 사례만 뽑아서 재분석한 결과임. 분석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장의 1절에 서술하였음.

2) - 표시는 미조사 항목임.

자료: 전국 자료는 고용노동부(2011: 59), 서울시 자료는 「청년패널 1차년도 자료」 재분석 결과

한편 세부적으로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 동기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소년이 청소년에 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혹은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패널(1차년도) 분석 결과 청소년의 경우 주위의 권유와 여가시간 활용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남성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왜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는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돈 벌이를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이 대부분인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 청소년과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친구들과 노는 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옷, 지갑, 가방, 신발 등을 사고 싶은 물건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어(고용노동부, 2011: 61; 안선영 외, 2013: 156), 대체로 본인의 소비욕구를 충족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집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 비율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분석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12.0%, 남성 청소년의 19.4%, 고용노동부(2011) 분석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13.3%, 남성 청소년의 17.5%로 남성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집 생활비에 보태는 비율이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 청소년이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부양의 책임을 일찍이 느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 동기 및 번 돈의 사용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우리 사회의 젠더-섹슈얼리티 질서에 따른 성별화된 사회화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급여사용처나 근로동기 등 성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젠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서구의 논의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 물질적 보상이나 성인기 직업에 대한 인식이 강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며, 청소년은 인간관계 등의 내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사회화 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Manheim, 1988; Mortimer, Pimentel, Ryu, Nash & Lee, 1996; 김예성, 2006 재인용). 다시 말해 성별에 따라 상이한 사회화 과정이 청소년/년들의 아르바이트 동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영향력 및 만족도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1)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영향력 인식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자료와 서울시 자료 분석 결과에서 모두 경제적 도움이나 돈에 대한 가치관 정립,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이나 취업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표 III-12〉 참조).

【표 III-11】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영향력 인식(전국 현황)

(단위: %)

	진로 고민	취업 경력	돈 가치관 정립	일 가치관 정립	사회 생활 이해	경제 이해 제고	사회 신뢰 제고	노동 가치 인식	사회 적응력 향상	문제 해결력 향상	책임감 제고
전체	2.06	2.16	2.91	2.80	2.76	2.67	2.22	2.91	2.72	2.57	2.78
남	2.15	2.23	2.89	2.80	2.75	2.67	2.32	2.90	2.74	2.60	2.77
여	1.96	2.08	2.93	2.79	2.77	2.67	2.12	2.93	2.69	2.55	2.80

주: 4점 만점 기준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안선영 외, 2013: 166-168)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바이트가 개인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남성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외, 2013: 16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다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응답 결과도 남성 청소년이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패널(1차년도)을 활용한 서울시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다. 미래의 진로와 관련있는 응답 항목인 ‘경력 인정’, ‘진로선택 도움’,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의 응답 비율을 합하면 남성

청소년은 21.5%로 15.2%인 청소년들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아르바이트가 단순 용돈벌이 수단을 넘어 진로탐색에 도구로서의 역할 수행은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들에게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III-12 |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영향력 인식

(단위: 명, %)

	전체	남	여
경제적 도움	39.7	43.1	36.4
경력 인정	3.1	4.6	1.5
진로선택 도움	6.1	4.6	7.6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	9.2	12.3	6.1
사회생활 도움	26.0	23.1	28.8
도움 안 됨	16.0	12.3	19.7
전체	131(100.0)	65(100.0)	66(100.0)

자료: 「청년패널 1차년도 자료」 재분석

2)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만족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의 조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4점 만점에 3.0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안선영 외, 2013: 181).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용노동부(2011)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르바이트 만족도가 조사된 모든 항목에서(급여액, 근로시간, 근로환경 및 주변 시설, 근로강도, 아르바이트일 내용, 동료)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며, 급여액, 근로강도, 동료에 대한 만족도 세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안선영 외, 2013: 181)는 점이다.

【 표 Ⅲ-13 】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만족도(전국 현황)

(단위: %)

	급여액	근로시간	근로환경 및 주변시설	근로강도	아르바이트 일 내용	동료
전체	2.75	2.75	2.85	2.61	2.79	3.06
남	2.83	2.78	2.88	2.67	2.82	3.18
여	2.67	2.71	2.81	2.56	2.75	2.95

주: 4점 만점 기준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안선영 외, 2013: 181-182)

이와 같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아르바이트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표 Ⅲ-12>을 보면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르바이트가 노동의 가치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년들의 특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제4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 및 서울시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년들은 전체 청소년/년의 3분의 1 정도로 10명 중 3-4명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4-5시간 정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이 주중 전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아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당노동 실태도 나아지지 않고 있었는데,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 단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에 5명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아르바이트 청소년/년에게 전가하거나 일을 그만두기 위해 대체인력을 본인이 구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한다거나, 주휴수당을 못받는 다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는 경우도 각각 2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나 폭언·폭행·성희롱, 임금지급 지연 등의 피해 비율도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시기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급여를 받는 청소년/년이 절반 가까이 나타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젠더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를 실태를 살펴보면, 성인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와 유사하게 직종, 근로실태(임금, 근로시간 등), 동기, 아르바이트 만족도 등에서 남녀청소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가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전반에 걸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근로실태 및 아르바이트 만족도는 남성 청소년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금수준,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사회보험 가입을 등에서는 남성 청소년에 비해서 청소년이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동기나 임금의 사용처, 아르바이트에 대한 개인적 인식 등에서 우리사회의 성별화된 사회화 과정이나 여성‘성’, 남성‘성’을 규정하는 인식들이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존 자료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조사 방향 논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하나의 사회구성원 범주로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분석했을 뿐, ‘젠더’를 주된 프레임으로 두고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젠더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다. 또한 ‘십대’라는 취약한 사회적 위치 때문에 성별에 구분 없이 남녀청소년 모두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어 양적조사를 통해 미약하게 나타나는 수치 차이를 성별 차이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⁴¹⁾

한편 서울시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한국청소년패널(5차년도), 청년패널(1차년도)의 3가지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위에서 논한 분석결과를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경향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앞의 분석자료 개요에서 서술하였듯이 기존 조사 자료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령인 만 13~18세(대학생 제외)가 극히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전국 단위 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서울시 현황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각 조사자료 별로 100명을 상회하는 수준(〈표 III-1〉 참조)으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그 사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만으로 분석 범위를 축소시킬 경우 사례 수는 더욱 적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여

41) 이는 본 연구의 착수 자문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양적연구방법을 통해 남녀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갖는 원칙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근로실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남녀청소년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오지, 양적조사를 통해서 ‘십대여성’의 특수한 열악성이 드러나기 매우 어려우며,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매우 미묘한 차이일 것이라는 것이 착수자문회의에 참석하였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주고자 할 경우 기존 조사 자료가 갖는 한계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십대 여성’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개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시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1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논하는 것은 어려우며, 더욱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에서의 성별 차이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서울시 거주 만 13~18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젠더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질적연구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양적 조사를 통해서도 청소년/년의 노동 경험에서 젠더가 작동되는 방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성별 차이는 본장의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상의 것을 얻어내기 힘들다. 둘째, 설문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수의 한계로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소년들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목적은 청소년/년의 노동 경험에서 젠더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젠더 이외의 계급, 학교 유형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연구 목적이다. 따라서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청소년들 간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젠더-섹슈얼리티 체계가 청소년의 노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는지,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노동 경험을 의미화하는 지에 대해서는 FGI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접근에서 젠더 관점의 필요성 제기 및 청소년/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그를 토대로 어떠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IV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실태

제1절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제2절 서울시 청소년의 노동 경험과 그 맥락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실태

제1절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앞서 서술했듯이 서울시 십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십대 여성’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개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시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1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 욕구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2013년 7월~현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1996년~2001년 출생자) 청소년이며, 총 54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분석에 적절치 않은 사례 4명을 제외한 540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표 IV-1〉 참조). 학교진학 여부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대상의 20%정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조사대상에 대한 접근 및 모집단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외 표본할당 기준은 두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24일~8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와 조사원을 통한 1:1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표 IV-1 ■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 2014년 7월 24일 ~ 8월 1일
조사대상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 거주 만 13~18세 청소년
유효표본	• 540명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및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3) 조사내용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여주기 위한 탐색적 조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현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조사에 기 활용된 설문지들을 통해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고,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젠더 관점에서의 청소년 관련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영역은 크게 ① 근로환경 실태, ② 부당행위 경험 실태, ③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 ④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정책방안에 대한 욕구, ⑤ 조사대상의 인적 사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설문조사 내용

조사항목	조사 세부 내용
근로환경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역 • 업종과 담당업무 • 근무인원 • 아르바이트 기간 • 근무시간: 일일 평균/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휴게시간 유무 • 급여형태와 급여액
부당노동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경험여부와 대처방안 • 산재경험여부와 대처방안 •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경험과 대처방안 • 감정노동 경험 여부 • 심대여성으로서 힘든 점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지속 의향: 경험 아르바이트 분야의 구직의향, 아르바이트 중단 의향 • 아르바이트의 영향력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정책방안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 희망하는 정부 정책
조사대상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 거주지와 거주형태 • 주관적 경제 수준 • 용돈 규모 • 성적수준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544명이며, 이중 540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111명(20.6%) 참여했으며, 중학생이 30명(5.6%), 고등학생이 399명(73.9%)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 외에는 학교 유형별, 연령별 표집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증하듯이 본 조사에서 역시 70% 이상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90.9%)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취 혹은 하숙을 하는 경우(3.1%), 친구집에 거주(2.8%)하거나

친척집에 거주(2.2%)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으며, 쉼터에 머물거나 아예 정해진 주거지가 없다는 응답도 약 1%정도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상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1%에 불과한 반면, 중위층과 하위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48.5%, 40.4%로 나타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인의 성적을 묻는 질문에는 하위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중위층이 33.0%, 상위층이 26.5%로 나타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성적이 대체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근무지역으로는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가 속한 동남권(24.8%)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일대의 서남권(24.6%),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일대의 동북권(2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학력	학교 밖	111	20.6
	중학교	30	5.6
	고등학교	399	73.9
연령	14세~16세	45	8.3
	17세~19세	495	91.7
거주지	부모님댁	491	90.9
	친척집	12	2.2
	친구집	15	2.8
	자취/하숙	17	3.1
	쉼터	1	0.2
	정해진 주거지 없음	4	0.7
주관적 경제수준	하위층	218	40.4
	중위층	262	48.5
	상위층	60	11.1

		사례수	비율
주관적 성적수준	하위층	219	40.6
	중위층	178	33.0
	상위층	143	26.5
근무지 ¹⁾	도심권	43	8.0
	동북권	131	24.3
	서북권	81	15.0
	서남권	133	24.6
	동남권	134	24.8
	기타 ²⁾	18	3.3
전체		540	100.0

주: 1)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동북권: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2) 본 조사는 서울시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근무지에서의 기타는 서울지역 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2.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아르바이트 현황,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방안 욕구,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1) 아르바이트 현황

서울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업종과 담당업무, 사업장 규모(근무인원), 아르바이트 기간, 근무시간, 급여형태와 급여액, 부당노동(부당경험, 산재경험,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경험과 대처방법, 감정노동 경험 여부, ‘십대 여성’으로서 힘든 점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주지하고 있는 대로 근로환경이 열악하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구직이나 (성)폭력, 폭언, 감정 노동 등에서 ‘십대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각 조사 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열악한 근로 환경

가. 업종: 절반가까이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업종분포를 보면, 앞의 II, III장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및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현황과 유사하게 서울시 청소년들은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점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패스트푸드점(15.3%), 편의점(9.9%), 웨딩 및 뷔페(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근무지에 따라 업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생의 경우 음식점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31.6%,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동일하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PC방(11.7%)과 주유소(9.9%)에 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웨딩 및 뷔페에서 일하는 비율(13.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스포츠서비스업(33.4%)과 기타(26.7%)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⁴²⁾.

근무지 권역별로는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에는 웨딩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웨딩 및 뷔페가 24.7%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과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에는 음식점의 비율(각각 28.6%, 29.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근무지 권역별 업종의 차이는 근무지 권역별 근무조건에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2)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 중학생이 30명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 여자중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IV-4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단위: %)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웨딩 및 뷔페	스포츠 서비스업 ¹⁾	커피 전문점	제빵제과 아이스 크림점	PC방	주유소	의류점	뷰티 화장품점	미용실	호프집소 주방	기타 ²⁾	X ² (df)
학력	학교 밖	31.6	12.6	14.4	0.0	2.7	5.4	2.7	11.7	9.9	1.8	0.9	0.9	1.8	3.6	169.847(26)**
	중학교	16.7	3.3	3.3	0.0	33.4	0.0	3.3	0.0	0.0	10.0	0.0	0.0	3.3	26.7	
	고등학교	22.8	16.5	9.3	13.3	8.5	4.5	3.8	0.8	0.0	0.8	1.3	1.0	0.4	17.0	
	일반고	22.6	14.3	9.8	13.6	9.1	5.7	3.4	0.8	0.0	1.1	1.1	1.1	0.4	17.0	
	특목고	35.3	0.0	11.8	5.9	17.6	0.0	0.0	0.0	0.0	0.0	5.9	0.0	0.0	23.5	
	특성화고	23.5	22.4	7.5	15.0	5.6	2.8	3.7	0.9	0.0	0.0	0.0	0.9	0.9	16.8	
	자율고	0.0	40.0	10.0	0.0	10.0	0.0	20.0	0.0	0.0	0.0	10.0	0.0	0.0	10.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26.0	20.0	9.5	10.9	7.7	3.6	3.2	4.5	2.3	1.4	0.5	0.0	0.9	9.5	45.591(26)*
	중위층	23.2	12.5	10.6	10.3	8.4	4.2	3.8	2.3	2.3	1.9	0.8	1.9	1.1	16.7	
	상위층	23.0	9.8	8.2	3.3	13.1	8.2	3.3	0.0	0.0	0.0	4.9	0.0	0.0	26.2	
근무지	도심권	27.3	18.2	2.3	13.6	2.3	9.1	2.3	0.0	2.3	0.0	0.0	2.3	4.4	15.9	154.686(65)**
	동북권	29.0	16.8	7.6	0.8	14.5	3.1	2.3	3.8	2.3	3.8	0.0	2.3	0.0	13.7	
	서북권	22.6	17.9	11.9	6.0	8.3	4.8	3.6	7.1	3.5	1.2	1.2	1.2	0.0	10.7	
	서남권	28.6	15.8	12.0	5.3	9.0	2.3	4.5	3.0	1.5	0.0	1.5	0.0	0.0	16.5	
	동남권	14.9	12.7	11.9	24.7	6.0	6.7	4.5	0.7	1.5	1.5	1.5	0.0	0.7	12.7	
	기타	27.8	0.0	5.6	5.6	0.0	0.0	0.0	0.0	0.0	0.0	5.6	0.0	11.1	44.3	
전체		24.4	15.3	9.9	9.7	8.6	4.4	3.5	2.9	2.0	1.5	1.1	0.9	0.9	14.9	

주: 1) 스포츠·서비스업은 헬스장, 요가, 당구장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음.

2) 기타 업종은 학원, 콜센터, 방청객, 서점, 과외, 전단지, 택배회사, 휴대폰매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은 p<.01을 의미함.



나. 담당업무: 판매·카운터, 서빙 업무를 주로 담당

다음으로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10명 중 3명이 판매·카운터 업무를 했다고 응답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서빙(25.2%), 전단지 배포(18.4%), 단순업무보조(13.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생은 주로 판매·카운터와 서빙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판매·카운터가 41.5%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 배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생은 70% 정도가 전단지배포를 했다고 응답하여 학력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담당업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중·하위층에서 모두 판매·카운터 업무를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한 것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판매·카운터나 서빙, 조리·주방보조 등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며 고된 업무의 경우 상위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단지배포나 기타(학원보조, 과외, 방청객 등)와 같이 일회성이거나 상대적으로 사무직에 가까운 업무는 상위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담당업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카운터는 편의점(88.9%), 패스트푸드점(72.3%), PC방(68.8%),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68.4%), 커피전문점(54.2%), 의류점(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빙은 웨딩 및 뷔페(77.4%), 음식점(64.4%), 호프집·소주방(60%)에서, 단순업무보조는 미용실(80%)과 주유소(63.6%), 뷰티화장품점(33.3%)에서, 전단지배포는 스포츠·서비스점(87.3%)과 의류점(50%), 뷰티화장품점(33.3%)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종의 성격에 따른 주요 업무의 형태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 표 IV-5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무

(단위: %)

		판매 카운터	서빙	전단지 배포	단순업 무보조	조리주 방보조	접대성 매매호 객행위	기타	X ² (df)
학력	학교 밖	41.5	28.8	3.6	15.3	9.0	0.0	1.8	78.058(12)**
	중학교	10.0	0.0	70.0	10.0	3.3	0.0	6.7	
	고등학교	29.6	25.8	18.8	12.8	7.0	0.2	5.8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32.7	31.8	12.7	10.5	9.1	0.0	3.2	39.161(12)**
	중위층	30.4	21.3	22.1	15.2	6.5	0.0	4.5	
	상위층	26.2	18.0	23.0	13.1	3.3	1.6	14.8	
업종	편의점	88.9	1.8	0.0	9.3	0.0	0.0	0.0	845.742(78)**
	커피전문점	54.2	12.5	12.5	12.5	8.3	0.0	0.0	
	음식점	6.1	64.4	11.4	7.5	9.8	0.8	0.0	
	패스트푸드점	72.3	2.4	1.2	6.0	18.1	0.0	0.0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68.4	10.5	0.0	15.8	5.3	0.0	0.0	
	의류점	50.0	0.0	50.0	0.0	0.0	0.0	0.0	
	뷰티화장품점	16.7	0.0	33.3	33.3	0.0	0.0	16.7	
	미용실	0.0	0.0	20.0	80.0	0.0	0.0	0.0	
	주유소	36.4	0.0	0.0	63.6	0.0	0.0	0.0	
	PC방	68.8	0.0	12.4	18.8	0.0	0.0	0.0	
	호프집소주방	0.0	60.0	20.0	0.0	2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2.1	0.0	87.3	10.6	0.0	0.0	0.0	
	웨딩 및 뷔페	0.0	77.4	1.9	7.5	13.2	0.0	0.0	
기타	6.2	0.0	35.8	24.7	0.0	0.0	33.3		
전체		30.9	25.2	18.4	13.1	7.2	0.1	5.1	

주: 1) **은 p<.01을 의미함.

다. 사업장 규모: 10곳 중 7.5곳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마지막으로 사업장 근무인원을 보면, 전체의 74.7%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53.7%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5인 이상~10인 미만(21.0%), 10인 이상~30인 미만(20%), 30



인 이상(5.3%)의 순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장 규모가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수준과 근무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서는 웨딩 및 뷔페와 패스트푸드점만 10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응답이 각각 67.9%, 38.6%로 나타났고, 그 외의 업종은 모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인 웨딩 및 뷔페는 평균 근무인원이 약 25명이었으며, 반면 호프집·소주방은 약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단위: %)

		5인미만	5인이상 10인미만	10인이상 30인미만	30인이상	평균
학력	학교 밖	75.7	18.9	3.6	1.8	5.3
	중학교	63.3	26.7	10.0	0.0	4.7
	고등학교	46.9	20.8	25.6	6.7	10.1
X ² (df), F		42.728(6)**				3.949*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52.8	18.6	22.7	5.9	8.9
	중위층	55.1	21.3	18.3	5.3	9.0
	상위층	50.8	27.9	18.0	3.3	7.7
X ² (df), F		4.159(6)				.128
근무지	도심권	47.7	20.5	20.5	11.3	10.5
	동북권	65.7	19.1	9.9	5.3	6.3
	서북권	57.1	23.8	14.3	4.8	8.7
	서남권	54.9	21.8	21.1	2.2	7.5
	동남권	41.8	20.9	31.3	6.0	12.0
	기타	44.4	16.7	27.8	11.1	8.7
X ² (df), F		32.458(15)**				1.595

		5인미만	5인이상 10인미만	10인이상 30인미만	30인이상	평균
업종	편의점	96.3	3.7	0.0	0.0	2.6
	커피전문점	58.3	33.3	8.4	0.0	4.5
	음식점	61.4	25.8	11.4	1.4	5.5
	패스트푸드점	15.7	36.1	38.6	9.6	11.8
	제빵제과	68.4	31.6	0.0	0.0	3.7
	아이스크림점					
	의류점	62.5	12.5	25.0	0.0	4.5
	뷰티화장품점	83.3	16.7	0.0	0.0	2.7
	미용실	80.0	0.0	20.0	0.0	5.4
	주유소	54.5	45.5	0.0	0.0	4.2
	PC방	93.8	0.0	6.2	0.0	2.8
	호프집소주방	100.0	0.0	0.0	0.0	2.6
	스포츠서비스업	68.2	19.1	10.6	2.1	5.3
	웨딩 및 뷔페	3.8	13.2	67.9	15.1	24.7
	기타	55.6	13.6	18.5	12.3	12.4
X ² (df), F		248.105(39)**				5.866**
전체		53.7	21.0	20.0	5.3	8.8

주: 1) **은 p<.01을 의미함.

라. 근속기간,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알바, 하루 약 6시간, 주당 약 3일을 근무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기간을 보면,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35.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전체 응답자 중 약 75%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근속기간이 짧은 만큼 고용안정성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라는 동일한 고용지위 내에서도 나이가 어리며, 여성인 청소년들이 근속기간이 짧다는 것은 ‘2013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의 평균 근속기간이 10.6개월, 3개월 미만의

단기근로가 26.1%, 1년 이상의 장기 근속이 28.7%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3개월 미만이 75.2%, 1년 이상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단위: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기타	X ² (df)
학력	학교 밖	11.7	55.0	28.8	4.5	0.0	0.0	76.444(10)**
	중학교	76.6	10.0	6.7	0.0	6.7	0.0	
	고등학교	44.9	31.6	13.3	5.8	4.3	0.1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28.6	39.1	21.4	5.9	4.5	0.5	26.786(10)*
	중위층	47.2	34.2	12.5	3.8	2.3	0.0	
	상위층	49.2	26.2	11.5	8.2	4.9	0.0	
업종	편의점	25.9	53.7	14.8	5.6	0.0	0.0	174.073(65)**
	커피전문점	50.0	20.8	20.8	4.2	4.2	0.0	
	음식점	37.1	38.7	17.4	2.3	4.5	0.0	
	패스트푸드점	14.5	37.4	27.7	12.0	8.4	0.0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5.3	36.8	47.4	10.5	0.0	0.0	
	의류점	62.5	0.0	25.0	12.5	0.0	0.0	
	뷰티화장품점	66.6	16.7	0.0	0.0	16.7	0.0	
	미용실	20.0	40.0	20.0	20.0	0.0	0.0	
	주유소	0.0	90.9	9.1	0.0	0.0	0.0	
	PC방	18.8	75.0	0.0	6.2	0.0	0.0	
	호프집소주방	20.0	60.0	2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76.6	19.1	4.3	0.0	0.0	0.0	
	웨딩 및 뷔페	62.3	20.8	7.5	9.4	0.0	0.0	
	기타	56.9	25.9	9.9	1.2	4.9	1.2	
전체		39.9	35.3	16.0	5.1	3.5	0.2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가장 높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도 2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이 각각 76.6%, 44.9%로 높게 나타나 진학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근무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상위층은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를 하는 비율(각각 47.2%, 49.2%)이 높은 반면, 하위층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39.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1.4%로 높게 나타나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근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의 경우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종은 스포츠·서비스업(76.6%), 뷰티화장품업(66.6%), 의류점(62.5%), 웨딩 및 뷔페(62.3%), 커피전문점(50%)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의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47.4%)이 가장 높게 나타나 타 업종 대비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울시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약 6시간 일을 하며, 주당 평균 약 3일, 일주일에 약 17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학력, 가구의 경제적 수준,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학력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43)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대해 범주별 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부록의 <표 1>, <표 2>, <표 3>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일일 평균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50.7%)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1시간 이상~5시간 미만(38.6%), 10시간 이상(9.9%), 1시간 미만(0.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당 평균 근무일수를 보면, 2일 근무한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3일(20.4%), 5일(19.5%), 1일(17.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10시간 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고,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0.9%),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18.8%),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면 상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 비해 하위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 표 IV-8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및 일수

(단위: 시간, 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학력	학교 밖	6.5	4.3	28.0
	중학교	2.9	2.9	8.1
	고등학교	5.5	2.9	15.1
F		21.566**	34.589**	60.924**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6.2	3.4	20.6
	중위층	5.3	3.0	15.8
	상위층	4.4	3.1	12.9
F		11.814**	4.520*	12.480**
업종	편의점	6.3	3.3	20.4
	커피전문점	5.0	3.2	16.2
	음식점	5.5	3.1	16.9
	패스트푸드점	5.9	3.8	22.3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5.5	3.5	19.6
	의류점	4.3	4.4	21.5
	뷰티화장품점	4.8	4.2	22.2
	미용실	8.7	4.6	47.0
	주유소	6.6	4.0	25.4
	PC방	7.1	4.3	30.8
	호프집소주방	4.8	4.0	21.0
	스포츠서비스업	2.7	3.5	9.3
	웨딩 및 뷔페	8.8	1.4	12.0
	기타	4.2	2.9	12.6
F		17.120**	9.175**	9.341**
전체		5.6	3.2	17.4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음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5~6시간, 주 3~4회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업종 중 하나인 웨딩 및 뷔페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은 약 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 반면 주로 주말이나 평일 행사나 결혼식이 있을 때만 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1.4일로 가장 짧게 나타나 타 업종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은 스포츠·서비스업으로 하루 평균 약 3시간 일하며, 주당 근로시간도 약 9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마. 급여형태 및 수준: 평균 시급 5,126원...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제가 약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월급제(19.1%), 일당제(9.6%) 순으로 나타났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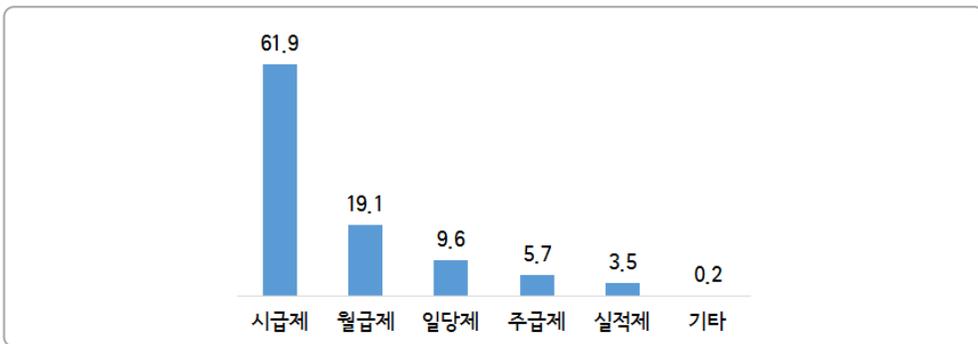


그림 IV-1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형태

급여형태에 따른 평균 급여액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형태인 시급제의 경우 평균 5,126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인

44) 학력,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 업종별 차이는 부록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학력과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 업종별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급여형태를 묻는 질문에 집단 간 차이 없이 시급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예외적으로 일당제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뷰티·화장품점이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인 50%정도로 나타났으며, 월급제가 높은 업종은 미용실이 시급제와 더불어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16.7%는 2013년 최저임금인 4,860원 미만, 48.3%는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수준

(단위: 원, %)

		시급			일당	월급
		4,860원 미만	5,210원 미만			
학력	학교 밖	5,105	19.8	61.5	41,667	716,364
	중학교	5,222	9.5	52.4	14,000	210,000
	고등학교	5,122	16.2	43.4	39,642	350,60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5,143	19.4	65.9	40,200	399,897
	중위층	5,162	14.1	41.8	38,468	364,869
	상위층	4,845	17.1	46.7	37,792	426,250
업종	편의점	4,993	28.2	59.0	20,000	485,000
	커피전문점	3,917	28.6	65.3	44,000	513,750
	음식점	5,250	12.6	49.5	33,229	350,222
	패스트푸드점	4,926	25.9	53.7	21,500	358,917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5,089	16.7	50.0	40,000	336,667
	의류점	5,417	0.0	50.0	.	1,100,000
	뷰티화장품점	5,320	0.0	0.0	50,000	200,000
	미용실	5,355	0.0	0.0	.	350,000
	주유소	5,228	0.0	45.5	.	.
	PC방	5,240	40.0	53.3	.	.
	호프집소주방	5,125	0.0	60.0	21,000	.
	스포츠서비스업	5,127	11.8	73.5	10,000	.
	웨딩 및 뷔페	5,090	10.4	29.2	43,912	330,000
	기타	5,548	14.0	32.0	42,083	334,706
전체		5,126	16.7	48.3	38,889	387,448

주: 1) 주급제, 실적제, 기타는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본 표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결과 는 부록 <표 5>에 제시되어 있음.

앞의 II장과 III장의 남녀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분석결과에서 남성청소년에 비해 여성청소년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조사의 평균시급(5,126원) 및 최저임금 미달 비율(48.3%) 역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청소년의 임금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미달 비율에 대해 ‘2013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전체 여성 7.9%, 십대 여성 15.9%)와 비교 하면 본 조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2,30대 여성에 비해 10대 여성들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양질의 아르바이트가 모여 있는 대학가가 임금 수준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웨딩 및 뷔페는 평균 임금보다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약 3,9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도 평균 시급이 5천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수준, 경제적 수준, 업종별 평균 시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임금형태의 평균 급여액을 보면, 일당제가 38,889원, 주급제가 81,284원, 월급제가 387,448원, 실적제가 8,900원으로 나타났다⁴⁵⁾.

그렇다면 서울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달 기준 총 얼마를 벌고 있을까? 분석 결과, 전체 평균 한달동안 약 33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포에 따라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약 3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24.3%), 10만원 미만(21.5%) 순으로 나타났다.

45) 주급제, 실적제, 기타 급여액 분석결과는 부록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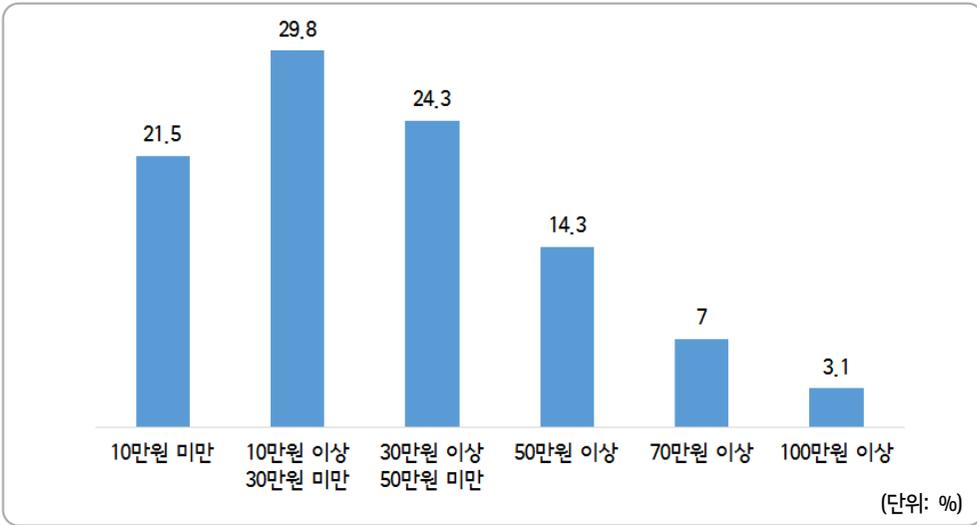


그림 IV-2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한달 평균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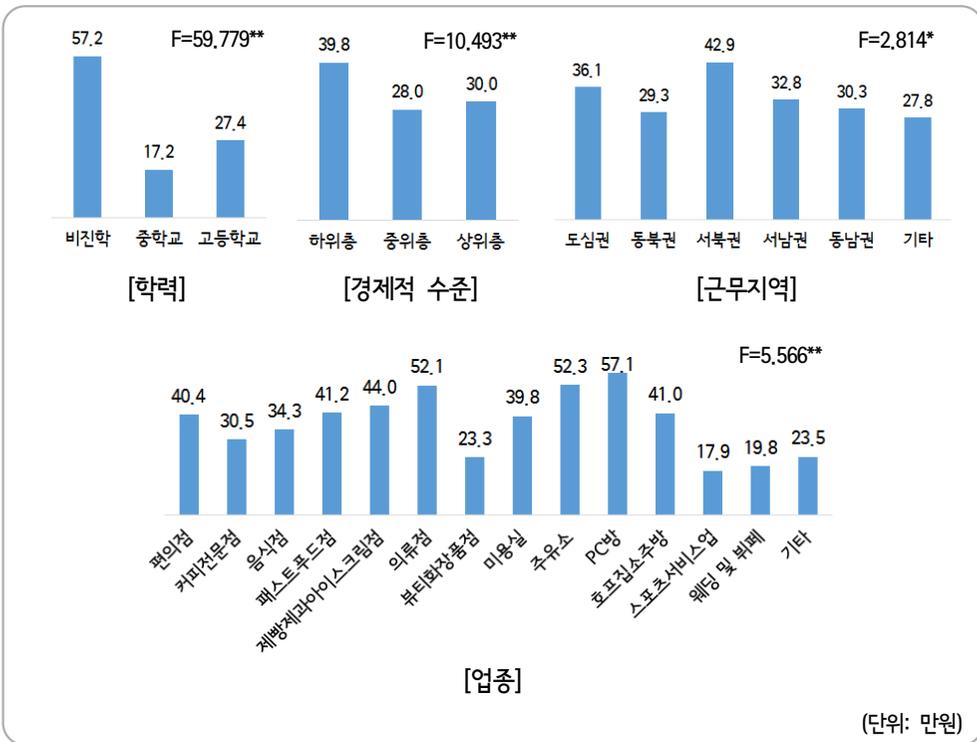


그림 IV-3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한달 평균 소득

한편, 학력에 따라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월 평균 임금이 약 57만 원, 중학생은 약 17만원, 고등학생은 약 27만 원 정도 버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이 타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을 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 가담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근무일수가 사실상 많기 때문에 소득 또한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따라 보았을 때는 하위층이 약 40만 원 정도로 중·상위층이 약 30만 원 정도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월 평균 소득액으로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스포츠·서비스업이 월 17만원, PC방이 월 57만 원 정도로 가장 월 소득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단순 금액 비교로서, 주당 근무시간이 PC방이 주당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근로가 가장 많고, 스포츠·서비스업은 10시간미만 근로가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44.9%로 여전히 낮아

만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사용자는 친권자(부모님)동의서와 나이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며,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 필수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비율은 친권자동의서 52%, 가족관계증명서 31.6%, 근로계약서 44.9%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법적 필수서류를 작성·제출한 비율도 낮지만, 작성하거나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서류가 청소년/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법적 보호장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가령,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는 상대적으로 제출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FGI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사실상 대부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가 많고, 일부 FGI 참여자들은 부모님동의서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역시 본 연구의 FGI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

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조차도 자신의 근무조건을 제대로 숙지하고 해당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 중에서 교부받은 비율도 70%에 불과하다.

【 표 IV-10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제출·작성 여부

(단위: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 교부 비율
학력	학교 밖	22.5	16.2	27.9	77.4
	중학교	30.0	6.7	26.7	75.0
	고등학교	61.9	38.1	50.9	69.5
X ² (df)		60.145(2)**	28.433(2)**	22.724(2)**	.897(2)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48.2	27.3	42.7	62.8
	중위층	54.4	32.7	44.9	74.6
	상위층	55.7	42.6	52.5	75.0
X ² (df)		2.220(2)	5.480(2)	1.829(2)	3.905(2)
업종	편의점	64.8	40.7	38.9	71.4
	커피전문점	79.2	58.3	70.8	94.1
	음식점	50.8	28.8	40.2	67.9
	패스트푸드점	84.3	56.6	90.4	74.7
	제빵제과	78.9	68.4	57.9	63.6
	아이스크림점				
	의류점	0.0	12.5	12.5	0.0
	뷰티화장품점	50.0	50.0	50.0	100.0
	미용실	20.0	0.0	20.0	100.0
	주유소	9.1	18.2	45.5	60.0
	PC방	25.0	0.0	12.5	0.0
	호프집소주방	20.0	0.0	20.0	100.0
	스포츠서비스업	27.7	14.9	23.4	36.4
	웨딩 및 뷔페	43.4	11.3	28.3	60.0
기타	38.3	23.5	34.6	71.4	
X ² (df)		95.445(13)**	80.307(13)**	110.101(13)**	21.910(13)
전체		52.0	31.6	44.9	70.1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학력별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중학생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를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를 모두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으로 살펴보면, 하위층이 3가지 서류 모두 작성·제출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3가지 서류 모두 작성하거나 제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곳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으로 나타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경우 타 업종이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구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도 서술했듯이 해당 서류 작성·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2) 부당노동에 대한 대응 미숙

가. 부당경험 실태: 10명 중 2명은 부당경험을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부당경험 실태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를 계약했던 것 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은 경험,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경험, 초과수당을 못 받은 경험, 조기 퇴근 혹은 강제 업무중단(일명 켜기) 강요 경험, 손실이나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강요 경험, 특정제품 구매 강요 경험, 수습사원 명목의 최저임금 미달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약 20%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도중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빈도 분포 상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로 급여지연이 18.2%, 수습사원 명목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16.5%, 초과수당 미지급이 15.3% 순으로 나타나 주로 급여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습사원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 지급이나 급여지연은 '2013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서의 수치(각각 8.4%, 8.7%)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경우 동일한 아르바이트 직군 내에서도 급여 관련 부당한 경험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IV-11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부당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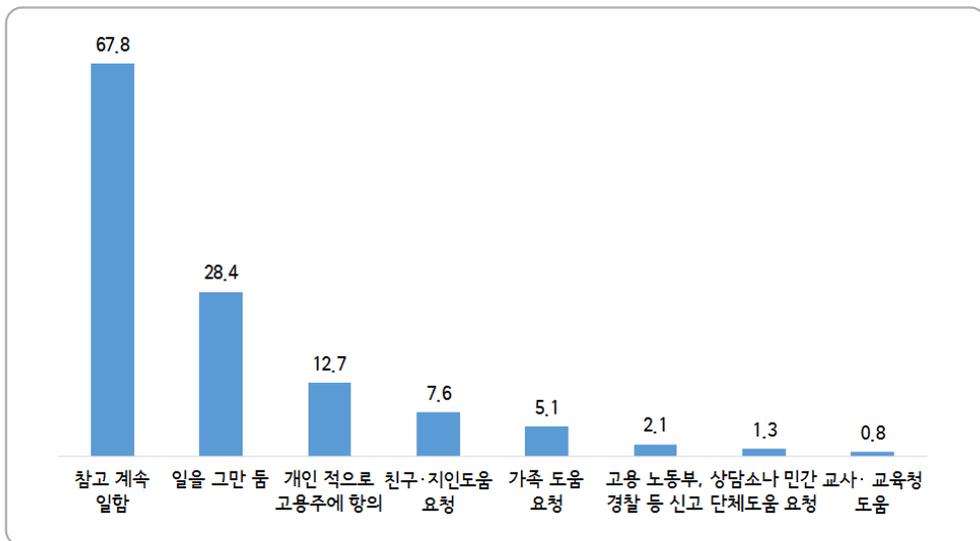
		급여 미달 및 미지급	급여지연	초과수당 미지급	강제조퇴 결근 (찍기)	손실책임	구매강요	수습사원 제도여부
학력	학교 밖	6.3	17.1	29.7	10.8	6.3	1.8	22.5
	중학교	20.0	20.0	6.7	6.7	3.3	6.7	20.0
	고등학교	11.3	18.3	12.0	15.8	8.0	3.5	14.8
X ² (df)		5.080(2)	.155(2)	22.764(2)**	3.258(2)	1.141(2)	1.881(2)	3.996(2)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14.5	24.5	23.6	19.1	9.5	4.5	22.3
	중위층	6.8	12.5	8.0	11.4	6.1	1.9	12.9
	상위층	13.1	19.7	16.4	8.2	4.9	4.9	11.5
X ² (df)		7.893(2)*	11.684(2)*	22.765(2)**	7.828(2)*	2.705(2)	3.174(2)	8.855(2)*
업종	편의점	5.6	27.8	18.5	5.6	24.1	3.7	18.5
	커피전문점	8.3	16.7	8.3	8.3	4.2	0.0	12.5
	음식점	11.4	14.4	16.7	19.7	5.3	3.8	18.2
	패스트푸드점	9.6	16.9	20.5	27.7	7.2	2.4	20.5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21.1	21.1	31.6	15.8	26.3	15.8	31.6
	의류점	12.5	12.5	12.5	0.0	0.0	12.5	12.5
	뷰티화장품점	0.0	16.7	16.7	0.0	0.0	0.0	16.7
	미용실	0.0	0.0	0.0	40.0	0.0	0.0	0.0
	주유소	0.0	0.0	9.1	0.0	0.0	0.0	9.1
	PC방	18.8	43.8	31.3	6.3	0.0	6.3	56.3
	호프집소주방	0.0	0.0	80.0	2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12.8	21.3	6.4	2.1	2.1	2.1	12.8
	웨딩 및 뷔페	18.9	24.5	11.3	11.3	0.0	0.0	5.7
	기타	7.4	13.6	6.2	11.1	8.6	3.7	11.1
X ² (df)		13.144(13)	19.612(13)	36.527(13)**	34.284(13)**	43.702(13)**	15.930(13)	32.290(13)**
전체		10.7	18.2	15.3	14.2	7.4	3.3	16.5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학력에 따라서는 부당경험 여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하위층 청소년들이 중·상위층 청소년보다 부당경험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 따

라서는 초과수당 미지급, 꺾기, 손실책임 부당전가, 수습사원제도에서 경험비율에 차이를 보였는데, 호프집·소주방에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않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80%), 제과제빵아이스크림(31.6%), PC방(31.3%)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꺾기의 경우에는 미용실(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녀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인 패스트푸드점(27.7%)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산과정시 발생한 손실·분실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제빵제과아이스크림(26.3%), 편의점(24.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C방에서는 수습사원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하는 경우가 약 56%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녀들이 초과수당 자체도 모르고 있을뿐더러 휴일·야근근무의 경우 1.5배를 받은 건지, 급여액이 계약한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에서 부당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노동관련 지식 부족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노동인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부당경험 여부를 조사한 FGI 결과에서는 모든 조사 참여자들이 위의 부당경험 항목을 모두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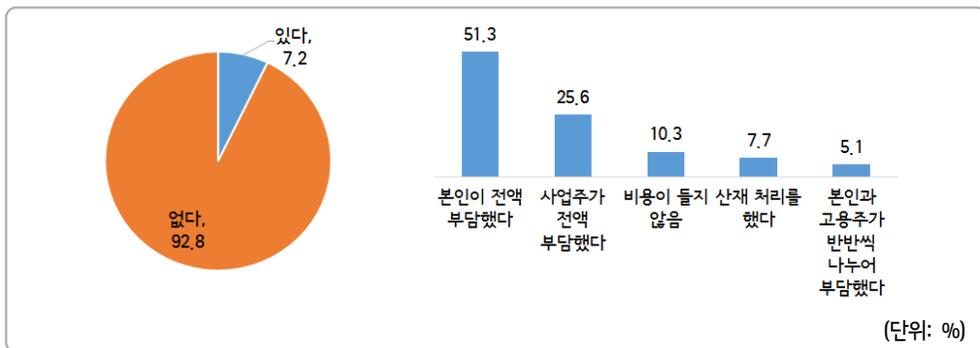


■ 그림 IV-4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녀들의 부당경험에 대한 대응 방식

그렇다면 부당경험을 한 경우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림 IV-4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위 부당경험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부당경험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질문한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일을 그만 두었다(28.4%), 개인적으로 고용주에게 항의했다(12.7%) 순으로 나타났다⁴⁶⁾. 즉,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부당경험에 대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제도적·법적 지원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산재경험: 산재를 당하는 경우 절반 이상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7.2%가 산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⁴⁷⁾. 이는 ‘2013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4.3%)보다 높은 수치로 타 연령대에 비해, 그리고 남성에 비해 십대 여성의 아르바이트에서 산재 발생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IV-5】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산재 경험 및 대처방안

46) 학력별, 가구의 경제수준별, 업종별 세부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부록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47) 산재경험율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에서는 학력, 근무지, 경제적 수준, 업종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본문에선 그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학력, 근무지, 경제적 수준, 업종에 따른 산재 경험율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의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부록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조하라.

산재경험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재 시 치료비 해결 방법을 묻은 결과,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25.6%), 비용이 들지 않음(10.3%)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서울시 청소녀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화상 등을 입어도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녀들의 경우 음식점, 웨딩 및 뷔페 등에서 서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빙 업무를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해당 경험을 산업재해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크고 작게 화상을 입거나 다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주가 알아서 병원비를 개인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소소하게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도중 질병 및 재해 경험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한다면 본 조사의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녀들이 질병 및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폭언·폭행·성희롱 등 피해 실태: 16.9%는 손님으로부터의 폭언을 경험

사업주, 상급관리자나 동료, 손님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청소녀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폭언(16.9%)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상급자나 동료로부터의 폭언(6.1%), 사업주로부터의 폭언(5.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폭언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님이나 사업주로부터 무시하는 언행이나 명령·반말조의 언행은 비밀비재하게 경험하며 심한 경우 욕설을 듣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업종에 따라서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 그 비율이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학교 밖 청소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녀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녀의 29.7%는 손님으로부터의 폭언, 10.8%는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표 IV-12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경험

(단위: %)

		사업주로부터				상급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손님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따돌림	폭행	폭언	성희롱	따돌림	폭행	폭언	성희롱	따돌림	폭행
학력	학교 밖	9.0	4.5	0.9	0.0	10.8	3.6	5.4	0.0	29.7	10.8	0.0	2.7
	중학교	6.7	3.3	0.0	0.0	0.0	0.0	0.0	0.0	0.0	0.0	3.3	0.0
	고등학교	4.8	1.0	0.5	0.3	5.3	1.0	0.5	0.0	14.5	2.8	0.0	0.5
X ² (df)		2.945(2)	6.243(2)*	.429(2)	.354(2)	6.726(2)*	4.503(2)	14.788(2)**	-	20.744(2)**	15.227(2)**	17.032(2)**	4.885(2)
업종	편의점	1.9	0.0	0.0	0.0	1.9	0.0	0.0	0.0	24.1	1.9	0.0	0.0
	커피전문점	8.3	4.2	4.2	0.0	8.3	4.2	4.2	0.0	16.7	4.2	0.0	0.0
	음식점	5.3	0.8	0.8	0.0	3.0	0.8	1.5	0.0	13.6	3.0	0.8	0.8
	패스트푸드점	8.4	0.0	0.0	0.0	14.5	0.0	2.4	0.0	30.1	3.6	0.0	0.0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10.5	5.3	5.3	0.0	15.8	0.0	0.0	0.0	21.1	10.5	0.0	0.0
	의류점	12.5	12.5	0.0	0.0	12.5	0.0	0.0	0.0	12.5	0.0	0.0	0.0
	뷰티화장품점	0.0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주유소	18.2	0.0	0.0	0.0	27.3	27.3	18.2	0.0	36.4	27.3	0.0	0.0
	PC방	6.3	18.8	0.0	0.0	0.0	0.0	0.0	0.0	43.8	18.8	0.0	18.8
	호프집소주방	0.0	0.0	0.0	0.0	0.0	0.0	0.0	0.0	2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2.1	2.1	0.0	0.0	0.0	0.0	0.0	0.0	4.3	4.3	0.0	0.0
	웨딩 및 뷔페	9.4	1.9	0.0	0.0	7.6	1.9	0.0	0.0	9.4	1.9	0.0	0.0
기타	2.5	1.2	0.0	1.2	3.7	2.5	1.2	0.0	8.6	3.7	0.0	1.2	
X ² (df)		12.733(13)	36.468(13)**	15.559(13)	5.727(13)	32.806(13)**	56.456(13)**	26.122(13)*	-	37.253(13)**	27.751(13)**	3.127(13)	58.909(13)**
전체		5.7	1.8	0.6	0.2	6.1	1.5	1.5	0.0	16.9	4.2	0.2	0.9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 주유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폭언 및 성희롱 등의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의 경우, 사업주, 상급관리자나 동료로부터의 폭언(각각 18.2%, 27.3%), 상급자나 동료,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각각 27.3%, 27.3%) 경험이 업종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C방은 고객으로부터 폭언(43.8%)이 가장 심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패스트푸드 점과 편의점의 경우에는 상급자나 동료, 손님으로부터의 폭언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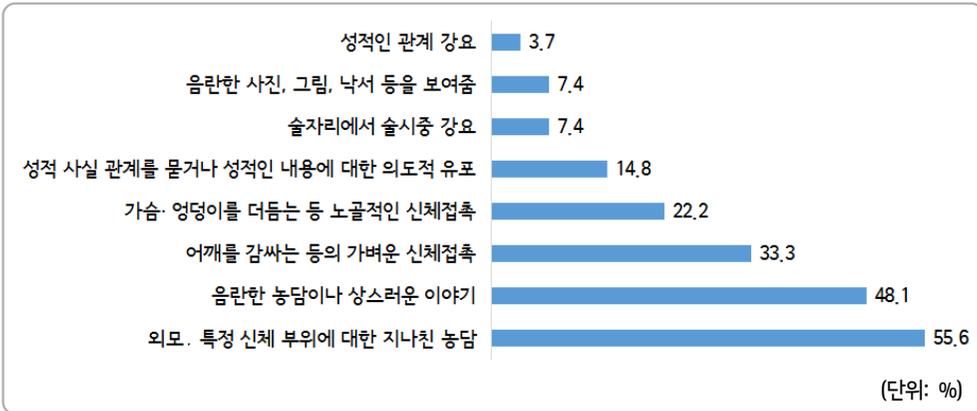
이러한 조사 결과를 '2013년 서울시 실태조사'와 비교를 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그 피해 비율이 다 높게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성희롱 피해 유형과 대응방식

: 언어적 성희롱 피해 비율이 가장 높고, 성관계 강요도 3.7%

앞의 III장의 서울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남성청소년에 비해 여성청소년들의 피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에 초점을 둔 본 조사에서는 성희롱 피해 유형과 그 대응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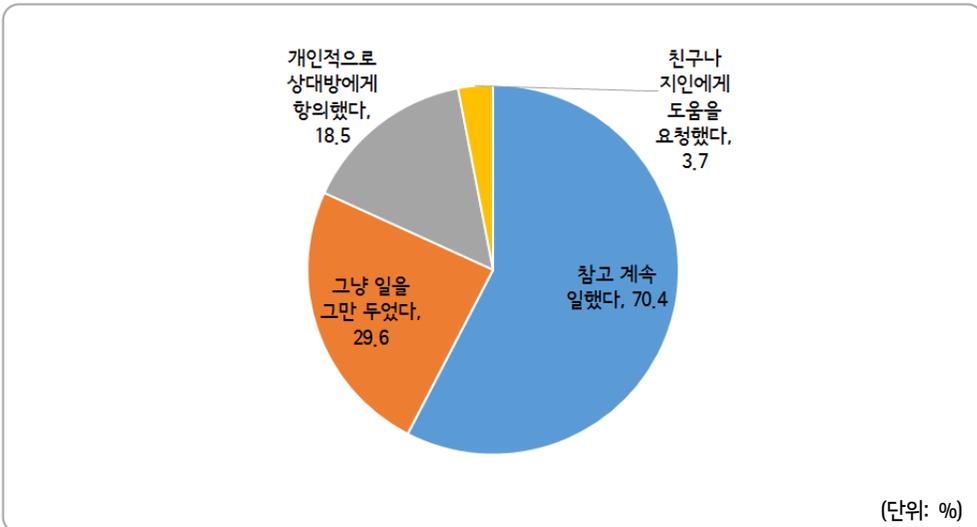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조사 항목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청소년 27명에게 어떤 종류의 성희롱을 당했는지 질문한 결과,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이 55.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48.1%),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2%)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비율은 가장 낮지만 성희롱을 경험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3.7%는 성관계 요구와 같은 가장 악질의 성희롱을 경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 그림 IV-6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성희롱 피해 유형

성희롱 피해 시 대처한 방법으로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일을 그만 두었다(29.6%),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8.5%),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3.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희롱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 그림 IV-7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성희롱을 경험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희롱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절 FGI 조사결과에서 보다 세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3) 감정노동 실태

: 10명 중 7명은 감정노동을 경험하며, 10명 중 4명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중단을 생각한 적도 있어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에 대해 감정노동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한 적은 없다. 그러나 앞의 II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이 이슈화되며 언론을 통해 그 실태가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감정노동을 겪는 직종이 대부분이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이다 보니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비율(73.5%)이 남성(60.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알바몬, 2013년 5월 조사결과)는 것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감정노동이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상황에 감정노동을 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⁴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9%(늘 경험한다 12.5%, 종종 경험한다 27.6%, 어쩌다 한 두 번 경험한다 29.8%)가 감정노동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감정노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조사대상자의 38.8%는 몸이 아닌 감정적으로 힘이 들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8) 직업 특성상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규범 등에 의해 요구되는 얼굴 표정,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앞의 II장 각주 7를 참조하라.

【표 IV-13】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정노동 실태

(단위: %)

		경험한 적 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중단 의향
		늘 경험한다	종종 경험한다	어쩌다 한두 번 경험한다		
학력	학교 밖	83.8	6.3	37.8	39.7	45.0
	중학교	60.0	0.0	13.3	46.7	26.7
	고등학교	66.4	15.0	25.8	25.6	37.8
X ² (df)		34.681(6)**				3.838(2)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80.0	19.1	35.0	25.9	47.3
	중위층	63.1	7.9	22.1	33.1	33.5
	상위층	62.3	8.2	24.6	29.5	31.1
X ² (df)		35.040(6)**				11.315(2)**
업종	편의점	72.2	9.2	31.5	31.5	40.7
	커피전문점	87.5	16.7	33.3	37.5	50.0
	음식점	65.9	8.3	26.5	31.1	35.6
	패스트푸드점	94.0	25.3	37.4	31.3	56.6
	제빵제과	73.7	5.3	52.6	15.8	52.6
	아이스크림점					
	의류점	87.5	0.0	25.0	62.5	37.5
	뷰티화장품점	16.7	16.7	0.0	0.0	16.7
	미용실	40.0	0.0	20.0	20.0	0.0
	주유소	81.8	0.0	45.5	36.3	45.5
	PC방	68.8	0.0	31.3	37.5	56.3
	호프집소주방	100.0	20.0	40.0	40.0	40.0
	스포츠서비스업	51.1	4.3	17.0	29.8	25.5
	웨딩 및 뷔페	79.2	26.4	24.5	28.3	34.0
기타	49.4	9.9	16.0	23.5	28.4	
X ² (df)		104.237(39)**				28.936(13)**
업무	서빙	71.5	15.3	27.7	28.5	37.2
	판매카운터	82.7	16.1	33.9	32.7	47.0
	조리주방보조	84.6	20.5	41.0	23.1	46.2
	단순업무보조	63.4	4.2	29.6	29.6	39.4
	전단지배포	48.0	4.0	13.0	31.0	24.0
	기타	57.1	14.3	17.8	25.0	35.7
X ² (df)		67.076(18)**				16.744(6)*
전체		69.9	12.5	27.6	29.8	38.8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학력에 따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약 85%가 있다고 응답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하위층의 경우가 80% 수준으로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하위층 청소년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호프집·소주방의 경우가 100%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해 가장 감정노동의 강도가 센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패스트푸드점(94%), 커피전문점과 의류점이(87.5%), 주유소(81.8%)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의한 아르바이트 중단 의향에 대해서는 패스트푸드점(56.6%), PC방(56.3%),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52.6%)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은 담당업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분석한 결과, 담당업무에 따라 그 경험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별로 보았을 때 조리주방보조(84.6%)와 판매카운터(82.7%), 서빙(71.5%) 순으로 감정노동이 센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정노동의 요인

(N=211,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무시당할 때	57	27.0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감	39	18.5
매너 없는 손님을 대할 때	26	12.3
손님이 폭언할 때	25	11.8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14	6.6
고용주나 상사에게 혼났을 때	13	6.2
힘들 때	12	5.7
동료와 트러블이 있을 때	11	5.2

주: 1) 이 외 기타 응답으로는 무조건 손님에 맞다고 편을 들 때,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할 때, 고용주나 상사의 차별하는 태도 때문에, 손님에 성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정직원의 부당한 행동 때문에, 성적인 농담을 하는 고용주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자괴감,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친구들에게 들켜 부끄러울 때 등이 나옴.

한편, 감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중단 의향이 있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211명이 주관식 응답을 해주었으며 그 중, 무시당할 때가 27%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감(18.5%), 매너 없는 손님을 대할 때(12.3%), 손님이 폭언할 때(1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손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FGI결과에서도 보듯, 사업주나 상급자, 손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를 시정하고자 말씀드리면 손님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대답을 듣기가 일쑤인데, 감정 컨트롤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감정적 노동은 근무하는데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십대 여성'이어서 힘든 점: 일자리 부족과 (성)폭력·폭언의 위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십대 여성이기에 더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2명 중 1명꼴로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이 하위층일수록 십대 여성이어서 더 힘들다고 느꼈으며, 업종별로는 의류점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편의점(68.5%), 주유소(63.6%),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63.2%) 순으로 십대 여성으로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에 따라서는 판매·카운터(60.1%), 조리·주방보조(56.4%), 서빙(54.0%)에서 십대 여성으로서 힘들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십대 여성으로서 힘들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FGI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 청소년의 경우 나이 때문에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의 폭이 좁아지며 청소년/년 가능 일자리 중에서도 남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십대 여성'이라는 이중 경계에 놓인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일자리 부족 외에 (성)폭력, 폭언을 당할 위험이 높다(39.9%), 남성에 비해 감정 노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34.3%), 남성에 비해 외모, 복장 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33.6%) 등도 높게 나타났다. 힘든 요인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종의 특성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웨딩

및 뷔페는 ‘남성에 비해 외모, 복장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류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아이스크림점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성)폭력·폭언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IV-15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십대여성으로서 힘든 점

(단위: %)

		십대 여성 이어서 힘들다	십대여성이어서 힘든 요인 ¹⁾									
			일자리 부족	(성) 폭력, 폭언 위험	감정 노동	외모, 복장 관리 등	부정적 시선	낮은 임금	성 차별적 언행	사업주 부당 행위	소비·퇴폐적 문화 노출	체력
학력	학교 밖	74.8	67.5	41.0	27.7	15.7	25.3	28.9	16.9	6.0	12.0	0.0
	중학교	40.0	66.7	33.3	33.3	41.7	41.7	8.3	8.3	0.0	25.0	0.0
	고등학교	43.6	51.1	39.7	36.8	41.4	23.6	11.5	13.2	13.8	8.0	5.7
X ² (df)		34.964(2)**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60.5	62.4	42.1	36.1	33.8	16.5	17.3	15.8	10.5	7.5	3.8
	중위층	44.9	52.5	37.3	33.1	31.4	29.7	14.4	12.7	8.5	10.2	4.2
	상위층	32.8	50.0	40.0	30.0	45.0	50.0	25.0	10.0	25.0	25.0	0.0
X ² (df)		19.612(2)**										
업종	편의점	68.5	64.9	43.2	32.4	16.2	13.5	13.5	8.1	10.8	16.2	0.0
	커피전문점	45.8	36.4	54.5	54.5	63.6	54.5	27.3	36.4	27.3	9.1	0.0
	음식점	47.0	58.1	25.8	37.1	22.6	32.3	17.7	22.6	12.9	6.5	3.2
	패스트푸드점	59.0	55.1	55.1	32.7	44.9	16.3	24.5	18.4	12.2	8.2	4.1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63.2	50.0	58.3	41.7	33.3	16.7	25.0	0.0	8.3	16.7	0.0
	의류점	75.0	66.7	66.7	16.7	33.3	33.3	16.7	0.0	0.0	33.3	16.7
	뷰티화장품점	16.7	100.0	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미용실	40.0	100.0	0.0	0.0	50.0	50.0	0.0	0.0	50.0	0.0	0.0
	주유소	63.6	42.9	42.9	28.6	42.9	28.6	42.9	28.6	14.3	0.0	0.0
	PC방	62.5	70.0	70.0	30.0	10.0	20.0	10.0	10.0	0.0	10.0	0.0
	호프집소주방	40.0	50.0	50.0	0.0	50.0	50.0	0.0	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36.2	52.9	23.5	29.4	17.6	52.9	11.8	5.9	5.9	5.9	5.9
	웨딩 및 뷔페	58.5	54.8	25.8	29.0	54.8	12.9	9.7	6.5	3.2	9.7	9.7
	기타	29.6	58.3	37.5	41.7	37.5	16.7	4.2	8.3	12.5	8.3	4.2
X ² (df)		37.532(13)**										

	십대 여성 이어서 힘들다	십대여성이어서 힘든 요인 ¹⁾										
		일자리 부족	(성) 폭력, 폭언 위험	감정 노동	외모, 복장 관리 등	부정적 시선	낮은 임금	성 차별적 언행	사업주 부당 행위	소비·퇴폐적 문화 노출	체력	
업무	서빙	54.0	60.8	31.1	36.5	31.1	18.9	17.6	16.2	8.1	5.4	4.1
	판매카운터	60.1	55.4	51.5	29.7	30.7	20.8	18.8	12.9	7.9	12.9	2.0
	조리주방보조	56.4	50.0	45.5	40.9	40.9	27.3	31.8	18.2	13.6	13.6	4.5
	단순업무보조	49.3	60.0	45.7	34.3	34.3	25.7	8.6	20.0	22.9	11.4	2.9
	전단지배포	29.0	55.2	17.2	34.5	37.9	51.7	6.9	3.4	6.9	6.9	6.9
	기타	32.1	55.6	22.2	44.4	44.4	11.1	11.1	11.1	11.1	0.0	11.1
X ² (df)		30.624(6)**										
전체		49.8	57.2	39.9	34.3	33.6	24.7	16.6	14.0	10.7	10.0	3.7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2)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1) 아르바이트 지속·중단 의향과 이유

: 10명 중 8명은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겠다고 응답

아르바이트를 앞으로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82.9%가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84.7%)이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생(82.5%), 그리고 중학생이 가장 낮은 80%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층(90.2%)과 하위층(88.2%)에 속한 청소년들이 중위층 청소년들(76.8%)보다 아르바이트 지속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FGI 조사 결과와 연동하여 보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용돈, 생계 등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 계발이나 사회경험 등의 경제적 이유가 아닌 오히려 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의향이 중위층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로 경험했던 분야의 직업을 가질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력,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그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용실(80%), 뷰티화장품점(66.7%), 커피전문점(57.9%),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53.3%)에서는 구직 의향이 있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나 업종과 비교하여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술 습득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업종에서 나중에 직업으로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표 IV-16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지속 의향 및 해당분야 구직 의향 (단위: %)

		지속 의향	해당분야 구직 의향
학력	학교 밖	84.7	39.4
	중학교	80.0	29.2
	고등학교	82.5	37.7
	X ² (df)	.474(2)	.853(2)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88.2	41.8
	중위층	76.8	34.2
	상위층	90.2	38.2
	X ² (df)	13.492(2)**	2.426(2)
업종	편의점	75.9	41.5
	커피전문점	79.2	57.9
	음식점	84.8	42.0
	패스트푸드점	83.1	30.4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78.9	53.3
	의류점	75.0	33.3
	뷰티화장품점	100.0	66.7
	미용실	100.0	80.0
	주유소	81.8	0.0
	PC방	75.0	41.7
	호프집소주방	60.0	33.3
	스포츠서비스업	80.9	15.8
	웨딩 및 뷔페	84.9	40.0
	기타	87.7	38.0
	X ² (df)	9.422(13)	26.880(13)*
전체	82.9	37.9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위와는 반대로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대해서는 중단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시간 부족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건강상의 문제 및 육체적 피로(11.8%), 부진한 학교 성적(9.7%), 장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중단 요인

(단위: %)

		시간 부족	건강상 문제, 육체적 피로	부진한 학교 성적	장래 경력에 도움 되지 않음	고용 주의 부당 대우	주변의 반대	동료 들과 맞지 않음	기타
학력	학교 밖	29.4	11.8	0.0	23.5	17.6	11.8	5.9	0.0
	중학교	66.7	0.0	0.0	0.0	0.0	16.7	0.0	16.7
	고등학교	57.1	12.9	12.9	4.3	2.9	2.9	1.4	5.7
X ² (df)		26.376(14)*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34.6	15.4	3.8	15.4	15.4	3.8	3.8	7.7
	중위층	63.9	9.8	11.5	3.3	1.6	4.9	1.6	3.3
	상위층	16.7	16.7	16.7	16.7	0.0	16.7	0.0	16.7
X ² (df)		21.879(14)							
업종	편의점	53.8	30.8	0.0	15.4	0.0	0.0	0.0	0.0
	커피전문점	40.0	0.0	0.0	0.0	40.0	20.0	0.0	0.0
	음식점	55.0	5.0	20.0	5.0	0.0	5.0	5.0	5.0
	패스트푸드점	42.9	0.0	21.4	21.4	0.0	0.0	0.0	14.3
	제빵제과	0.0	25.0	25.0	0.0	0.0	25.0	0.0	25.0
	아이스크림점	0.0	25.0	25.0	0.0	0.0	25.0	0.0	25.0
	의류점	50.0	0.0	0.0	0.0	0.0	50.0	0.0	0.0
	뷰티화장품점	0.0	0.0	0.0	0.0	0.0	0.0	0.0	0.0
	미용실	0.0	0.0	0.0	0.0	0.0	0.0	0.0	0.0
	주유소	0.0	0.0	0.0	0.0	50.0	50.0	0.0	0.0
	PC방	75.0	0.0	0.0	0.0	0.0	0.0	25.0	0.0
	호프집소주방	50.0	5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77.8	0.0	11.1	11.1	0.0	0.0	0.0	0.0
	웨딩 및 뷔페	37.5	37.5	0.0	0.0	12.5	0.0	0.0	12.5
	기타	80.0	10.0	0.0	0.0	10.0	0.0	0.0	0.0
X ² (df)		107.190(17)*							
전체		52.7	11.8	9.7	7.5	5.4	5.4	2.2	5.4

주: 1) *은 p<.05를 의미함.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중단의 이유가 장래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고용주의 부당대우, 동료들과 맞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나타나 진학청소년들에 비해 근무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문제보다는 근무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을 고려하지 않는 타 집단에 비해 성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하위층이 시간 부족의 응답을 가장 높게 반응한 반면에 상위층은 이와 더불어 건강문제, 학교성적, 장래 경력, 주변의 반대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업종에 따라 보면, 대체로 시간부족의 이유를 꼽고 있지만 호프집·소주방의 경우 건강문제 및 육체적 피로(50%), 주유소의 경우 고용주의 부당대우(50%), 의류점과 주유소에서 주변의 반대(50%)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피전문점, 주유소, 웨딩 및 뷔페에서는 고용주의 부당대우를 중단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각각 40.0%, 50.0%, 12.5%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당 대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 아르바이트의 영향력

：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가 전반적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7.3%로 그렇지 않다(8.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후, 10명 중 4명 정도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17.8%)는 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과 노동의 가치 인지에 대해서는 약 10명 중 8명이 돈과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그렇지 않다(1.8%)고 응답한 학생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고취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가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3.5%)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를 기준으

로 점수로 환산 시에도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돈과 노동의 가치 인지와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4.13점으로 청소년들에게 돈과 노동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 표 IV-18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5점 평균
긍정적 영향	8.8	43.9	47.3	3.42
진로 및 취업 관심 고취	17.8	41.4	40.8	3.28
돈과 노동의 가치 인지	1.8	19.3	78.9	4.13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 고취	3.5	27.2	69.3	4.13

3)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방안 욕구

(1) 현 정책에 대한 인지도 30% 수준에 그쳐

현재 정부 및 서울시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9가지 정책 중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은 ‘노동인권침해 사례 신고’ 48.3%를 제외하면 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조차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9) 5점 척도별 분포도와 학력별, 경제적 수준별, 업종별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뒤의 부록 <표 11>-<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IV-19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경험 여부

(단위: %)

		노동인권 침해 사례신고		현장 관리·감독 강화		홍보물·매뉴얼 보급		캠페인		권리장전 선언		알바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		무료 건강검진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학력	학교 밖	21.6	0.0	5.4	0.9	12.6	1.8	9.0	1.8	9.0	0.9	9.9	0.9	7.2	0.9	9.9	1.8	11.7	2.7
	중학교	56.7	6.7	33.3	10.0	33.3	10.0	36.7	3.3	33.3	0.0	40.0	3.3	20.0	3.3	40.0	3.3	33.3	0.0
	고등학교	55.6	1.3	36.3	3.0	45.1	4.5	40.1	2.5	38.1	2.5	36.6	3.8	25.6	3.0	39.6	8.5	40.1	6.5
	일반고	55.1	1.1	34.7	2.3	43.4	4.5	40.8	1.9	39.2	2.6	37.0	3.8	24.9	1.5	39.6	8.7	39.6	4.5
	특목고	52.9	0.0	35.3	0.0	58.8	11.8	52.9	11.8	52.9	5.9	52.9	5.9	35.3	0.0	64.7	17.6	58.8	5.9
	특성화고	56.1	1.9	39.3	5.6	44.9	3.7	35.5	2.8	32.7	1.9	32.7	3.7	23.4	5.6	34.6	7.5	38.3	11.2
	자율고	70.0	0.0	50.0	0.0	70.0	0.0	50.0	0.0	40.0	0.0	40.0	0.0	50.0	20.0	50.0	0.0	40.0	10.0
X ² (df)		49.460(10)**		50.928(10)**		50.174(10)**		48.015(10)**		38.939(10)**		33.530(10)**		38.530(10)**		45.477(10)**		44.910(1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36.4	1.4	20.9	2.3	31.2	2.7	25.0	1.8	21.8	0.9	20.5	0.9	16.8	1.8	21.4	5.5	23.6	5.5
	중위층	55.1	0.8	34.6	3.8	39.7	4.6	39.2	1.9	36.1	1.9	37.6	3.8	24.7	2.7	39.5	6.1	38.8	4.6
	상위층	62.3	3.3	39.3	1.6	44.4	8.2	39.3	6.6	47.5	6.6	41.0	8.2	24.6	4.9	50.8	14.8	49.2	8.2
X ² (df)		24.857(4)**		15.261(4)**		19.901(4)**		16.677(4)**		23.886(4)**		24.316(4)**		6.001(4)		31.648(4)**		22.416(4)**	



		노동인권 침해 사례신고		현장 관리·감독 강화		홍보물·매뉴얼 보급		캠페인		권리장전 선언		알바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		무료 건강검진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인지	경험	
업종	편의점	46.3	1.9	37.0	3.7	29.6	0.0	29.6	0.0	35.2	0.0	31.5	0.0	24.1	1.9	31.5	5.6	29.6	1.9	
	커피전문점	54.2	4.2	41.7	8.3	50.0	16.7	45.8	8.3	37.5	4.2	33.3	4.2	29.2	8.3	41.7	8.3	50.0	4.2	
	음식점	43.2	0.8	26.5	0.8	34.8	4.5	31.8	2.3	28.8	3.0	27.3	3.0	20.5	2.3	33.3	7.6	29.5	3.8	
	패스트푸드점	49.4	1.2	28.9	7.2	39.8	2.4	30.1	6.0	31.3	2.4	30.1	2.4	20.5	3.6	30.1	3.6	33.7	13.3	
	제빵제과	63.2	0.0	52.6	10.5	36.8	10.5	36.8	0.0	42.1	5.3	42.1	10.5	36.8	10.5	42.1	5.3	36.8	10.5	
	아이스크림점																			
	의류점	25.0	0.0	0.0	0.0	50.0	12.5	50.0	12.5	25.0	0.0	25.0	0.0	37.5	0.0	37.5	12.5	37.5	0.0	
	뷰티화장품점	33.3	0.0	16.7	0.0	16.7	0.0	33.3	0.0	33.3	0.0	33.3	0.0	16.7	0.0	50.0	16.7	50.0	16.7	
	미용실	80.0	0.0	60.0	20.0	80.0	20.0	40.0	0.0	20.0	0.0	40.0	0.0	60.0	20.0	40.0	20.0	40.0	20.0	
	주유소	27.3	0.0	0.0	0.0	27.3	0.0	0.0	0.0	0.0	0.0	0.0	0.0	9.1	0.0	27.3	0.0	18.2	0.0	
	PC방	25.0	0.0	6.3	0.0	0.0	0.0	18.8	0.0	0.0	0.0	6.3	0.0	6.3	0.0	0.0	0.0	0.0	0.0	
	호프집소주방	20.0	0.0	40.0	0.0	20.0	0.0	20.0	0.0	20.0	0.0	20.0	0.0	20.0	0.0	20.0	0.0	40.0	0.0	
	스포츠서비스업	57.4	0.0	29.8	0.0	46.8	2.1	36.2	0.0	42.6	2.1	34.0	0.0	25.5	0.0	31.9	0.0	36.2	4.3	
	웨딩 및 뷔페	47.2	0.0	20.8	0.0	35.8	1.9	37.7	1.9	28.3	1.9	34.0	5.7	11.3	0.0	28.3	5.7	34.0	1.9	
기타	58.0	3.7	37.0	2.5	44.4	6.2	39.5	1.2	38.3	1.2	40.7	6.2	22.2	2.5	44.4	14.8	43.2	4.9		
X ² (df)		26.671(26)		46.107(26)**		41.050(26)*		29.110(26)		24.587(26)		25.954(26)		29.900(26)		29.597(26)		39.146(26)*		
전체		48.3	1.3	29.6	2.9	37.5	4.2	33.5	2.4	31.6	2.0	31.1	3.1	21.5	2.6	33.5	6.8	33.8	5.3	

주: 1) *은 p<.05, **은 p<.01을 의미함.

9가지 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 및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로 안심알바신고센터, 알바신고콜센터, 모바일신고센터, 알바온라인민원상담실,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안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리수첩과 표준근로계약서 등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홍보물, 매뉴얼 보급 정책을 안다는 응답이 37.5%, 사업주를 비롯한 청소년, 교사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3.8%, 청소년 권익 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가 각각 3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인지도가 낮았던 정책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아르바이트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으로 21.5%만이 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모니터링)의 일환의 청소년 근로조건지킴이와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29.6%만이 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와 더불어 경험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경험한 정책인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도 조사대상의 6.8%가 이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 홍보물 및 매뉴얼(노동권리수첩, 표준근로계약서 등) 보급이 4.2%가 경험해봤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장 경험율이 낮은 정책으로는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1.3%)인데, 이는 FGI에서 확인했듯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될뿐더러 조치를 취한 후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인지율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경험율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정책의 인지율과 경험율에서 학력별로,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아르바이트에 노출되어 있는⁵⁰⁾ 학교 밖 청소년들과 주관적 경제 수준이 하위층인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위층은 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정책의 인지도와 경험율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만으

50) 앞의 <표 IV-19>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하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인지와 경험율이 낮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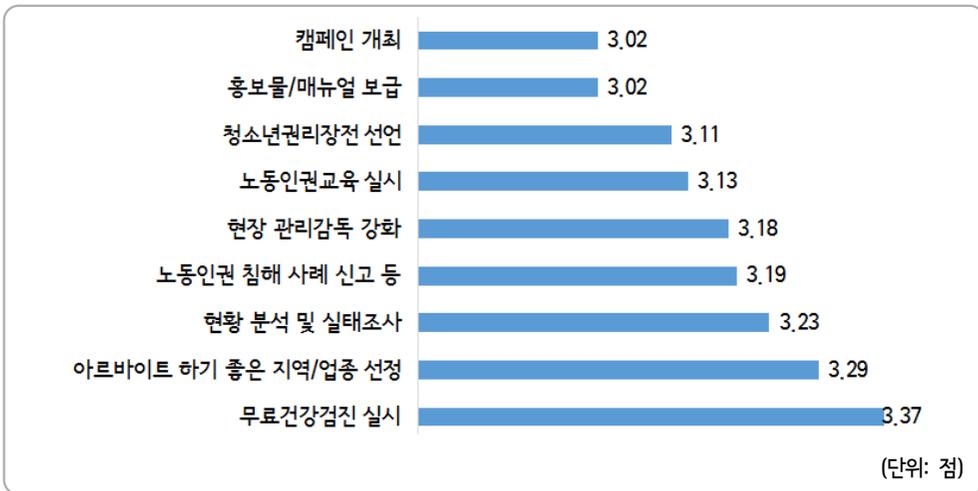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본 연구의 FGI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거의 모든 조사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 및 기본적인 노동인권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극소수의 FGI 참여자들은 모두 청소년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사회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관련 지식을 터득하게 된 것으로 현 구조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노력하기 전에는 정부 정책이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것 못지않게 실시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현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

: ‘무료건강검진 실시’와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을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

현재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5점 환산 평균으로 나타낸 결과, ‘무료건강검진 실시’가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3.29점), ‘아르바이트 분석 및 실태조사’(3.23점),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 등’(3.19점)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건강검진은 앞의 인지도 분석 결과에서 10명 중 약 7명의 학생은 위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정책에 속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은 타 정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해당 정책이 서울시에서 2013년 12월부터 실시, 정책이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이나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 등의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해볼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홍보물 및 매뉴얼 보급’(3.02점), ‘캠페인 개최’(3.02점) 등은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낮은 정책으로 나타나, 법적인 강제성 없이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책이나 주변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력, 경제적 수준, 업종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⁵¹⁾.



■ 그림 IV-8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현 정책에 대한 효과 인식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을 가장 원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16.7%), '정부가 직접 아르바이트 정보제공과 알선'(10.7%), '안심 알바 모니터링단 운영'(6.3%)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은 설문지의 주관식 조사 항목⁵²⁾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3명이나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정책이

51) 학력, 경제적 수준, 업종 등에 따른 각 정책별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는 부록 <표 15> ~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필요하다고 기입하였다.

이는 앞서 ‘십대 여성’ 으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십대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보다도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십대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연구의 FGI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52) 설문지에 객관식으로 제시된 정책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주관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뒷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 표 IV-20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단위: %)

1순위		일자리 제공	부당 고용주 처벌	정보 제공 알선	안심 알바 모니터 링단	실태 조사	근로 환경 개선 캠페인	인식 개선 캠페인	노동 인권 교육	진로 연계 강화	상담· 신고 센터	놀이 문화 공간	기타	$\chi^2(df)$
학력	학교 밖	38.7	10.8	21.6	2.7	2.7	5.4	4.5	1.8	7.2	2.7	1.8	0.0	39.898(22)*
	중학교	46.7	20.0	10.0	10.0	3.3	3.3	3.3	0.0	0.0	3.3	0.0	0.0	
	고등학교	46.9	18.0	7.5	7.0	4.5	3.8	3.3	3.0	1.5	2.0	2.3	0.3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47.3	15.0	11.8	4.1	4.1	3.2	3.6	0.9	4.5	1.8	3.6	0.0	37.450(22)*
	중위층	41.4	17.5	10.6	8.4	4.2	4.2	3.4	4.9	1.5	2.7	1.1	0.0	
	상위층	52.5	19.7	6.6	4.9	3.3	6.6	3.3	0.0	0.0	1.6	0.0	1.6	
업종 ¹⁾	편의점	44.4	0.0	11.1	3.7	3.7	13.0	11.1	3.7	5.6	1.9	1.9	0.0	176.897(143)*
	커피전문점	16.7	20.8	16.7	8.3	4.2	12.5	0.0	8.3	0.0	4.2	8.3	0.0	
	음식점	47.0	15.2	9.8	8.3	0.0	3.0	5.3	3.0	2.3	3.8	2.3	0.0	
	패스트푸드점	43.4	19.3	9.6	4.8	4.8	4.8	1.2	2.4	6.0	2.4	1.2	0.0	
	제빵제과	10.5	10.5	31.6	10.5	21.1	0.0	0.0	5.3	5.3	5.3	0.0	0.0	
	아이스크림점	10.5	10.5	31.6	10.5	21.1	0.0	0.0	5.3	5.3	5.3	0.0	0.0	
	스포츠서비스업	55.3	17.0	6.4	2.1	4.3	4.3	4.3	2.1	0.0	0.0	4.3	0.0	
웨딩 및 뷔페	50.9	18.9	7.5	3.8	9.4	3.8	1.9	0.0	1.9	1.9	0.0	0.0		
전체	45.0	16.7	10.7	6.3	4.0	4.0	4.0	3.5	2.8	2.6	2.2	2.0	0.2	

주: 1) 본 표에서는 청소년들의 주로 종사하는 상위 7개 업종만 제시하였음. 그 외 업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뒤의 부록 <표 19>, <표 20>에 제시되어 있음.

2) *는 p<0.05, **은 p<0.01을 의미함.



FGI 결과, 청소년들은 주로 아르바이트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청소년 가능 아르바이트만 분류하여 찾아도 실상 전화나 면접을 해보면 여성이어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청소년/년들이 선호하지 않은 일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이 든 배달, 택배업무,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부분인데, 십대 중에서도 육체적 힘이 좋은 남성 청소년을 선호하는 업체/고용주들이 많아 청소년들이 구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각자 희망하는 정책들을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한 결과, 위에 언급된 정책이 잘 시행되기 바란다는 응답(33명), 시급 및 임금 인상(22명), 남녀차별 근절(4명), 신고시 익명 보장, 신고절차의 간소화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4명)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거주 청소년 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의 주요한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대략적인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주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서울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소년들은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카운터와 서빙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평균 시급은 5,126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5,210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절반 이상(53.7%)이 4인 이하의 근로기준법 예외 사업장이며, 이를 반영하듯 근로계약서 서면체결은 44.9%에 불과하였고, 약 20%의 청소년들은 초과수당 미지급, 강제조퇴 또는 업무중단, 임금체불 등의 부당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80%는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으며, 아르바이트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의 II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국내에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많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진로성숙도, 대인관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전반적으로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 및 취업 관심 고취, 돈과 노동의 가치 인식,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도 증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하도록 하는 것 보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일 경험이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정책·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 정책에 대해 알리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무료건강검진’이나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업종 조성’ 정책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하였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실태 외에 남성 청소년과 다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또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십대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10.8%는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을, 의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12.5%는 사업주로부터의 성희롱을, 주유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27.3%는 상급관리자나 동료,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성희롱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약 70%는 감정노동을 경험하며, 40%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생각을 했을 정도

로 그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청소녀들이 십대 여성으로서의 힘든 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드러났는데, 십대 여성을 위한 일자리 부족과 (성)폭력·폭언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그 외에도 감정노동, 외모 및 복장에 대한 관리 규제가 남성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것도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보다 FGI 조사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그 실태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녀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는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그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V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둘째, 성별차이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녀들 간 아르바이트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진학여부 및 연령(중학생 연령과 고등학생 연령),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근속기간, 근로일수 및 시간, 업종 및 업무의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 경제적 수준, 업종에 따라 법·제도 준수 및 위반 실태, 부당노동 실태, 현 정책에 대한 인지 및 경험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가령 학교 밖 청소녀들의 경우 주로 음식점(31.6%)과 편의점(14.4%)에서 일을 하며, 70% 정도가 판매·카운터와 서빙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⁵³⁾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근속기간과 근로일수 및 시간이 길고, 최저임금 미만 비율, 초과수당 미지급율 등 부당노동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 정책에 대한 인지 및 경험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청소녀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청소녀는 기타⁵⁴⁾ (26.2%)와 음식점(23.0%)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녀들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며, 부당노동 피해 경험율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 정책에

53) 중학생은 스포츠·서비스업(33.4%)과 기타(26.7)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으며, 담당업무도 전단지 배포(70.0%)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음식점(22.8%)과 패스트푸드점(16.5%)에서 일하며, 판매·카운터, 서빙, 전단지배포, 단순업무보조 등 학교 밖 청소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무 분포를 보이고 있다.

54) 학원, 콜센터, 방청객, 서점, 과외, 전단지, 택배회사, 휴대폰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 인지도와 경험율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청소녀들이 상위층인 청소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해 청소녀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녀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을 구상할 때에도 하나의 프레임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그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다음 절에서는 FGI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V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FGI 조사결과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2절 서울시 청소년의 노동 경험과 그 맥락

1. FGI 개요

1) 조사목적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면 FGI를 통해서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노동 맥락과 경험, 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계급 등의 영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동기가 무엇이며,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일경험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청소년들에게 묻고 정리하였다. 또한 부당노동 경험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십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등이 노동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FGI 질문은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거주지, 가족형태, 학교생활 등), 아르바이트 경험(경력, 동기, 구직경로, 번 돈의 사용처 등),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십대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의 의미,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해석, 정책욕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FGI 진행 과정

위의 FGI 목적에 따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그 경험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⁵⁵⁾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과정은 ‘세평적 사례선택’과 ‘눈덩이표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평적 사례선택’은 특정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추천과 소개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노동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55) 질적연구는 특정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설명, 해석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대표성 보다는 정보가 풍부한, 산출되는 이론과 연관이 깊은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신경림 외, 2004: 1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십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가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력이 2년 이상이 된 청소년 2명을 소개받아 첫 번째 FGI를 진행하였다. 이후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한 주변 동료들을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해 연구참여자를 확보해나갔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유형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웨딩 및 뷔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청소년 15명과 십대 때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이십대 여성 3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2~4명씩 묶어서 총 6회의 FGI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FGI 진행 과정은 아래의 <표 IV- >에 정리하였다. FGI는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FGI 1회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FGI는 반개방형으로, 연구자가 준비한 기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FGI 내용은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파일은 분석을 위하여 녹취되었다.

■ 표 IV-21 ■ FGI 진행 개요

구분	연구참여자(가명)	일 자	장 소	소요시간
1	미혜, 유미	2014년 8월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2	수미, 해수, 민경, 유리	2014년 8월 14일	상동	2시간 30분
3	은지, 나미, 영수, 정림	2014년 8월 25일	상동	2시간
4	수현, 주희, 은미, 지영	2014년 8월 26일	상동	2시간
5	희진	2014년 9월 16일	상동	2시간
6	나영, 경미, 승희	2014년 10월 15일	상동	2시간 30분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FGI 에는 십대 청소년 15명과 고등학교 시기 장기간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십대 여성 3명이 참여하였다. 이중 5명은

학교밖 청소년들이며, 그 외에도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로 다양한 학교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최소 1년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이며, 아르바이트 시작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다. 주로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호텔 연회장 등에서 서빙 및 판매·카운터 업무를 담당해온 경험이 있으며, 그 외에도 콜센터, 전단지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력을 갖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관련 대략적인 특징은 아래의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이름 (가명)	나이 (만)	학교 유형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만 연령)	아르바이트 업종
1	미혜	18	학교 밖	16	콜센터(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고객센터), 대기업체열식당
2	유미	17	일반고	16	편의점, 카페, 호텔(서빙)
3	수미	18	학교 밖	15	식당(서빙), 전자담배(판매), 장애아동베이비시터
4	해수	17	일반고	16	식당(서빙)
5	민경	17	일반고	15	식당(서빙), 식당2(서빙), 대학로티켓팅, 패스트푸드점
6	유리	17	학교 밖	15	전단지, 대학로티켓팅, 식당(서빙), 패스트푸드점2점포, 백화점푸드코트, 식당2, 호텔(서빙), 식당3(서빙)
7	은지	17	일반고	16	주차장(소평물)
8	나미	17	학교 밖	15	식당1(서빙), 식당2, 카페, 식당3
9	영수	17	일반고	15	롯데리아2점포, 호텔(서빙), 식당(서빙)
10	정림	17	일반고	16	호텔(서빙), 편의점, 피팅모델
11	수현	17	특성화고	16	패스트푸드점
12	주희	17	특성화고	16	호텔(서빙)
13	은미	18	학교 밖	17	카페, 아이스크림집
14	지영	18	일반고	16	식당(서빙), 호텔(서빙)
15	희진	17	일반고	15	전단지, 호텔(웨딩, 서빙, 주방)
16	나영	20	대학재학	17	옷공장(다림질), 편의점
17	경미	20	대학재학	18	편의점, 식당(서빙)
18	승희	20	대학재학	18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콜센터, 대형마트음료관측행사, 카페, 식당(서빙)

연구자가 파악한 연구 참여자들의 아르바이트 동기 및 그 동안 해 왔던 아르바이트 업종 등 노동 경험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 미혜(1996년생, 만18세)

미혜는 고1때 학내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겨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오면서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였다. 지금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잘 해결되어 집 보증금은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월세랑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생활하고 있었다. 프렌차이즈 음식점, 인바운드 콜센터, 아웃바운드 콜센터 등 2년 동안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신의 일 경험을 배우기 쉬운 일, 하찮게 생각되는 일,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는 일을 해왔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23살(92년생)로 속여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곳 중 근무조건이 가장 좋아 10개월 째 근무 중이다.

□ 유미(1996년생, 만18세)

가정형편(아버지 무직)이 어려워 고1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하여 10개월 정도 일하고, 카페에서 반년 일했으며 현재는 호텔 서빙을 하고 있다. 일반계고를 다니고 있어서 주로 주말에 일을 하며, 주중에도 연락이 오면 저녁시간을 활용해 일을 하고, 방학 중에는 주중 포함 일주일에 3~4일 정도 일을 하고 있다. 대략 한달에 30~35만원을 벌며, 학원비로 쓰고 남은 돈은 여가비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내성적이었던 본인의 성격이 활발해지고 사회성도 좋아졌다고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수미(1996년생, 만18세)

초등학교때부터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으로 시간이 자유로워 중3때부터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 밥집에서 서빙알바를 약 1년, 전자담배 판매를 약 5개월, 장애아동 배

이비시터를 약 10개월 정도 일해왔다. 최근에 경험한 베이비시터는 주 3일 정도 일하며 주당 근무일수에 따라 책정한 월급형태로 약 한달에 20만원 정도 받았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순수한 업무 이외에 여자로서 매출에 이익이 될 만한 뭔가를 요구받는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하였으며,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중단이유는 모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아서였다.

□ 해수(1997년생, 만17세)

용돈이 부족한 것보다 대학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 준비차원에서 시작하였으며, 필요시에만 식당과 호텔서빙을 한 달에 3번 정도 나가서 일하고 약 15만원 정도 벌었다. 처음에는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차별 때문에 화가 나고,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앞으로 아르바이트는 안할 것 같다고 하였다.

□ 민경(1997년생, 만17세)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고 싶은 것이 많이 돈을 한 번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중3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식당서빙, 대학로 티켓팅,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다. 주로 저녁 6시~11시까지 주5일 근무하였고, 한달에 약 32만원 정도 벌었다. 자신의 일 경험에 대해 일하다보면 업주의 개인적인 심부름도 하고, 무시도 많이 받지만 사고 싶은 것을 사면서 돈을 쓰다 보니 습관처럼 베여 계속 일하게 되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 유리(1997년생, 만17세)

용돈이 부족하여 중3때부터 전단지, 대학로 티켓팅, 식당 서빙,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푸드코트, 호텔서빙을 해왔다. 주중에는 주로 낮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 서빙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한 식당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약 70만원 정도 벌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 자퇴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

시간이 많으니 낮시간부터 오라며 마음대로 스케줄을 짜서 통보하면서 자신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 은지(1997년생, 만17세)

과학캠프와 탐구대회 등 외부활동을 자주 나가는데 1회 참여금액이 평균 30만원 정도로 액수가 크고, 학원비까지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기가 싫어 고1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쇼핑몰 주차장 아르바이트 하나만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방학, 학기 구분없이 주말만 일하고, 시급 5,000원부터 시작해서 1년 가량 지난 현재 5,500원을 받고 있다. 주말에 대회 같은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을 땐 아르바이트를 쉴 수 있어 선택이 자유롭고 조정이 용이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일자리가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 나미(1997년생, 만17세)

현재 받고 있는 용돈이 너무 적어 중3때 고기집 서빙으로 약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여러 식당 아르바이트를 거쳐 현재는 부모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며, 보통 5만 원 정도 받는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경험 중 카페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사회경험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나 재학 중일 때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영수(1997년생, 만17세)

가정형편도 좋지 않았고, 중3때 남자친구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서 같이 벌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작하여 호텔과 식당서빙을 경험했다. 학기 중에는 주말에만 일하고, 방학 때는 예식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시급은 약 5,300~5,500원이며, 한 달에 약 40만원 가량 벌고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같이 일했던 또래친구들이 모두 술, 담배를 안하는 친구가 없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 유해한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정림(1997년생, 만17세)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용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고1때부터 호텔서빙과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피팅모델을 해보았다. 편의점의 경우 주말만 일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특히 피팅모델은 시급이 7,500원 정도로 다른 알바에 비해 높지만, 처음에는 옷만 몇 번 갈아입으면 되니 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들었고, 안 할 수 있다면 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 수현(1997년생, 만17세)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매번 받아쓰는 것이 눈치보여서 고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4,860원 시급을 받으며 주 6일 출근을 하였고, 주중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반 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8시간씩 일하며 한달 평균 50만원 정도 받았다. 아르바이트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없지만 돈 때문에 계속 할 거라고 응답했다.

□ 주희(1997년생, 만17세)

용돈이 부족한데 부모님께 달라고 하기 어려워 고1때부터 호텔서빙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다. 현재는 일주일에 1번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어려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추후 성인이 되면 일 할 때 적응 잘 할 것 같고, 부지런해져서 좋으며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영향을 피력하였다.

□ 은미(1996년생, 만18세)

고2때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이후 다른 카페 2곳으로 이직하였다. 첫 일자리에 서 시급을 최저시급도 안되는 4,000원을 받고 일했으며,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이유없는 해고통보를 받아 그만두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하고 나면 피곤해서 학교가서 좋게 돼서 성적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주변에서 대견하다라는 반응을 받아보기도 했다.

□ 지영(1996년생, 만18세)

주변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고1때 고기집 서빙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일 있을 때 부르면 나가고 있다. 초반엔 주5일 평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금은 주말만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성이 생기는 것 같고, 성격이 착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힘들게 돈을 번 것을 알아도 돈이 생기니까 계속 쓰게 된다고 소비습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희진(1997년생, 만17세)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용돈이 부족해서 중3때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지금까지 호텔서빙을 해오고 있다. 호텔일이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1일에 약 5만원 정도 벌 수 있어 주말만 나가서 20만원 정도 번다. 실제 일은 오후 1시부터 시작이지만 거리가 멀고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 7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번 돈은 주로 옷을 사고, 친구와 영화보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아르바이트는 주로 20살 이상을 구하고 있어 본인 나이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 나영(1994년생, 만20세)

용돈이 부족해서 고등학생 때는 옷공장과 편의점에서 2-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주로 해왔으며, 대학교 입학 직후 편의점에서 주말근무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4,300원에 계약을 했지만 실제 급여를 받았을 때는 4,000원으로 계산이 되었다. 돈 문제가 깔끔하지 못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 중단한 상태이다.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겪게 될 것을 미리 겪어서 나쁠건 없다고 평가한다.

□ 경미(1994년생, 만20세)

수능 끝난 직후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제 성인이 된다는 부담감과 부모

님께 성인인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편의점에서 약 1년 가까이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첫 3개월 가량은 하루에 7시간씩 근무했었고, 점주의 권유로 5시간으로 줄었다. 처음에는 사람만나는 것이 재밌고 신기했지만 상품정리와 판매, 매장 정리일이 고되었다고 회상했다. 시급 또한 최저임금에 못미쳤지만 이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처음 돈을 벌어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 승희(1994년생, 만20세)

수능 직후 고기집, 패스트푸드 콜센터, 대형마트 판촉행사, 카페를 거치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마지막 패스트푸드 콜센터에서의 안좋은 감정노동의 기억 때문에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중단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런 노동은 하고 싶지 않고, 공공기관과 연결된 일자리라면 하고 싶다고 하였다. 지금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2. 서울시 청소녀의 일 경험

1) 노동과 마주하기: 다양한 아르바이트 동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녀/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 벌이’이며, 그 비율은 남성 청소년보다 청소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용노동부, 2011: 59).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녀들 또한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였다. 그러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용돈 벌이’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맥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녀들이 아르바이트를 접하게 되는 시점부터 학교, 가족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자퇴, 노동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

연구에 참여한 미혜, 수미, 유리, 나미, 은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며, 이중 특목고를 다니다가 올해 초부터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은미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앞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며 그 결과 부당행위 경험에도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이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높은 것에는 자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미혜는 자퇴 결정 시 부모와의 갈등으로 탈가정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수미, 유리 등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대신 시간이 남고 그 만큼 씹씹이가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단 먼저 학교를 그만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그만 두게 하셔서 그냥 집을 .. 엄마가 그럴 거면 집 나가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감정적으로 그러셔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혜)

아무래도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깐 다른 애들보다 시간이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깐 용돈 금액이 한계가 있으니깐 그것보다 필요한 사정들이 생겨서 시작하다가 많이 계속 시작하니깐 용돈이 한 달에 10~20만원이면 그것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으니깐.. 저 같은 경우에는 30~40 받으면 가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용돈을 받으면 아끼게 되고, 저축하게 되고 맘 편히 못 쓰겠고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내가 마음 편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작한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낭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수미)

(2) 저소득층의 청소년: 어려운 가정형편,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FGI에 참여한 18명의 청소년 중 절반인 9명(미혜, 유미, 영수, 정림, 나미, 은미,

56) 각종 부당행위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는 일반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부당 경험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 밖 청소년들의 부당노동 경험이 높은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풍부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이해 할 수 있다.

희진, 경미, 승희)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특히 유미는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게 되면서 ‘집안 사정이 안좋아져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언니 2명 또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집안 사정 같은 것도 얘기 하고 하다 보니깐 선생님(동아리)이 아는 지인분께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소개 받아서 하게 됐어요. 엄마가 일하시는데 아버지는 일을 안하시고 계셨는데.. 언니들 다 대학생이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받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벌었죠. 언니 두 명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큰 언니(24살)는 지금 대학 졸업 후에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연구자: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게 되면서 다들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언니들은 계속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계속 했고.. 저는 처음에는 간간히 하자고 시작했던 게 계속 하고 있어요. (유미)

유미와는 달리 나머지 8명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동기에 대해 ‘용돈이 부족해서’ 또는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 없거나, 부족한 용돈을 받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시작,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용돈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 같아요. 집에서 용돈을 안 받아서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가정형편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돈 얘기에 예민하다보니까 차라리 혼자 벌어서 쓰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정림)

(연구자: 중3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용돈이 적어서 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용돈이 주변 친구들 보다 작았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3천원 정도 받았는데 줄 때가 있고, 안주실 때가 있으니까.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셨는데 부모나서 중간에 이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도 워낙 안좋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고1때 초반에 이사 가고. (희진)

절반 정도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던 과거와 최근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임을 보여준다.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며, 가정 형편이 좋아 아르바이트를

안해도 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는 유미와 미혜, 수미의 이야기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 증가를 소비욕구 증가로 연결시켜 문제 행동으로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오히려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년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자: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더 알바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유미: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많이 해요.

미혜: (집이 어려워서) 자기가 당장 돈이 필요한 애들이 많이 하긴 해요.

유미: 잘사는 애들은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돈도 받고 하니까, 재네는 편하게 놀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미혜: 저도 용돈 많이 받고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안하겠죠). 주변에 자취하는 대학생들 봐도 부모님이 등록금주고 그러면 알바를 안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죠.

중상위권 집 애들은 알바를 안 해요. 왜냐면 용돈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금액이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주시잖아요. 자기 가정 형편에... 근데 일단 돈을 많이 버시면 월 30을 주던, 50을 주던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받으니까 자기가 모자란 걸 모르니까 알바를 안 하는데, (수미)

(3) 고소득층의 청소년: 사회 경험과 자기 계발이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

해수, 민정, 은지, 나영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복한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다. 즉 이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계급의 청소년들이다.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나름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경험 삼아’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어서’, ‘사회 경험을 위해서’, ‘캠프 참가비용을 벌기 위해서’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한 번 벌어보고 싶고.. 그런 욕심에..(민정)

(연구자: 경제적인 이유나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중략) 제

가 외동딸이어서 (부모님이) 바르게 자라게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이야기 할 때마다 싫어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회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설득해하고 그랬어요. (해수)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활동이나 대외를 많이 다니는데, 캠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30만원씩 나오다보니까 안 그래도 학원비도 많이 나가는데 그거까지 부담 드리기가 죄송해서 알바하기 시작했어요. (은지)

앞의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영향력 인식이 하위층과 중위층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FGI에서 그 이유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비교적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할 때 다시금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노동하기: ‘십대 여성’으로 일한다는 것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부당노동 피해 경험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었다. 그들의 노동경험을 구성하는 과정은 부당노동 피해의 연속과도 같았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노동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당노동 피해는 몇 가지로 요약하기 힘들만큼 그 내용과 양상과 너무 다양하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당노동 피해는 십대 노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래 남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성별화된 맥락에서 부당노동 피해를 경험하는 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 임금착취의 일상화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노동 피해는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FGI 결과에서도 연구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

녀가 임금착취를 경험했을 정도로 임금착취가 다양한 형태로 일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뭔가요?

근로시간조차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는 원 계약과는 다른 초과근무 또한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주말과 저녁에 몰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7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⁷⁾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가산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일한 시간만큼 약속된 통상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미, 유리, 영수, 정림, 주희, 지영, 희진은 호텔연회장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었는데 호텔연회장 서빙의 경우 ‘공제’⁵⁸⁾라는 이름으로 임금착취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4: 20)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텔연회장 서빙의 임금착취는 30분 점심시간에 대해 1시간 시급 제외, 타행이체수수료만큼 시급에서 제외 등의 형태로 추가적인 임금착취가 매우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포스기로 찍도록 되어 있는데 10시에 포스기를 찍도록 강요, 전산 상으로는 10시에 퇴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야간노동을 하고 있었다.

저희는 청소년이라 시급도 적도 7시간 미만이면 30분 떼고, 7시간 이상이면 1시간 떼는데 그 돈은 업체가 가져가요. (유미)

57) 위의 <부표 1>과 <부표 3>를 보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비율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9.0%,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10.8%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8.1%는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 십대 청소년들은 호텔, 음식점 뷔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직접 고용이 안되고 아르바이트 중개업체를 끼고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아르바이트 소개 업체에서 ‘공제’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가져간다. 대개 7시간 미만일 경우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7시간 이상으로 1시간의 급여를 가져간다.

단기알바 하려면 호텔 같은데 가야 되는데, 그거는 시급은 진짜 짠데 엄청 힘들어요. 하루를 아예 다 바쳐야 되는데, 점심시간을 시급에서 빼거든요. 시급에서 빼는데 밥을 먹는데 거기서도 일을 시켜요, 밥을 먹으면서 하라고, 바쁘니까, 그럼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저희가 정작 쉰 거는 30분도 안되는데, 공제는 2시간을 뺀 거예요. (해수)

친구들도 ○○○○, ○○○○ 이런데서 밖에 못하고. 분명히 마감은 청소년은 10시로 되어 있고 서류 작성하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안하려고 하죠. 10시 이후부터는 1.5 배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 안주니깐 그래서 안한다 하는데 좀만 더 해달라고 해서 하면 1.5 배는 물론 안주고 1시간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유미)

임금을 사업주나 상사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 청소년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출퇴근 시간, 임금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사업주와의 계약 사항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어떻게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임금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와 권리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기본 서류에 대한 작성과 교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의무화⁵⁹⁾될 필요가 있다.

② 임금에서 제외되는 업무 준비 및 종료시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임금 착취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카페, 식당, 호텔 연회장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근무시간 이전에는 청소, 식재료 준비, 복장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근무가 종료된 이후 정리 및 청소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동이 투자된다. 그러나 준비 및 정리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59)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등은 임금 산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2013년 9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이 적힌 임금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픈이 그 시간(아르바이트 시간)인거지 그 시간보다 2,30분 더 일찍 나와서 해야 돼요. (연구자 : 늦게 나오면 뭐라고 해요?) 네. 그런 거 기본인데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 청소년 어찌고저찌고 해요. (은미)

지각비를 내기도 해요. ○○○○에서 5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4시 45분까지 가야돼요. 가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다 하고 포스기를 찍어요. 근데 그게 5시 1분에 찍은 거예요. 저는 15분 전에 왔는데... 1분을 늦었다고 천원을 떼었어요. 10분에 천원이라고. 그리고 몇 번을 포스기를 늦게 찍었다고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유리)
저는 원래 4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건 근무시간으로 안쳐줘요. 가서 옷 갈아입고, 미팅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유미)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민경, 유리, 영수, 수현의 이야기에서 패스트푸드점은 근무시간보다 2, 30분 일찍 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의 유미의 이야기처럼 준비시간이 다소 지체되어 포스기를 1~2분 늦게 찍었을 경우도 지각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지각비를 임금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있었다. 호텔 아르바이트 역시 준비 시간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호텔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풍부한 희진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리 도착하여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 가거나 서빙이 아닌 주방보조 등의 업무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③ 꺾기

청소년/년들의 아르바이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임금 착취의 형태 중 하나가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이나 조퇴를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꺾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0년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 포함시켜 ‘꺾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한 바가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14.2%가 ‘꺾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한 청소년의 27.7%가 ‘꺾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그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GI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외에도 식당, 호텔 연회장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꺾기’에 의한 임금 착취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에서 업체를 부를 때는 필요한 시간에만 부르고, 조금 한가해지면 바로 보내요. 괜히 애네들 놔둬서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해요. (영수)

OOOO가 심해요. 한가하면 신입 애들은 8시만 되도 너 그냥 퇴근해 이래요. 퇴근 짝이라고 하고... 롯데리아가 저희가 청소년이니까 10시 이후로 근무를 못 해요. 일단 바빠도 퇴근부터 짝이라고, 한가하면 먼저 가라고 하고, 저희도 돈 벌라고 하는 건데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하면 거의 하루에 4시간도 못 하는데, 중간에 가라고 하면 돈 진짜 못 벌잖아요. 차비가 더 아깝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영수_)

식당은 맨날 그랬어요. 애초에 6시 출근해서 10시 퇴근이고 사람 많으면 11시나 12시까지 해라고 해서 정했는데, 한 시간 있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손님 없으면 그냥 가라고 하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나미)

따라서 ‘꺾기’에 대해서는 이후 정책방안을 논의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십대’라는 이유로: 연령차별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은 ‘청소년’로서 즉, ‘십대’로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 ‘십대’이기 때문에 비청소년들이 하지 않는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며, 손님, 고용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등의 불합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① 점점 더 열악하게

노동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였지만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의 어려움도 FGI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청소년들은 일단 ‘십대’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네 번째 FGI에 참여했던 수현, 주희, 은미, 지영은 원하는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매우 강

하게 이야기 하였는데, 아래의 지영이나 희진의 이야기처럼 청소년 가능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해도 십대라서 거부당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자: 알바를 구할 때 쉽게 구해지는 편이에요?)

수현, 주희, 은미, 지영 모두: 아니요.

수현: 정말 전화를 엄청 해요.

근데 막상 또 청소년 가능 써놔서 전화를 해보면 일단 몇 살이세요부터 물어봐요. 18살이라고 하면 미성년자는 안돼요. 하고 끊고...(지영)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알바천국 같은 데서는 거의 20살 이상 구하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워서 아직까지 (호텔 알바 외 다른 곳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희진)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청소년들은 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 수밖에 없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아르바이트, 가장 열악한 아르바이트를 물어봤더니 이견이 없이 모두 호텔 연회장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호텔과 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들이다. 즉, 가장 하기 싫고 가장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앞의 아르바이트 동기에서는 사회 경험상 일을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사례들(해수, 민경, 은지, 나영)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현재 하고 있는 일, 업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안하고 싶지만 ‘십대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드물어 어쩔 수 없이 호텔 연회장과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중학교 때 전단지배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외에 고등학교 때에는 줄곧 호텔 아르바이트만 해온 희진의 경우에는 호텔 외에 십대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FGI 조사 내내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다.

제가 원해서 그 일을 한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현)

저는 카페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제일 하고 싶었던 것들(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다 못하고, 그 중에서 낮은 순위의 동네 카페에서 했어요. (은미)

(연구자: 다른 호텔 알바 외에 다른 알바 해보겠다는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했는데.. 제가 아직 98년생이다 보니까 구하는 데가 별로 없고, 돈이 급하기도 급하고 일단 제 나이에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그것(호텔 알바)밖에. (중략) 일단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 구할 때는 호텔알바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려고 찾아보면 딱히 제 나이에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찾는 것도 일이고 (희진)

이러한 청소년 노동의 열악성은 일자리 질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으로 나타났고, FGI 참여자 중 7명이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호텔 연회장 서빙의 경우 호텔에서 이들 청소년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중개업체가 존재하여 중개업체에서 ‘공제’라고 일컬어지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고 임금을 지급하는 간접고용 형태였다.

이처럼 청소년/년들이 점점 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경제위기, 노동빈곤, 일자리 축소 등의 거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18).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과거 청소년/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곳을 20대와 중·장년층이 채우고 십대 청소년/년들은 더욱 열악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은 ‘여성’이라는 차별 조건이 더해지면서 남성 청소년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② 십대, 미성년자, 청소년 = 만만한 존재

청소년들에게는 ‘십대’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공공연하게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다. ‘십대’라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청소년/년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대견하다는 평을 들은 경우도 있었지만(영수, 은미), 우리 사회

에서 대부분의 청소녀/년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의 유미, 수현, 주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녀가 알바를 하면 일단 청소녀가 알바한다는 것 자체로도 무시를 엄청 해요.. 공부나 하지 왜 이렇게 하나.. 알바를 하면 공부를 안한다는 인식부터 돼잖아요. 그런 것 부터가. (유미)

일단 어리니까 무시하는 게 강해요.(수현)

너 몇 살인데 여기서 일하나, 일해도 되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공부나 해라라는 말도 해요. (주희)

학교 선생님 또한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리고,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래 유미의 이야기는 일하는 청소녀에 대한 안좋은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소녀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께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하는 청소녀들에게 ‘학교’라는 보호막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해요. 학교에서도 뭐가 날라온데요. 근데 선생님들도 자세하게 조사를 안하세요. 손 들어봐 이러면서 한 3-4명 나오면 없다고 표시해서 넘기고 한 10명 나오면 과반수 이상에 체크해서 한 10초 만에 넘겨요. (지영)

애들이 그래요. 알바를 한다 손을 들면 그러면 선생님이 안 좋게 볼까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신경써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주말에 한두번씩 알바하고 그러는데.. 개네도 그냥 안한다고 그렇게 하고. (유미)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수현)

이러한 일하는 청소녀/년에 대해 존중하지 않거나 일하는 청소녀/년에 대한 낙인이 뒤따르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녀/년의 노동을 더욱 열악한 곳으로 몰아넣는 요

인이 되고 있다. 경미의 사례처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부당 해고를 당하고, 유미의 사례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 20대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유리의 사례처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깎아놓은 등의 인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저는 2-3번 옮겼어요. 처음에는 아는 선생님이 편의점 소개 시켜주셔서 하고 주인이 바뀌면서 청소년 안쓴다 해서 잘렸어요 (경미)

20세 이상은 최저 6천원부터 시작하고 저희는 5500원부터 했는데 저번달부터 5300원으로 떨어졌어요. (중략) 원래 청소년 말고 어른들은 (만) 19살부터는 공제같은 걸 안때요. 저희는 청소년이라 시급도 적도 7시간 미만이면 30분 떼고, 7시간 이상이면 1시간 떼는데 그 돈은 업체가 가져가요. 연령이 높아도 단기로 하면 공제가 되는데, 어른들은 거의 업체를 안끼고 장기알바로 호텔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때요.(유미)

치킨집 알바를 했었어요.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부부셨고, 배달하는 사람도 친구였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미성년자라고 14만원정도? 일주일 치를 안 주고 첫 주는 안 주고 다음 주부터 돈을 줄게. 일주일 치를 깎아놓는 거는 미성년자니까 관둘까봐. 저는 말을 못 듣고, 첫 주를 일 하고, 저는 주급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일주일치 일한 거 주세요라고 했더니 너 미성년자니까 깎아놓는 거라고, 너 몰랐구나? 해서 다음 주에 돈을 줄게 이래요. 일단 넘어갔어요. (유리)

‘십대’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지만 또 다시 청소년들은 ‘십대’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이들은 부당 노동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부당 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로 논의하였다.

③ 친권자(보호자)동의서, 또 하나의 굴레

청소년/년의 고용을 제3자에게 알려 노동 착취 및 부당 대우 등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친권자(보호자)동의서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소년노동

인권네트워크(2014: 41-42)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힘든 청소년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본 연구의 FGI에서도 친권자 동의서가 오히려 청소년의 노동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저희 사회 전반이나 법에서 나와있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의 노동억압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억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어디 나가도 너는 여자잖아,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이런거 할 수 있어? 여자는 안뽀아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성과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고 법에 나와있는거 같아요. 그런걸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동의서도 가짜로 작성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형식적인거고, 어차피 부모도 알바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뭐 그거를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미혜)

위의 사례에서처럼 친권자동의서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미혜와 유리의 이야기를 통해 친권자동의서가 청소년을 ‘보호가 필요한 미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을 좀더 포괄적으로 십대를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상, 청소년/년을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하는 개별 노동자로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요원해질 것이다.

(3) 십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별화된 노동시장

FGI를 통해 앞에서 논의한 ‘십대’로서의 연령 차별 외에도 청소년들은 ‘여성’으로서의 성차별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또래 남성에게 비해 부족한 일자리, ‘여성성’의 강요와 외모 차별, 성희롱 등 또래 남성과는 다른 성별화된 노동 경험을 하고 있었다.

① 또래 남성에게 비해 부족한 일자리

또래 남성에게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또래 남

성이 비해) 십대 여성으로서 힘든 요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57.2%) 나타난 요인이다. FGI에서도 십대 여성이어서 힘든 요인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또래 남성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앞에서 십대들의 노동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논의한 것처럼 십대들이 갈 수 있는 타 연령층이 회피하는 일자리는 매우 강도 센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종이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청소년 가능이라는 구인 정보는 대부분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택배 상하차나 배달노동, 고기집 서빙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노동의 경우 일이 매우 고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시급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진입조차 되기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알바 구할 때 남자를 더 많이 뽑아요. (연구자: 그건 왜 그럴까요?) 힘이랑 기술적으로 남자가 월등하니까. 여자는 많이 안 뽑는 거 같아요. (수현)

(남성 청소년들이) 더 편하다?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에 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다고 봐요. 저희는 해봤자 서빙이나 이런 건데, 개네들은(남성 청소년들은) 면허증만 따면 배달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나미)

(연구자: 보통 보면 남자애들이 더 일을 쉽게 구해요?) 네. 제 나이 대는 라이더(배달) 아니면 고기 서빙인데, 고기 서빙도 거의 다 남자예요. 여자도 가끔 보긴 하는데 남자가 더 많은 편이에요. (연구자: 그러면 여자를 선호하는 직종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서빙도 가끔 여자 구하고. 편의점은 야간 말고 오전에는 여자 구하긴 하지만 거의 다 남자가 하고, 야간은 거의 남자고. 당구장도 남자고. (유미)

위의 수현이와 나미, 유미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년의 노동시장도 성인 노동시장과 동일하게 직종 자체가 성별화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십대 노동의 열악성에 더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래 남성에 비해 접근 가능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이중의 소외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종과 업종의 분화는 청소년기의 노동 경험을 성별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동일 업종 내에서의 성별 분업

위에서 논의한 성별 업종 분리 외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직무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로 남성 청소년에게는 매니저 업무를 시키고 청소년들에게는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시키거나, 잡무를 시킨다는 것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였다. 또한 유미의 이야기에 따르면 호텔 연회장 서빙에서 남성 청소년들은 장기 알바로 호텔 측에서 직접 채용하여 중개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남자는 장기알바 쓰는데도 있어요 업체 등록 안하고, 여자애들은 호텔알바 잘 안해요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그만 둘까봐 안해주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도 다른 호텔에서 일하는 애들은 벌써 원래 무전차는게.. 반년 정도 하면은 다 차거든여 개네는 벌써 차는데 저는.. 아직 메이트라고 해야되나? (연구자: 무전을 찬다는 게 조금 직급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무전을 차면 매니저님 바로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니저님 바로 밑이면 무전을 차서 장기알바 단기알바한테 지시를 다 내리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해주는데 여자는 잘 안해주는 것 같아요. (유미)

손님 접대 하는 거는 보통 남학생 안 시키고 여학생 시키잖아요. 손님을 대할 때 여자를 시키면 손님들이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내해 드리다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먹고, 뭐하다가 실수해도 여자들한테 욕하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은지)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에게 보통 여성들이 하게 되는 일들 있잖아요... 잡일이라던지 청소나 물건채우는 거, 사무실 전화를 받는 거, 뭐 사오는 거, 커피타오는거 이런거를 많이 시켜.. 자기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 다른 일을 하려고 고용된 사람인데.. 다른 잡일같은거 흔히들 여자애가 해야지라고 보여지는 일들을 시키는게 되게 싫었어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여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미혜)

이후에 논의되지만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주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여성스럽게’ ‘상냥하게’ 손님을 대할 것을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③ ‘여성성’의 강요와 외모 지상주의

FGI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또래 남성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십대 여성’으로서 특수한 경험들을 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대부분이 ‘십대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사회적으로 ‘십대 여성’에서는 “어리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기대, “상냥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때문에 ‘십대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 말잘듣고, 상냥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미혜와 수미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된 이유에 대해 사장님이 본인들에게 기대하였던 말 잘듣고 상냥한 여자애라는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제가 커피 타오라고 했던 데서 일했을 때는 2달 일하다가 짤렸어요. 그게 이유가 계속 잡일 시켜서 다른 알바한테는 안시키는데 왜 저한테 시키냐.. 그때가 제가 18살 때였는데 왜 저한테 시키냐.. 저는 정해진 일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안하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얼마 안가서 자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니가 여자애고 나이도 어린데 우리가 똑같이 차별 없이 시급주면서 써가지고 니가 되게 일을 열심히 할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유감이다.. 그러면서 잘랐어요. (미혜)

두 번째 알바, 전자담배 파는 데서는 (중략) 파는 거는 잘 팔았던 거 같은데 그 분(사장님)이 제 생각에는 다른 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장님이어서 무조건 여자를 구한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간 거였는데... 시급도 6000원 주고, (중략) 되게 편한 알바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급 6000원을 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분이 젊은 사장님이기도 하고, 여자 알바생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사랑살랑 하면서 꼬리를 쳐주기를 바랬나봐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딱 자르고 일만했거든요. 그래서 잘렸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수미)

또한 미혜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커피 심부름, 청소, 전화 응대 등의 ‘잡일’을 본인이 주로 담당해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나이가 어리고 여자여서”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였다. 사회적으로 허드렛 일이라고 인식되는 일들은 여성과 남성 간 젠더 위계 속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여성이라는 것에 어린 나이가 더해지면서 더욱 열악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커피 타와라.. 이런것도 시키고 되게 불쾌한게.. 직접적으로 엉덩이를 친다던지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에게 보통 여성들이 하게 되는 일들 있잖아요... 잡일이라던지 청소나 물건채우는 거, 사무실 전화를 받는 거, 뭐 사오는 거, 커피타오는거 이런거를 많이 시켜.. 자기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 다른 일을 하려고 고용된 사람인데.. 다른 잡일같은거 흔히들 여자애가 해야지라고 보여지는 일들을 시키는게 되게 싫었어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여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미혜)

이처럼 업무태도나 하는 일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상냥함’, ‘친절함’ 등의 강요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외모차별이나 외모 관리에 대한 요구를 경험하고 있었다. 외모 차별은 사업주로부터 또는 동료 간에도 이루어졌으며, 업종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었다.

호텔 알바 중에 얼굴을 보는 데는 (저는) 키부터가 안돼요. 큰 호텔이나 좀 좋은 호텔 같은 데는 아예 여자 키 자체가 165 이상이라서 (저 같은 아이들은) 안 구해요. (영수)

일일알바로 가는 게 있고, 진짜 호텔 직원이 있잖아요. 서빙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저 또래 여자 애들이 많았는데, 호텔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호텔리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요? 물어보면 보통 공부를 해라.. 팀장은 여자는 예뻐야 돼, 여자는 몸매가 좋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호텔 직원 여자 분들은 머리가 좋아도 손발 고생하는 거라고. 무조건 여자들은 예뻐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호텔 직원 분들도 저희는 학생인데도 예쁜 애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고.. (유리)

저희는 외모 많이 봐요. 외모로 편애를 많이 봐요. (중략) 반장님 같은 경우는 나이 많아도 28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냥 오빠, 오빠 그러거든요. 친밀성 좋은 애들은 오빠한테 애교부리고 달라붙고 그러니까 근무표를 짜는데도, 보통 경력 순으로 짚으면 요즘에는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네들이 얼굴이 예쁘네 이런 식으로 넣고. (은지)

외모 그런 거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손님도 보기 좋아야 하니까... 저랑 많이 똥똥한 애가 있었는데, 개 똥똥하다고, 애 왜 하냐고 빨리 보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애 흠 시키지 말라고, 비좁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나미)

(연구자: 외모에 대한 편견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한테 더 심한 거 같아요?) 네. 남자애들은 상관없는데 여자애들은 외모가 제일 심해요. (나미)

외모에 대한 관리 강요는 치마를 입고 오게 한다거나 화장을 할 것으로 요구받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에게 더욱 강요되는 외모 차별은 성별화된 업무 분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은지와 민경, 수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청소년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에게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업무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외모에 대한 차별이 또래 남성에게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자들이 손님을 더 많이 대하니까. (은지)

○○○○에서 일할 때 여자들은 카운터에서 일을 하니까 주말에 아침에 화장을 하기 힘들니까 안 하고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 불쾌해 하신다고 화장하고 오라고. 처음엔 장난인줄 알고 그 다음날에 민낯으로 갔는데 진심이었던대구요. 그 말이.. 주로 ○○○○에서 일을 해도 여학생들은 카운터를 많이 보고, 남학생은 뒤에서 버거를 만들어요. (중략) 근데 이제 여자들은 손님을 상대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잘못해도 저희가 죄송하다고 해야 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민경)

서빙 2명이 있었는데 저는 여자고, 개는 남자니까 아무래도 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니까 서빙 할 때는 벅찰 때도 있었어요. 서빙이 아무래도 손님 앞에 나가 는 일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면 좀 힘든 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 화장도 하고 예쁘장하게 꾸미고 오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화장하고, 옷도 일을 하러 가는 건데 편하게 입지도 못하고.. (수미)

한편 아래의 수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화된 업무 분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적인 외모 관리에 대한 요구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와도 연결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무래도 저는 그냥 밥집인데 흥대 정문있는데서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손님들이랑 가까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테이블 계속 돌아다녔었는데 사장님이 원해서 예쁘게 하고, 치마를 입고 일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꼴로 이상한 남자 손님들이 와서 성적농담 던지면서 하고. (수미)

④ 성희롱 피해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중 고객, 고용주,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한 청소년은 27명으로 약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GI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빈도로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성희롱은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손님으로부터 가해지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유미와 경미, 승희의 경우에는 모두 남성 고객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요구받거나, 취객을 상대로 술을 갖다드리는 등 성희롱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었다.

편의점 할 때 4,50대 아저씨들이 엄청 많았어요. 학생이니깐.. 저 최근까지도 연락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분이 60대신데.. 제가 알바 할 때 핸드폰을 놓고 알바를 하는데... 저 하기 전부터 단골이셨대요. “알바 바뀌었네” 하면서 처음에 살갑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가 한 달 쯤 되어 갈 때 저한테 번호를 알려 달라.. 손녀딸 같아서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싫어해서.. 할아버지니깐.. 거절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저 지금 알바해서 시간 없어서 바빠요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그 분이 매주 일요일마다 오셨는데 산에 가기 전에.. 아침마다 오셔서 달라 달라 해서 제가 주류를 채우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포스기계 옆에 두고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을 가져가시더니 자기 번호를 입력하고 자기 번호를 입력하고 전화 하고 끊는 거예요. 번호 가져가고 지금도 연락 와서. 그래서 지금 차단시켜놨는데. (연구자: 뭐라고 연락와요?) 어우 예쁜이 왜 그만뒀어? 밥 한번 먹자고. 좀 안좋은 말 많이 했어요. 사진 한 번 섹시하게 찍어서 보내라고. 이런 말도. (유미)

제일 큰 건 편의점부터 얘기하면 술 취한 아저씨들 대하는게 제일 힘들었어요. 단골인 아저씨들이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많았는데 술 같은 것도 카운터 와서 술 갖고와 해서 술 갖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술 냄새도 너무 많이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었고..(경미)

저도 편의점 했었는데 막걸리 자주 사러 오시던 분이 있었는데 되게 할아버지셨어요. 저한테 항상 오시더니 약간 자식 얘기도 많이 하셔서 손녀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해서 대담도 잘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오시더니 종이에다가 본인 번호를 적어주시면서 저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는거예요. 근데 느낌이 썩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게 주변 배회하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손녀딸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승희)

호텔 연회장 서빙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아르바이트에서도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서빙 아르바이트의 경우 손님 사이를 오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호텔 옷을 입잖아요. 옷이 치마고, 치마가 달라붙어요. 남자 손님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어린 애들이 수고하네. 그러면서 엉덩이 치시고, 그래도 손녀 보듯이 해주시는 거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해수)

네, 많아요. 손님들이 제일 심해요. 고깃집이니까 술을 먹으면 손님들이 눈으로 희롱할 때도 있고, 엉덩이 만질 때도 있고, 퇴근할 때 쫓아 올 때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맞춰줘야 돼요. (나미)

손님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손님들이랑 가까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테이블 계속 돌아다녔었는데 사장님이 원해서 예쁘게 하고, 치마를 입고 일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꼴로 이상한 남자 손님들이 와서 성적농담 던지면서 하고, 쉽게 자주 말하는 건 애 여자친구 없는데.. 몇 살이에요? 이런데서 알바 한다고 그러고, 예쁘고 뭐하네 그러면서 (중략) 그런 손님들을 상대할 때 어쩔 수 없이 계속 웃어야 하고, 농담도 적당히 받아쳐주면서 끊어야 하고, 여성으로서 힘든 거 같아요. (수미)

심지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미혜와 승희 역시 전화를 통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다. 특히 승희의 경우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농락을 당했다며⁶⁰⁾ 그 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저는 콜센터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깐 얼굴이 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깐 전화하면은 직접 상대하는 거니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이런건 없는데 “아가씨 목소리가 이쁘다.. 몇 살이야? 내가 따로 연락할게 이름이 뭐야?” 아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고 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미혜)

60) 구체적인 단어나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연구자의 요구에도 승희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언어적 농락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굉장히 오래 하려고 했어요. 주말알바여가지고, 제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전화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정하고 전화한 사람인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한 거예요. 주소도 일부러 못 알아듣게 엄청 빠르고 입에 가까이 대고 하길래 계속 여쭙봤더니 왜 못알아들어 이 여자야! 하더니 그때를 시작으로 약간 그냥 다짜고짜 욕하면 상관없는데 약간 농락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 아침밥 먹었냐 물어봤는데 그냥 제가 그거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또 대답할 이유가 없냐면서 또 욕하고 그래서 그거에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 담당하셨던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만 두는 걸로.. (승희)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동일하게 이러한 성희롱에 대해 청소년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일선에서 이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이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주들은 손님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참을 것으로 요구하거나 오히려 친절하게 웃으며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객이니까 좋게 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미)

혹시 몰라서 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와서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승희)

그래서 매니저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애네가 귀여워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해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 못지않게 사업주나 직장 상사로부터의 성희롱에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보다는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사업주나 직장 상사로부터의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1:1로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깨, 팔뚝, 엉덩이 등의 신체접촉으로 이어지거나 성적인 농담도 좀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수미의 경우, 시급이 높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을 했던 곳에서 사장님으로부터의 성희롱을 경험하고는 시급이 높고 편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뒤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편의점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제가 8시에 끝나면 사장님이랑 교대를 해요. 그러다보면 사장님이 처음에 오시면 몇 분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일찍 오셔서... 자꾸 처음에 공부하는 하고 있나 얘기를 하시다가 딸처럼 보여서 그래 하면서 어깨를 만지거나 팔뚝 조물뚝 거리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럴것지 하면서 넘기고, 넘긴 것 같아요. (정림)

세 번째 가게 알바할 때 사장이 개수작 부렸어요. (연구자: 어떻게?) 남자친구 있다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 술 먹고 싶겠네 하면서 같이 술먹자고, 자기 원래 직원들한테 술 잘 사준다고 하면서 계속 같이 술 먹자고 그랬어요. (정림)

(사장님이) 차가 있으셨는데 (제가) 집이 파주 쪽이니까 거기가 흥대에 있었거든요. 차로 파주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9시에 끝나는데 이상하잖아요. 굳이 날 왜 파주까지, 괜찮다고 뒀다고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약간 뭔가 물 떠다줘, 이런 애교를 부르는 듯한? 일적으로가 아닌 사적으로 얘기 많이 꺼내시고 그런 게. 어깨 터치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때 이후로는 시급이 높고 편한 알바는 뒤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미)

그리고 호텔 코스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리사 분이 옆에 계세요. 그 요리사분이 말을 거칠게 하시는 데, 말하시는 것도 약간 통통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한테 너네 치마 입지 말라고, 다리 안습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단추 터질 것 같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장난 계속 치시고, 그러면서 너희 두께 한 번 재보자 그러고 다리 은근슬쩍 계속 만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해수)

(4) 부당 대우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여성'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일단 노동시장에서 함부로 해도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시장에서 부당대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거나 손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여성이니까'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체성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정당하게 항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18명의 청소년 중 5명(유리, 미혜, 나미, 영수, 정림)은 급여와 관련된 부당 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관련 단체를 통해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 외 13명의 청소년들은 본인이 당했던 부당 대우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신고를 해봤던 유리, 미혜, 나미, 영수, 정림 또한 부당대우를 당했던 모든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은 공식적인 신고 및 처리 체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나이 어린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무시 당해온 경험이 부당 대우에 대한 정당한 협상력을 잃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내가 돈을 받아야겠고, 제가 여기서 따지면 나이도 어리고 여자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 걱정도 되고, 얼마 안 되는 돈 받고 차라리 때려치우자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림)

어리다보니까, 아직은 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유리)

돈 얘기도 그렇고, 뭔가 법적으로, 우리 미성년자니까 뭘 모를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같은 것도 안 주고, 그냥 최저시급이 최고시급이 되는... 거기에서 더 일을 해도 우리는 뭘지 모르고 주는대로 받잖아요. 너희가 뭘 알겠어 하고... 그럼 신고를 해도 돼요? 라고 말하면 신고 해봐 내가 이길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게 제일 그렇지요. 부모님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민경)

(연구자: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제기 해 본적 없죠?)

니영: 없어요. 말하면 찢리니까.

승희: 너네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 이런 사람이 많죠.

경미: (신고)근데 어떻게 그래요 동네에서 하는데.. 얼굴 계속 마주 봐야 하는데

한편 손님으로부터의 욕설이나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시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웃으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계속 응대해야 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자: 손님이 욕을 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수현)

손님이 계속 무리하게 귀찮게 반찬을 리필해달라고 해도, 손님들이 ‘야’이렇게 반말을 할 때도 웃으면서 네 갖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야 해요) (지영)

이처럼 청소년의 부당 대우 상황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시정 조치 또한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공공연하게 부당한 처우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에 대한 부당 대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5) '학교 밖', 또 다른 차별 요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당노동 피해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십대 여성으로서 힘들다'는 응답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으며⁶¹⁾,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동안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에서의 부당 대우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약 20%의 청소년들이 부당노동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FGI에서 부당 노동 피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인지 및 부당대우에 대한 인지가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 FGI를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당 대우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당 노동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설명 모두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더욱 열악한 지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FGI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학교 밖'이라는 상황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더욱 열악한 노동에 처하거나 합부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61)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27.4%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64.1%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1: 48).

있다는 것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는 학교를 다닐 때 다녔어요. 그런데 하면서 자퇴를 했으니까 말 안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시간 많겠네? 해서 낮에 옮기자 해서 낮으로 옮기고, 학교 안 다니면 충분히 비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시간이 많겠네? 이러면서 시간 마음대로 짜고. (연구자: 그거를 ○○○○ 측에서 짰어요?) 네. 원래는 학교 다닐 때니까 오후에 일했어요. 자퇴를 안 걸 알고 오전으로 바꾸고, 오후에도 시간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오후에도 들어오고.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아니라 다른 음식점에서도 학교 안 다니면 오전에도 나올 수 있겠네, 오후 늦게까지 나올 수 있겠네 이러면서. 제 시간이 아니라 그 쪽 시간에 편한 대로 마음대로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유리)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안다닌다고 하면 좀 불량스럽게 보는 시선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더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미)

저는 일부러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은미)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의 실태가 더욱 열악한 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하며, 일부 학교 밖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노동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청소년 내부에서도 다양한 특징을 고려한 상이한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제기해주고 있다.

3) 노동 이후: 나의 생활에서 '일'의 의미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FGI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진로 및 취업 관심 고취가 전반적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에 비해 돈과 노동의 가치 인지,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 고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FGI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평가는 거의 돈의 가치에 대한 인지, 사회경험을 미리 해본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내용이었다. 유미와 경미는 내성적이었던 본인의 성격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활발해 졌다고,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정림과 희주, 미혜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번다는 것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주희와 나영은 안좋은 경험이었든 그것 역시 사회생활의 이면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긍정적인 거 같아요.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아무리 내성적인 애들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안되니까 성격도 활발해지고. (유미)

제가 내성적이어서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안하거든요. 속으로만 얘기하고 겉으로는 말을 잘 안 뱉는 성격이라 그런 게 있었는데 손님 대하고 하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말 걸어 줄 때마다 다 대응해줘야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하고 대하는 그런 게 많이 늘고 (경미)

그래도 이 나이에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번다는 거니까. 뿌듯한 거 같아요. (희주)

저는 그냥... 진짜 세상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 느낀 것 같아요. 진짜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동네 사람들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들의 그.. 악을 많이 느꼈어요. 사회의 악. 자기보다 낮은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거. 어차피 제가 사회에 나가면 겪어야 되니까 미리 겪어서 나쁠 건 없죠. (나영)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학업성적 저하, 유해문화 경험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지만, 육체적 피로, 차별로 인한 상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등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것이었다. 또한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안되며(은지, 수현, 주희, 은미, 지영), 영수의 경우 미래의 직업으로 꿈꿨던 호텔리어에 대해 호텔 아르바이트 하면서 후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호텔리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제가 일하는 호텔에 취직한 언니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반반이어서, 고3 언니들이 취업을 해서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쳐주고 일을 하러 가요. 그러면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언니들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랑 같은 일이 똑같으니까 하기 싫어지고, 제가 생각하는 호텔리어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알바생들이랑 똑같은 일하고, 물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취급 같은 것도 알바생들이랑 똑같이 대하니까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관광 고 간 것을 후회해요. (영수)

특히 앞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좋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만약에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안하겠죠. 부모님이 갑자기 막 돈을 보내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은 절대 안하겠죠. (미혜)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부정적인 것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현 청소년들의 노동이 매우 열악한 것에서, 그리고 부당대우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열악한 청소년 노동 현실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앞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에서 드러났듯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야 하는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 노동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IV 장의 2절에서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아르

마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온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명과 십대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 이십대 여성 3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FGI를 통해 다음의 주요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앞의 설문조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노동 경험들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 십대 청소년/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이 성별화되어 있으며, 그 노동시장에서 남성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이 젠더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십대’로서의 연령 차별 외에 ‘여성’으로서의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령 또래 남성에 비해 부족한 일자리⁶²⁾, 동일 업종 내에서의 성별 분업, 강요된 ‘여성성’과 외모 가꾸기, 성희롱 등 또래 남성과는 다른 성별화된 노동 경험을 하고 있었다.

둘째, 남성 청소년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부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르바이트 동기 및 노동 과정이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과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시간적 여유가 많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이라는 정체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과 동일시하는 시선을 느끼거나, 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다거나, 시간이 많다고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부당 행위 피해 비율이 높고 십대 여성으로 힘들다는 점을 더욱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

62) 앞에서도 논의했지만 또래 남성에 비해 부족한 일자리는 성별 요인 외에도 십대들의 노동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십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타 연령층에서 회피하는 매우 강도 센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업종 특성 상 남성 청소년들을 선호하게 된다.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더욱 열악한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학교 진학 여부 외에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구의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아르바이트 동기와 아르바이트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 벌이’라고 답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이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구의 경제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청소년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인지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 경험과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가정형편이 좋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부럽다고 말하거나, 돈을 번다는 의미 외에는 아르바이트가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등 고소득층 청소년들에 비해 아르바이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을 모색할 때, 청소년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상이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노동 경험에서 왜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되고 논의되지 못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와 그 구체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반드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사업주 마음대로의 임금 정산, 꺾기 등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성희롱 피해 및 외모 차별 등도 설문조사 결과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나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년들의 노동실태보다 현실은 더욱 열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년들의 노동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보다 청소년/년들의 노동 실태는 더욱 열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노동 실태를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는 노동법 및 자신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FGI에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연구자의 설명을 통해 특정 행위들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인지하고 본인의 경험에 대해 설명을 하는 친구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는 일하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노동법 및 노동인권에 대해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V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방안

제1절 정책 기본 방향

제2절 정책 목표

제3절 세부 정책 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방안

제1절 정책 기본 방향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젠더, 학교 진학 여부, 가구소득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년의 노동 경험이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젠더를 비롯한 청소년/년들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고려한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지하고 있는 사실과 동일하게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성 청소년들과는 다른 청소년들만의 특수한 경험, 그리고 청소년 내부에서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경험이 상이하게 구성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부재, 십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미흡, 남성 청소년과 청소년의 차이, 그리고 청소년 내부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및 지원방안의 부재가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서울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감수성이 있는 서울, 젠더감수성이 있는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다음의 두 가지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십대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십대 청소년

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노동 조건이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십대'를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사회구성원 전반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998년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청소년/년 정책의 방향을 “보호, 선도, 교화에서 자율, 참여, 육성”으로 바꾸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청소년/년들의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문화적 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조한혜정, 2002: 282). 그 후 청소년/년의 주체성과 인권, 참여 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수 없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청소년/년들을 ‘보호’의 존재로 보거나 학업이 우선인 학교에 매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십대를 노동자로 바라보는 인식은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래의 하인호(2014: 9)의 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청소년노동자라는 말보다 ‘알바생’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데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우선시하고 ‘노동자’라는 신분은 부차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도 끊임없이 생계수단과 용돈벌이를 구분하여 답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청소년을 노동자보다는 ‘소비주체’ 관심과 자원을 배치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방기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하인호, 2014: 9).

앞의 II 장 아르바이트 개념에서도 논하였지만, 십대들의 노동을 주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것에도 우리 사회가 십대 노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청소년의 노동을 ‘학업을 방기한’,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기 힘들며 청소년의 노동인권도 가시화되기 힘들다. 가령 손님이 가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부당한

노동조건을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거나 부당행위를 당해도 법적·제도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소년의 상당 비율은 이미 노동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살고 있다(하인호, 2014: 9). 따라서 청소년 또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년 노동과 그 지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필요하다.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 내부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과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십대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정해숙·오은진·최자은, 2011), 청소년 건강(김동식·김영택, 2012), 가출십대여성(변혜정·김효정·이진영, 2012) 등 세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십대 관련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며, 앞의 정책현황 분석에도 드러나듯이 십대 청소년/년 노동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남성 청소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성폭력, 감정노동, 일자리 부족 등의 심각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남성 청소년에 비해 더욱 열악한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 또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성 청소년과 청소년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남성 청소년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청소년의 노동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십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계, 십대라는 연령적 제약, 여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는 젠더뿐만 아니라 가출여부, 학교특성 및 학교진학 여부, 가구특성 등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고려한 정책 입안과 실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까지 확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책 비전과 정책 기본 방향을 토대로 ① ‘십대 여성 노동’에 대

한 인식 개선, ②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 ③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각 정책 목표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V-1>과 같다. 정책 목표 및 세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비전	“노동감수성이 있는 서울, 젠더감수성이 있는 서울”		
기본방향	청소년 노동 존중	성인지적 관점 제고	
정책목표 및 세부 정책과제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중심’ 정책 설계 •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 • 채용공고 모니터링 강화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선(성별 분리 통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 협의체 구성 •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 강화 • 노동관련기구 BI개발 및 확산

■ 그림 V-1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추진체계

한편 본 연구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을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와 그 지원 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의 주 대상 역시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이 열악한 것의 상당부분은 청소년/년 노동 자체의 열악성과 청소년/년 노동 및 그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기본 방향과 정책 목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 대상 노동정책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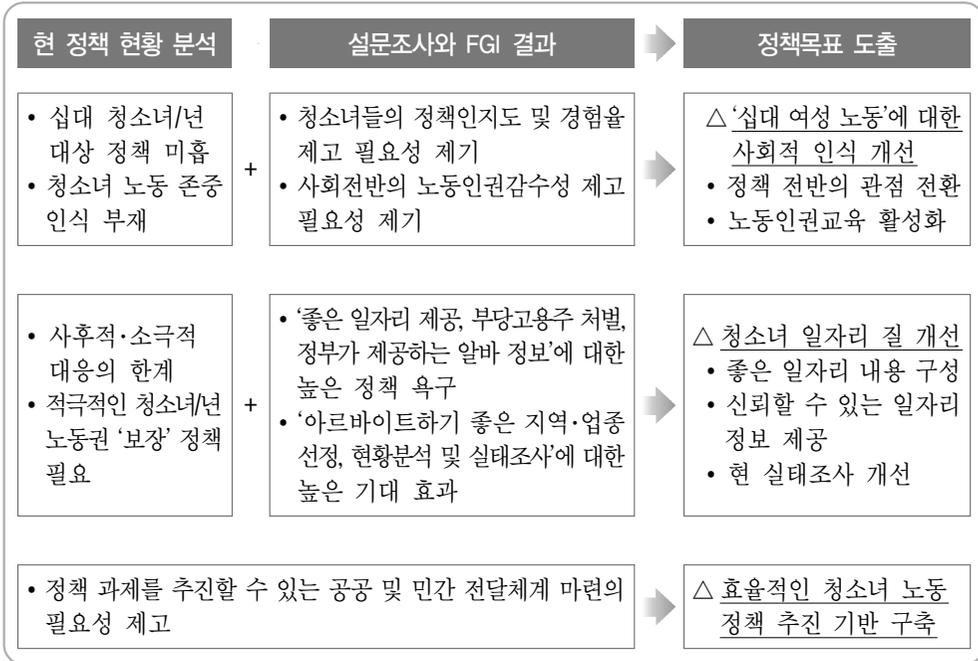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한 정책의 세 가지 정책 목표는 첫째,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둘째,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 셋째,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 목표는 II장의 4절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 IV장의 설문조사와 FGI의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정책지원에 대한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십대에 초점을 둔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미흡, 청소년/년 노동 존중 관점의 부재,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부재 등의 현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울시 청소년들의 낮은 정책 인지도 및 경험율, 스스로의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되었다. 따라서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지금까지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전반의 관점을 전환하고 사회 전반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은 부당노동에 대한 사후적·소극적 대응의 한계와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현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과 ‘좋은 일자리 제공’, ‘부당고용주 처벌 강화’, ‘정부의 아르바이트 정보제공과 알선’에 대해 청소년들의 욕구가 높은 것,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의 기대 효과가 높은 것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은 청소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일자리 정보의 신뢰성 제고, 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선과 관련된 정책 과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십대 청소년/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며,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젠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부서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정책 과제들을 논하였다.



■ 그림 V-2 ■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목표 도출 체계

제3절 세부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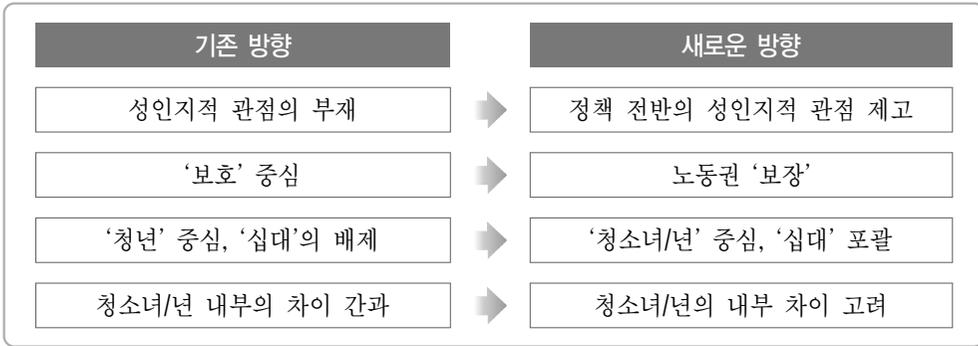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각 정책목표 별로 필요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책과제의 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부 정책과제가 앞에서 논의한 정책 기본방향인 ‘청소년 노동 존중하는 시각’과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내용을 구성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십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 ‘청소년 중심(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청소년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청소년의 삶과 노동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끊임없이 제도권 내부로 통합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이들의 활동 및 노동에 대한 인식이 간과되어왔는데(추주희, 2009: 107), 이는 앞의 정책 현황 분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앞의 II장의 4절 정책현황 분석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살펴보면, ‘보호’ 중심, 청년으로 명명되면서 ‘십대’의 배제, 청소년/년의 노동권 보장이 주된 정책 목표가 되지 못하는 상황, 정책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 부재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수요자 즉, “십대 청소년”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대 청소년/년의 아르바이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또한 현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초 하에 아래의 <그림 V-3>과 같이 기존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



■ 그림 V-3 ■ ‘청소년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성맹적 정책에서 성인지적 정책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없는 남성 청소년과는 다른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의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에서는 젠더 간 노동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정책대상자의 개별 위치와 그에 따른 상이한 욕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방안은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젠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욕구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년의 젠더를 고려한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이후에 정책 과제에서 논하는 노동인권교육에 젠더감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고 조사 내용에 성희롱, 감정노동, 외모 차별 등 여성이 경험하는 특수한 노동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포함시키는 것 등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가 아닌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동권 ‘보장’으로**

정책의 주 대상으로 청소년/년을 상징한 정부의 종합계획 및 각종 세부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년 ‘보호’ 또는 청소년/년 근로‘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

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년의 노동이 주된 정책 의제로 다뤄지기 보다는 유행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년 '보호'의 차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II장 4절에서 논의한 바대로 첫째, 청소년을 노동하는 주체로 바라보고 스스로 노동권 보장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 사회 구성원이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견지해야 한다는 측면의 논의를 매우 축소시켰다. 그리고 둘째, 청소년/년 노동에 대해 보호의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일부 정책의 경우, 청소년/년의 노동인권 보장이 주된 정책 목표가 아닌 부차적인 기대효과로 다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령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경우 "퇴직 전문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감시, 적발토록 함으로써 퇴직 장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활용"이라고 사업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 청소년/년 노동인권 보장보다 '퇴직 인력의 사회참여와 활용 확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은 대부분 부당 대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당 대우를 당한 청소년/년이 신고를 하고, 그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나, 위반 사례들을 찾아내고 그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부당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부당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시각을 넘어서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청소년 노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을 마련하여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든지 하는 등 이후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십대'가 배제된 정책에서 '십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등을 시작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에서도 비

교적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조차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 중 ‘십대 청소년/년’에 초점을 둔 정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이후에 논의될 청소년/년 이슈와 노동 이슈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정책 부서가 없다는 것과도 연결되는 한계이다. 여기에 젠더관점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더욱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젠더 관점에서의 십대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을 현 구조에서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여 십대를 기존 아르바이트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되 십대의 특수성은 명확하게 반영한, 그리고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정책 대상이 십대를 포괄하는 것 외에도 십대 청소년을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시키고, 사업 및 정책 시행 주체로서 참여시키는 것 또한 ‘청소년 중심’ 정책 설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상담 활성화 방안 모색⁶³⁾,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등이 정책 수요자를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노동복지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기능 확대와 관련하여 또래 상담 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 청소년/년의 내부 차이를 간과한 정책에서 청소년/년의 내부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젠더 간 노동 경험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교 진학 여부, 가구의 경제 소득, 업종 등에 따라 노동 경험이 다르게 구성되고 의미화 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에서도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차이는 물론, 청소년 내부의 차이를 고려한 청소년의 개별 위치에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장시간 아르바이트 관행과 부당노동 피해의 심각성, 현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6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또래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2: 52),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된 ‘안심알마신고센터’의 경우에도 첫 도입 모델이 교내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담 체계 및 홍보 활동 체계를 꾸리는 등의 또래상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지원 체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더욱 열악하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위층인 청소년에 비해 하위층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그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별 위치를 고려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아르바이트 실태가 열악한 집단의 특성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시, 심대를 일정 비율 할당하고, 그 속에 청소년이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하며, 연령, 계층, 학교유형 등을 별도로 조사하여 청소년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상이한 정책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 욕구는 2.8%에 불과하여 설문지에 제시된 11개 정책 방안 중 하위 4번째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확대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선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은 다음의 필요성 때문이다.

첫째,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FGI를 통해 청소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준수 강제’를 일부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보다 FGI에서 부당노동 피해의 빈번함과 그 심각성이 드러난 것은 FGI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부당노동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몇몇 FGI 참여자들은 FGI를 통해 몰랐던 노동관련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

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노동인권 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권리 보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와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해서는 일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업주, 현재 일을 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언젠가는 일을 하게 될 청소년, 학교 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정책인지도 및 경험율이 너무 낮게 나타났는데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현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 정책에 대해 홍보하는 방식은 책자나 리플렛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홍보 및 매뉴얼 보급, 캠페인 개최는 청소년들이 다른 정책에 비해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캠페인이나 정책 홍보 및 매뉴얼 보급은 한계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에 대한 감수성 제고와 함께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증가시켜 청소년에게는 스스로 본인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교과과정 에의 포함,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를 주장,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2014년 7월 25일 은수미의원 대표 발의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에 적극 동의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현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정책 방안 에 대해 논하였다.

(1) 노동인권교육 내용 개선

현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가 주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에 대한 논의도 없으며, 실제 젠더 관점이 포함된 교육이 행해지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현재의 대집단 교육과 일회성 교육 체계에서는 교육 내용이 노동법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업주 대상 교육에서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노동법을 어기지 않으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내용은 저마다의 특수한 상황에서 부당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이 스스로 이에 저항하며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젠더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개발 및 포함: 청소년 노동 경험의 성별화된 특성과 청소년 당사자, 사업주, 학교 선생님 등 관계자들의 젠더 의식을 토대로 특화된 젠더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방법을 고안한다.
- 노동인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내용 포함⁶⁴: 노동의 가치, 국제인권기준, 국제노동기준,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의 목록과 내용,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사적 노력, 노동인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인물과 주요 운동사, 구조조정,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 감시 등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그 파괴적 결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하고 있는 인물과 단체, 기관 등 노동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청소년들이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동인권 옹호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포함⁶⁵: 노동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노동자의 고통과 의견에 귀 기울이는 능력, 노동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질서나 관계, 구조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 노동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존하는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

64) 하인호(2014: 17-18)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5.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pp. 260-261”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5) 상동

을 인식하고 존중 속에서 연대할 수 있는 능력,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하인호, 2014: 17)이 되어야 한다.

(2) 노동인권교육 방식 개선

현재 서울시 노동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방식(서울시 노동정책과, 2014c;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014b)을 살펴보면, 1교시~2교시(50분~100분)까지 학교마다 강의 시간도 제각각이며 회당 50명 이내의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참여 학교 명단을 보면 50명 이상의 집단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동영상으로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일회성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노동법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만 그칠 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 전반의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에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교육 수강생들이 자신들의 경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논의 병행, 교육활동의 결과로서 기념 행사나 캠페인 기획 등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2.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

앞에서 논의한 첫 번째 정책목표가 청소년 노동을 둘러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노동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청소년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녀들에게 또래 남성과는 다르게 십대 여성으로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게 하는 주된 요인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청소녀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역시 ‘안전한 일자리 제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일자리 부족 이면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십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강도 섹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 역시 청소녀들보다 남성 청소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녀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은 십대 노동 현상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녀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녀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1) 청소녀를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 마련

II 장의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정부의 청소녀/년 일자리 환경 개선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강제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청소녀/년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무, 좀 더 나아가 경우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청소녀/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기준법」 준수만을 촉구하는 소극적 차원의 노력에서 벗어나 청소녀/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한 청소녀/년 일자리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사업주, 정부의 책무 외에 청소녀/년 노동자를 존중하기 위한 고객(좀 더 넓게는 ‘시민’)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청소녀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인에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폭력·폭언 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고객과 청소녀/년 노동자가 상호존중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제해야 할 사항과 「근로기준법」 내용을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청소녀 노동권리를 명시하고, 청소녀 노동자 존중을 위한 사업주와 고객(시민)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녀를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을 제시하였다.

한편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사업장이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난립과 과다경쟁, 잦은 휴·폐업이 열악한 근로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김원정, 2012)⁶⁶⁾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사업주 책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영업자들의 적정 수익 창출을 방해하는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⁶⁷⁾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 사업장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을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사업장이 적절한 수익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일자리 기준선 마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세부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연구 과제 및 정책 과제로 제안한다.

(1)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 내용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은 내용은 크게 현행 「근로기준법」 내용 그대로 준수가 필요한 사항과 「근로기준법」 내용에 문제가 있어 해당 내용을 개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그 외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근로기준법 준수 강제 사항

먼저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제해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준수, 휴일·휴가 및 휴게시간 보장,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과 적용 등이다. 단 최저임금 준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FGI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으로 적용되거나 수습사원을 명목으로

66) 가령 마포구에서 논의되었던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의 경우, 조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소규모 음식점들의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하여 불안정한 경영 등을 해결하고, 식당 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 노동자의 노동환경 환경,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먹거리 보장 등을 위해 지역사회 전 구성원이 노력한다는 취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2013년 12월 30일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6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알바노조에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9월 24일자 기사).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시급이 낮은 것이 청소년의 장시간 근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좋은 일자리 제공’과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만 가령 일부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수준(2015년 시급 7,150원)⁶⁸⁾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에 개정을 하여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에 적용해야 하는 내용들로는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 개정,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깎기’ 근절 내용 포함이 필요하며, 이렇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아래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상당부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게 권고된 사항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 근로자에 대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도 2013년 9월 23일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에 대해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2014년 10월 6일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 중으로, 이에 대한 지속한 논의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68)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5년도 생활임금을 월149만5천원으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를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150원으로, 지난해 생활임금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최저임금(시급 5천580원)보다 28% 높은 금액이다.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연소자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주 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과 비교하여,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 연소자에 대한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5). 현재 청소년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것은 사업주의 요구도 있으나, 시급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 논의와 연결하여 청소년 임금의 상승과 함께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연장근로는 1주 5시간으로 법을 개정, 청소년들에게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FGI 조사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급된 임금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나 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한 임금액과 실 지급 임금액이 달라도 항의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업주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처음에 구두로 계약한 사항에 근거하여 임의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간급 외에 상여금, 기타급여(제수당), 임금지급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활발하게 보급,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적 강제성을 갖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와 그에 기초한 임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그 수당, 상여금 등을 명시한 내용의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깍기’ 근절

청소년 부당노동 피해 중 임금 관련 피해를 제외하면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

및 강제 조퇴, 결근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꺾기’ 피해가 14.2% 가장 많으며,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27.7%로 그 피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의 꺾기의 심각성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오마이뉴스, 2014년 5월 14일; KBS 뉴스, 2014년 12월 4일). ‘꺾기’는 사업주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7). 따라서 ‘꺾기’를 규제하고 이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표 V-3>과 같이 상시 4명 이사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청소년의 절반 이상(53.7%)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조항 예외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일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특히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6). 따라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청소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 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영세 사업장의 실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③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조성⁶⁹⁾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차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차원에서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청소년을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의 내용 마련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논의할 내용은 청소년 노동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청소년 노동자, 고객, 사업주가 상호 간에 노력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이다.

□ 사업장 내 (성)폭력·폭언 예방 문화 조성

앞의 III장의 분석 결과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의 성폭력·폭언 피해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조사와 FGI에서도 십대 여성으로 일하는 것이 힘

69) 이 내용의 일부는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내용과 김원정 (2012)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든 요인으로 성폭력·폭언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남성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유독 강요되는 외모 및 복장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더하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외모 및 복장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성)폭력·폭언 예방을 위한 문화가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후 논의하겠지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 내 성희롱, (성)폭력·폭언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그 내용이 일부가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청소년 노동자 포함 사업장 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폭언 예방 고지문 부착,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폭언 발생 시 사업주의 신속한 대응 및 청소년 노동자의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노동자와 고객 간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감정노동 실태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9.9%는 감정노동을 경험한 적 있으며, 38.8%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감정노동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노동의 요인은 대부분 무시당할 때, 무조건 친절해야 할 때, 매너없는 손님을 대할 때 등 고용주나 고객의 청소년 노동자를 하대하는 태도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주, 고객, 청소년 노동자 간의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감정노동 실태에 대해 광범위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노동자와 고객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의 (성)폭력·폭언 예방과 유사하게 그 내용의 일부가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고객의 부당한 요구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를 나무라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이수 및 인식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청소녀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들을 사업장 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운영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고객에게도 청소녀 노동자를 존중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영업 개시 및 마감 준비시간 운영

이 내용은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2년 서울시 마포구 조례⁷⁰⁾ 제정 논의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종사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과 분리하고 영업시간의 방문한 고객으로 인해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게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어 있다(김원정, 2012: 26). FGI 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보다 먼저 도착하여 준비시간을 거치고, 근로시간 후에는 매장 정리 시간을 거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었다. 따라서 영업 개시 및 마감 준비시간에 대해 일정 정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업장 내외부에 고지하여 고객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표 V-2】 청소녀를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안)

- 청소녀 노동자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청소녀 노동자에게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교부
- 청소녀 노동자에게 적정 근로시간 보장: 1일 5시간, 1주 35시간
- 청소녀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및 수당 지급: 최저임금 이상¹⁾의 급여 지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 청소녀 노동자에게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금 지급
- 청소녀 노동자에게 휴일·휴가 및 휴게시간 보장
- 청소녀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과 적용
- ‘껌기’ 근절 및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 사업장 내 (성)폭력·폭언 예방 문화 조성
- 청소녀 노동자와 고객 간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
- 영업 개시 및 마감 준비시간 운영 및 임금 지급

주: 1) 최저임금은 추후 생활임금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함.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되었지만 조례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2) 추진방안

청소녀를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녀를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체를 꾸리고 그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기준선 이행의 당사자인 청소녀 노동자가 반드시 논의 주체로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녀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논의 주체로 포함하여 청소녀 일자리 질을 개선하되 실현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의 난립과 그로 인한 운영 나,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청소녀를 위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 준수를 위해 필요한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에서는 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제19조(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 ①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표지판 교부
 2.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 우선 지원
 3. 홍보책자 발간, 시 홈페이지, 시보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중 「식품위생법」 제89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련된 지원 방안을 토대로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을 확산시켜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거나,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10개 프랜차이즈기업과 청년 단체, 관련 사용자협회와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 준수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FGI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알바중개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실제 대표적인 알바중개사이트 중 하나인 알바천국의 경우 2014년 10월 평균 채용공고 게재건수가 298,056건, 이력서 게재건수가 106,483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아르바이트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청소년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포함하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알바중개사이트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알바중개사이트의 구인 등록 양식을 「근로기준법」의 기본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를 구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대표적 알바중개사이트인 알바천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채용공고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급여 협의’로는 등록이 불가하도록 하여 급여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다(최인녕, 2012: 73). 더불어 채용공고 등록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미체불, 근로자의 인격 존중 등을 약속하는 공고에 G마크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최인녕, 2012: 74). 그러나 이는 매우 최소한의 조치이며, 일부 극소수 사업장에만 국한된 강제성이 없는 조치이다.

아래의 <그림 V-4>는 한 알바중개사이트를 구인정보이다. 해당 구인 정보를 보면, 지원자격이나 근무조건, 급여 등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휴일·휴가 및 휴게시간 보장,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과 적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구인정보 등록 시 「근로기준법」의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내용 인지도 제고 및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구직자 역시 법 내용 및 근로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앞의 ‘참 좋은’ 일자리 기준선이 마련되면 근로기준법 기본사항 준수가 아닌 ‘참 좋은’ 일

자리 기준선의 내용을 준수하였는지를 체크하고, 구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자격	근무조건
경력 무관(신입+경력)	근무기간 1개월~3개월
성별 성별무관	근무요일 주5일
연령 20세(1995년생) ~ 29세(1986년생)	근무시간 11:00 ~ 22:00
학력 학력무관	복리후생 식비(식사) 지원
	우대사항 동종업계 경력자, 장기근무 가능자, 인근거주자, 원통기면허 소지자, 군필자
모집내용	근무지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10-3 지도 상세보기
모집직종 배달 > 원동기배달, 피자배달 패스트푸드 > 카운터, 주방, 조리, 배달, 피자	인근지하철 신공 2번출구도보8분
고용형태 아르바이트	급여 주급 400,000원
모집인원 5명	급여계산기 최저시급 5,210원
기타사항 초보가능, 대학재학생 가능, 대학휴학생 가능, 직장인 가능	

그림 V-4 알바중개사이트 구인정보 예시

둘째, 구인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근로기준법의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알바천국의 경우 ‘구직자 보호10계명’이라는 명칭 하에 사전 등록 심사제, 24시간 공고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이나 허위 공고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등록 제한제와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최인녕, 2013: 73-75). 그 자세한 내용은 <표 V-3>에 논하였다. 이러한 알바천국의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확산하고, 일부 알바중개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체 구인·구직 중개사이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앞의 ‘청소년 중심’ 정책 설계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인 청소년을 사업 및 정책 시행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구인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V-3 】 알바천국의 구인정보 모니터링 관련 정책 내용

구분	내용
사전 등록 심사제	부실공고 원천적 차단, 엄격한 심사 기준을 세워 등록되는 모든 공고를 심사하여 수정, 삭제하고 있음. 필요에 따라 이용제한,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함.
24시간 공고 필터링 시스템	불량공고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 특히 청소년 채용관 공고는 직접 검수하는 인력을 강화해 유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함.
채용공고 등록 제한제	구인을 가장해 물건 강매, 대출유도, 다단계 판매, 사행성 유해업소 등 불법이거나 위험직종, 불건전 업소의 공고등록을 원천적 차단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허위공고 신고가 들어온 업체는 공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노동 관련법 위반, 부당 대우 등으로 신고된 업체는 즉각 삭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자료: 최인영(2013: 73-75) 내용을 토대로 구성

3) 현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선: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구축

성인지적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추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별 아르바이트 특성과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는 성별 분리 통계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십대 중 청소년의 비율을 보여주거나, 업종 별 남녀 분포 차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젠더 간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설계 시 젠더 간 차이와 가구소득, 거주지, 학교 진학 여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내용과 조사 대상을 구성해야 한다.

- 조사대상: 십대 청소년/년이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구성, 청소년/년 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년, 청소년이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구성
- 조사내용: 감정노동 실태, 성희롱·성폭력 실태, 노동시장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외모차별, 복장규제, 성별분업 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 포함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젠더, 연령, 계급, 지역 등을 고려하여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노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특정 청소년/년 집단(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년 등)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함께 병행⁷¹⁾

3. 효율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 추진 기반 구축

1)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 협의체 구성

(1) 서울시 관련부서 간 협의체 구성

서울시의 경우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이 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은 노동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표 V-4) 참조). 여성가족정책실 내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년 노동인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제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청소년/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일회성의 사업장 관리·감독을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

표 V-4 | 2014년 서울시 주요 부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사업 현황 및 계획

구분	내용	담당부서
서울시 아르바이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지원 • 아르바이트 청년 무료건강검진 실시 • 알바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센터 설치·운영 •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취약계층 노동인식 개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 •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홍보, 안전 수칙 매뉴얼 보급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71) 서울시의 경우 2014년 실태조사부터는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할 것을 계획에 포함, 현재 진행중인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담당부서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관계부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자료: 서울시 각 부서의 업무자료 참조하여 재구성

이처럼 청소년/년의 특성에 맞춘 아르바이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명확히 없고 청소년/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청년 아르바이트 또는 취약계층의 노동으로 한데 묶어 접근을 하다 보니 십대 청소년/년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젠더 관점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년 이슈, 노동이슈, 젠더 이슈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십대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의 일자리정책과와 노동정책과 외에 여성가족정책실 내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이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내 관련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외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구성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에 서울시 교육감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이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단독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 강화

앞서 논의한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추진 협의체 구성’은 공공부문에서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논의하는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 강화’는 민간부문⁷²⁾ 및 지역사회 차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에 각 1개씩 총 4개의 노동복지센터⁷³⁾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광역기구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할 계획에 있다. 4개의 노동복지센터는 개소 이래 청소년/년 노동인권교육, 노동관련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주도로 4개의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2014년 8월~12월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⁷⁴⁾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인력의 배치 없이 설립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는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에게 업무 과중을 유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도 어렵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역시 한시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청년혁신일자리 창출의 일환이자,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대상에서 ‘십대 청소년/년’이 배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 4개의 노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년 아르바이트 관련 사업은 4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주변 자치구까지 포괄하여 권역기구로서 지역사회에 기

72)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민·관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73) 노동복지센터라는 공통된 정책 용어를 사용하지만 각 지역마다 센터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양하다.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는 근로자복지센터가 정식 명칭이며, 노원구는 노동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74) 근무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 서대문구 2명, 구로구, 성동구, 노원구 각 1명으로 총 5명 선발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 참여 및 상담, 노동법 교육, 캠페인, 실태조사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반한 정책을 추진하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4개 노동복지센터와 개소 예정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녀/년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청소녀/년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관련 담당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은 십대 청소녀/년들을 고용하여 또래 상담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FGI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토론회⁷⁵⁾에서 드러났듯이 성인들에 의해 근로 관리·감독 및 아르바이트 상담은 상담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청소녀로 하여금 어른들에 의해 아르바이트가 문제화되고 타자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에 또래 상담을 통해 청소녀의 입장에서 청소녀가 직접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효과 제고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또래알바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현재 또래상담을 활용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

[사례 1] 성동근로복지센터 청소녀 알바 지킴이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녀를 대상으로 모집
- 활동기간: 2014년 5월~11월 한시적 운영
- 활동 내용 : 본인 혹은 친구들의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조사), 매월 1차례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보호 캠페인, 주변 친구들에게 홍보물 배포 등 일상적 홍보활동
- 활동수당 : 모니터링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증 또는 문화상품권 지급(단, 문화상품권은 1인당 매 월 4건까지)

[사례 2] 고양시청소녀알바센터 또래알바상담사

- 분기별로 10명씩 모집하여 활동
- 한달 간 기본교육 이수(약 4회), 두달간 상담 활동
- 활동수당: 기본 교육 이수 후 5210원
- 주요활동: 또래 알바 상담, 또래 알바 상담 교육

75)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제 4회 정책토론회. 십대 여성들의 ‘알바’ 이야기, 5126?!. 2014년 11월 22일 개최

3) 노동관련기구 BI개발 및 확산

이는 여러 노동관련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노동관련단체 및 청소년/년 관련 단체 등 청소년/년 노동 이슈를 다루는 기구의 통합 BI를 개발하여 건물 외벽 및 간판에 달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든 청소년들이 해당 마크를 보고 부당노동 피해 신고 및 노동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관우·남진열. 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2): 149-168.
- 고용노동부. 2014.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추진방안』
-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 고용노동부·중앙대산학협력단. 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 고용노동부.
- 구효진·최진선. 2006.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및 근로의식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4): 39-71.
- 관계부처합동. 2012a.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관계부처합동. 2012b.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김덕순·이명숙. 200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학생생활연구』 7: 33-57.
- 김동식·김영택. 201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성언. 201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비행 간 관계의 검토”. 『경찰학논총』 7(2): 431-458.
- 김옥순. 2006. “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은 유효(가능)한가?”,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자료집,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pp. 39-50.
- 김원정. 2012.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만들기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pp. 7-39.
- 김예성. 2006.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10(4): 553-575.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은정. 2012. “저소득층 십대 여성의 성매매 유입/재유입을 통한 사회화 과정 분석: ‘구조’와
‘행위’간 이중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2: 271-320.
- 김정현. 2009.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청소년복지연구』,
11(3): 69-98.
-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7-234.
- 김혜진. 2009. “십대여성 근로환경 실태조사보고 및 지원프로그램”.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
센터 2009 늘푸른 포럼 자료집. pp. 7-104.
- 문성호. 2003. “학생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3):
83-103.
- 민가영. 2009.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에 따른 십대 여성의 성적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5(2): 5-35.

- 박용수. 2013.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 보호에 대한 실태와 대책”. 국회인권포럼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자료집.
- 변혜정. 2006. “10대여성의 삶 읽기를 위한 성인지적 접근-10대 여성의 가출의 의미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자료집,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pp. 5-38.
- 변혜정·김효정·이진영. 2012. “가출십대여성 실태조사-서울·경기지역 쉼터거주자를 중심으로”. 십대여성의 안전·건강·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변혜정·민가영. 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5-37.
- 서울시. 2013.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청소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 서울시. 2014.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
- 성지혜. 2010. “1980년대 청소년 노동경험 사례연구: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7(2): 43-76.
- 신경림·고명숙·공병혜·김경선·김미영·김은하·노승욱·노영희·양진향·조명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육혜련. 2014.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1): 327-353.
- 윤선미·이나영. 2012. “청소년의 가출 후 경험 연구: 경계들 사이의 생존 지대를 찾아”, 『한국여성학』 28(4): 119-171.
- 윤희식. 2013.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근로보호 정책현황”. 국회인권포럼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자료집.
- 이숙진·한설아. 2002. 『인천 10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인철발전연구원.
- 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요시대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무송. 2013.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부 정책 방향”. 국회인권포럼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자료집
- 임영식·정경은·김윤나. 2011. “비진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와 정책 방안”. 『청소년학연구』 18(2): 583-608.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경숙·노재봉. 2003.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방연. 2003. 『실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은·이혜경, 200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59-79.

- 정해숙·오은진·최자은. 201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 자료집.
- 추주희. 2009. “가출 청소년의 삶과 노동”. 현대사회과학연구
- 최인녕. 201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토론회 토론문”. 황우여 의원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토론회 자료집. 국회인권포럼. pp. 72~82.
- 최혜영·백유경·김태훈·최상준, 2012. 대구, 경북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로현황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인지수준 평가
- 하인호. 2012.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및 대책 토론”.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대책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pp. 35-54.
- 하인호. 201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실과 민주노총의 과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샵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경혜. 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1(2): 153-180.
- 황나영·이자형. 2011. “전문계 고등학교 여학생 아르바이트의 경험과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4(3): 233-260.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6.17.),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6.17~7.31)운영-”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8.1.),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조건 집중감독”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3.31.), “청소년의 소중한 근로권익을 지켜드립니다.”
- 노동부 보도자료(2005.6.20.), “범정부적인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추진”
- 서울시 보도자료(2013.9.17.),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발간”
- 서울시 보도자료(2013.9.23.),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위한 권리장전 발표”
- 서울시 보도자료(2014.4.11.), “임금체불·부당대우·계약위반 없는 알바하기 좋은 서울 조성”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8.5.), “여름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185건 적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7.5.),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시범 실시”

<신문 및 뉴스 기사>

- 서울신문. “안심알바신고센터 ‘유명무실’-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대책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2012년 10월 8일.

아시아뉴스통신.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 2013년 9월 24일.
오마이뉴스. “‘세계 1위’ 맥도날드의 ‘겪기’를 아시나요 - 약속된 근로시간 매출에 따라 변경... 비정규직 판치는 패스트푸드 노동시장”. 2014년 5월 14일.
KBS 뉴스. “인건비 줄이려 근무시간 ‘겪기’ 꼼수”. 2014년 12월 4일 방영.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wm1388/22002618382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4.7.23. “근로감독 위반 업체는 수두룩, 근로감독관은 모자라...”(<http://www.opengirok.or.kr/3936>)

Abstract

Study on part-time employment of female youth in Seoul and policy options

Kim, Song Yi
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Depart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art-time employment among female youth, discerning the gendered environments and conditions they experience in the job market, and proposes the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these youth. A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revealed extremely poor working conditions for female youth, conditions which differ from their male counterparts, and differ among female youth themselves depending on their social class.

Therefore, the study asserts that any policy aimed at supporting female youth engaged in part-time work needs to take into account gendered elements and other differences. The policy tasks it suggests include designing specific support initiatives focused on female youth, improv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labor rights education, establishing of baseline for female youth's decent jobs,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employment notices, establishing gender statistics about youth labor, and enhancing the dissemination of the female youth labor policy.

부 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D					
----	--	--	--	--	--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여성 및 가족과 영유아 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녀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녀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3세~18세 미만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 02-810-5069(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 2팀) 또는
 ☎ 02-3218-9639(현대리서치연구소 백재현 연구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문 작성 방법>

1.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숫자를 응답칸 □ 안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2. 또는,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응답의 보기번호 앞 □ 안에 체크해 주십시오.

<p>SQ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p>	<p>지난 1년간(2013년 7월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상기 기간 동안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1회(1일)만 한 경우는 '3)해본 경험이 없다'로 응답해주세요.)</p> <p>1) 현재 하고 있다 2) 해본 경험이 있다 3) 해본 경험이 없다 (☞ 설문 중단)</p>	
<p>SQ2. 출생년월</p>	<p>_____년 _____월 (☞ 1996~2001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 설문중단)</p>	
<p>SQ3. 성별</p>	<p>1) 여 2) 남 (☞ 설문중단)</p>	
<p>SQ4. 학력</p>	<p>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p> <p>1)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2) 중학교 3) 일반고등학교 4) 특수목적고등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 6) 자율고등학교 8) 기타 9) 초등학교 또는 대학교 (☞ 설문 중단)</p>	
<p>SQ5. 거주지 (주소)</p>	<p>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p> <p>1) 서울시 2) 그 외 지역 (☞ 설문 중단)</p>	
<p>SQ5-1. 거주지 (상세)</p>	<p>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구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시고 동은 직접 적어주세요.</p> <p>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구 25) 중랑구</p> <p>_____ 동</p>	

문4.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일당제 등 비정기적인 근무형태인 경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계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 1년 이상 6) 기타 (_____)

문5.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24시간제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 14시 0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하루 평균 4시간 30분)

- 1)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하루 평균 시간 분
2) 주당 일 근무, 일주일 시간

문6.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에서는 별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있나요?

(※ 별도로 부여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1) 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있다 2) 없다

문7.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에서 급여는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급여형태를 선택해주시고 급여액은 직접 적어주십시오.

- 1) 시급제 (시간당) 원 2) 일당제 (일) 원
3) 주급제 (주) 원 4) 월급제 (월) 원
5) 실적제 (한 건당) 원 6) 기타 (_____) 원

문7-1. 한 달 기준, 아르바이트를 통해 총 얼마를 벌니까? (※만원단위로 기입)

한 달 평균 만원

문11-1. [문11-d) 성희롱에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종류의 성희롱이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01)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
- 02) 술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 03)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
- 04) 가슴·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
- 05) 안마나 애무 강요
- 06)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함
- 07)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에 대한 의도적 유포
- 0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줌
- 09)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 노출·애무
- 10) 성적인 관계 강요
- 11)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1-2. [문11-d) 성희롱에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1)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
- 2) 참고 계속 일했다
- 3)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
- 4)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5)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6) 교사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 7) 상담소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 8)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
- 9) 기타 (_____)

문1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감정노동이란 직업 특성상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규범 등에 의해 요구되는 얼굴 표정,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1) 늘 경험한다 2) 종종 경험한다 3) 어쩌다 한두 번 경험한다 4) 경험한 적 없다

문13. 몸이 아닌 ‘감정적으로’ 힘이 들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 13-1로)

2) 없다 (☞ 문 14로)

문13-1. 감정의 문제로 퇴사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예: 알바생을 우습게 아는 손님,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자괴감 등)

문1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성이 아닌 십대 ‘여성’이어서 더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 14-1로)

2) 없다 (☞ 문 15로)

문14-1. [문14에서 '1) 있다'에 응답한 경우] 있다면 무엇인지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01)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움
- 02) (성)폭력, 폭언을 당할 위험이 높음
- 03) 남성 동료에 비해 임금이 낮음
- 04) 점주, 손님, 동료의 남녀 차별적 언행
- 05) 남성에 비해 외모, 복장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함
- 06) 남성에 비해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07) 남성에 비해 소비·퇴폐적 문화(성매매 포함)에 빠질 위험이 높음
- 08) 십대 여성 알바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 09) 남성에 비해 사업주 부당행위를 경험할 위험이 높음
- 1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바에 대해 솔직히 응답해 주십시오.

문15. 아르바이트를 앞으로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 15-1로)

2) 없다 (☞ 문 15-2로)

문15-1. [문15에서 '1) 있다'에 응답한 경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르바이트로 경험
했던 분야의 직업을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1) 네

2) 아니오

문15-2. [문15에서 '2) 없다'에 응답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부진한 학교 성적

2) 고용주(회사)의 부당 대우

3) 시간 부족

4) 주변(가족, 선생님 등)의 반대

5)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맞지 않음

6) 건강상의 문제, 육체적 피로

7) 장래 경력에 도움되지 않음

8) 기타 (_____)

문16.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a) 나는 아르바이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text"/>
b)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text"/>
c) 돈과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text"/>
d)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text"/>

아르바이트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방안 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와 생각하는 바에 대해 솔직히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아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당 정책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 모르시는 정책에 대해서도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 효과 정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인지·경험여부			정책 효과					
	① 경험 해봄	② 알고 있지만 경험 없음	③ 해당 정책 모름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별로 효과 없음	③ 보통	④ 다소 효과 있음	⑤ 매우 효과 있음	
a)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 안심알바신고센터, 알바신고콜센터, 모바일신고센터(법 안지키는 일터신고해~앱), 알바온라인민원상담실,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b)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 근로조건지킴이,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c)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홍보물, 매뉴얼 보급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d) 청소년 권익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개최 : 시민참여 캠페인 개최(ex. 행복한 첫 일터 만들기 캠페인)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e)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 청년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명시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도록 하여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인지·경험여부			정책 효과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경험 해봄	알고 있지만 경험 없음	해당 정책 모름	전혀 효과 없음	별로 효과 없음	보통	다소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f)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 : 서울시에서 대학가·시청주변 등을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 추후엔 특정 업종을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업종으로 조성할 예정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g) 아르바이트 청년 무료건강검진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등) 실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h) 정기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i) 사업주, 청소년, 교사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문18. 서울시나 정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십대 여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01)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인턴십 등) 02)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 03) 정부가 직접 아르바이트 정보제공과 알선 04) 안심 알바 모니터링단 운영(일자리 관리·감독 등)
- 05) 정기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실시 06) 고용주, 아르바이트 청소년,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 07)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신고센터 등의 확대 08) 아르바이트와 향후 진로(직업)와 연계 강화
- 09) 청소년 권익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10)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의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
- 11) 청소년 놀이공간·문화공간 확대 12) 기타 (_____)

문19. 문18에 제시된 내용 외에 정부에서 실시했으면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는 통계 자료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DQ1. 귀하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 1) 부모님댁 2) 친척집(조부모댁 포함) 3) 친구집 4) 자취/하숙
5) 쉼터 6) 정해진 주거지 없음 7) 기타 (_____)

DQ2. 귀하는 우리 집의 경제적 수준이 다음 주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못산다 2) 약간 못산다 3) 보통 4) 약간 잘산다 5) 매우 잘산다

DQ3. 한 달 평균 귀하의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만원단위로 기입)

(※ 용돈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

한 달 평균 만원

DQ4. 귀하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못한다 2) 약간 못한다 3) 중간 4) 약간 잘한다 5) 매우 잘한다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응답자 성명		연 락 처	
조사원 성명		조 사 일 시	2014년 ____월 ____일
조 사 장 소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2

표 1 | 아르바이트 현황 - 하루 평균 근무시간

(단위: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평균 (시간)
학력	학교 밖	0.0	14.4	76.6	9.0	6.5
	중학교	3.3	83.3	10.0	3.3	2.9
	고등학교	0.8	41.9	46.6	10.8	5.5
	기타	0.0	50.0	50.0	0.0	4.6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0.5	27.7	57.7	14.1	6.2
	중위층	1.1	43.7	47.1	8.0	5.3
	상위층	0.0	55.7	41.0	3.3	4.4
업종	편의점	0.0	29.6	59.3	11.1	6.3
	커피전문점	0.0	45.8	50.0	4.2	5.0
	음식점	0.8	42.4	46.2	10.6	5.5
	패스트푸드점	0.0	21.7	74.7	3.6	5.9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0.0	26.3	73.7	0.0	5.5
	의류점	0.0	62.5	25.0	12.5	4.3
	뷰티화장품점	0.0	66.7	33.3	0.0	4.8
	미용실	0.0	20.0	20.0	60.0	8.7
	주유소	0.0	0.0	100.0	0.0	6.6
	PC방	0.0	18.8	62.5	18.8	7.1
	호프집소주방	0.0	40.0	60.0	0.0	4.8
	스포츠서비스업	0.0	89.4	8.5	2.1	2.7
	웨딩 및 뷔페	0.0	3.8	60.4	35.8	8.8
	기타	3.7	55.6	37.0	3.7	4.2
전체		0.7	38.6	50.7	9.9	5.6

표 2 | 아르바이트 현황 - 주당 평균 근무일수

(단위: %)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 (일)
학력	학교 밖	1.8	8.1	20.7	18.9	29.7	20.7	0.0	4.3
	중학교	23.3	20.0	33.3	0.0	20.0	0.0	3.3	2.9
	고등학교	22.1	29.3	19.3	6.8	16.5	3.0	3.0	2.9
	기타	0.0	0.0	25.0	0.0	25.0	50.0	0.0	5.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13.2	22.7	20.0	12.3	19.1	9.1	3.6	3.4
	중위층	22.8	25.5	18.3	7.6	17.9	6.5	1.5	3.0
	상위층	13.1	24.6	31.1	1.6	27.9	0.0	1.6	3.1
업종	편의점	5.6	37.0	18.5	9.3	16.7	13.0	0.0	3.3
	커피전문점	12.5	29.2	25.0	0.0	29.2	0.0	4.2	3.2
	음식점	9.8	29.5	29.5	9.1	17.4	3.8	0.8	3.1
	패스트푸드점	2.4	21.7	20.5	15.7	31.3	7.2	1.2	3.8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0.0	26.3	31.6	10.5	26.3	5.3	0.0	3.5
	의류점	0.0	12.5	25.0	0.0	37.5	25.0	0.0	4.4
	뷰티화장품점	16.7	0.0	16.7	16.7	33.3	0.0	16.7	4.2
	미용실	20.0	0.0	0.0	0.0	40.0	40.0	0.0	4.6
	주유소	0.0	9.1	18.2	45.5	18.2	9.1	0.0	4.0
	PC방	6.3	0.0	31.3	12.5	25.0	25.0	0.0	4.3
	호프집소주방	20.0	0.0	0.0	20.0	60.0	0.0	0.0	4.0
	스포츠서비스업	12.8	19.1	25.5	6.4	27.7	4.3	4.3	3.5
	웨딩 및 뷔페	71.7	24.5	1.9	0.0	1.9	0.0	0.0	1.4
	기타	34.6	23.5	12.3	4.9	7.4	8.6	8.6	2.9
전체		17.8	24.3	20.4	8.8	19.5	6.8	2.4	3.2

【 표 3 】 아르바이트 현황 -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평균 (시간)
학력	학교 밖	5.4	15.3	34.2	36.9	8.1	28.0
	중학교	73.3	16.7	3.3	6.7	0.0	8.1
	고등학교	35.8	36.6	15.5	10.0	2.0	15.1
	기타	25.0	0.0	25.0	50.0	0.0	23.8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23.2	26.4	27.3	17.7	5.5	20.6
	중위층	35.7	33.8	14.1	14.4	1.9	15.8
	상위층	44.3	34.4	8.2	13.1	0.0	12.9
업종	편의점	14.8	38.9	27.8	14.8	3.7	20.4
	커피전문점	33.3	29.2	16.7	20.8	0.0	16.2
	음식점	28.0	33.3	23.5	13.6	1.5	16.9
	패스트푸드점	6.0	38.6	30.1	21.7	3.6	22.3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5.3	57.9	15.8	21.1	0.0	19.6
	의류점	37.5	25.0	0.0	25.0	12.5	21.5
	뷰티화장품점	33.3	0.0	33.3	33.3	0.0	22.2
	미용실	20.0	0.0	0.0	20.0	60.0	47.0
	주유소	0.0	18.2	45.5	36.4	0.0	25.4
	PC방	6.3	12.5	25.0	37.5	18.8	30.8
	호프집소주방	20.0	20.0	0.0	60.0	0.0	21.0
	스포츠서비스업	66.0	23.4	4.3	6.4	0.0	9.3
	웨딩 및 뷔페	49.1	39.6	7.5	1.9	1.9	12.0
	기타	59.3	17.3	8.6	12.3	2.5	12.6
전체		31.6	30.9	18.8	15.6	3.1	17.4

표 4 아르바이트 현황 - 급여형태

(단위: %)

		시급제	월급제	일당제	주급제	실적제	기타
학력	학교 밖	81.1	9.9	5.4	2.7	0.9	0.0
	중학교	63.3	3.3	6.7	13.3	13.3	0.0
	고등학교	56.4	22.8	11.0	6.0	3.5	0.3
	기타	75.0	25.0	0.0	0.0	0.0	0.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70.5	17.7	6.8	2.7	2.3	0.0
	중위층	58.2	18.6	11.8	6.5	4.6	0.4
	상위층	47.5	26.2	9.8	13.1	3.3	0.0
업종	편의점	70.4	18.5	1.9	9.3	0.0	0.0
	커피전문점	50.0	33.3	8.3	8.3	0.0	0.0
	음식점	62.9	20.5	9.1	6.1	1.5	0.0
	패스트푸드점	62.7	34.9	2.4	0.0	0.0	0.0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57.9	31.6	5.3	5.3	0.0	0.0
	의류점	75.0	25.0	0.0	0.0	0.0	0.0
	뷰티화장품점	16.7	16.7	50.0	0.0	16.7	0.0
	미용실	40.0	40.0	0.0	0.0	20.0	0.0
	주유소	100.0	0.0	0.0	0.0	0.0	0.0
	PC방	93.8	0.0	0.0	6.3	0.0	0.0
	호프집소주방	80.0	0.0	2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70.2	0.0	2.1	19.1	8.5	0.0
	웨딩 및 뷔페	58.5	3.8	32.1	5.7	0.0	0.0
	기타	46.9	21.0	14.8	2.5	13.6	1.2
전체		61.9	19.1	9.6	5.7	3.5	0.2

【 표 5 】 아르바이트 현황 - 급여형태별 급여액

(단위: 원)

		시급제	일당제	주급제	월급제	실적제	기타
학력	학교 밖	5,105.2	41,666.7	117,333.3	716,363.6	200.0	.
	중학교	5,221.6	14,000	45,000	210,000	5,450	.
	고등학교	5,122.1	39,642.1	82,825	350,600	10,507.1	20,000
	기타	5,473.3	.	.	300,000	.	.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5,143.4	40,200	50,300	399,897.4	22,840	.
	중위층	5,162.2	38,467.7	92,823.5	364,869.4	3,575	20,000
	상위층	4,845.3	37,791.7	80,000	426,250	6,000	.
업종	편의점	4,992.9	20,000	100,400	485,000	.	.
	커피전문점	3,916.7	44,000	63,400	513,750	.	.
	음식점	5,250	33,229.2	82,500	350,222.2	2,250	.
	패스트푸드점	4,926	21,500	.	358,917.2	.	.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5,089.1	40,000	150,000	336,666.7	.	.
	의류점	5,416.7	.	.	1,100,000	.	.
	뷰티화장품점	5,320	50,000	.	200,000	3,000	.
	미용실	5,355	.	.	350,000	5,000	.
	주유소	5,228.2
	PC방	5,240	.	220,000	.	.	.
	호프집소주방	5,125	21,000
	스포츠서비스업	5,127.3	10,000	45,444.4	.	6,250	.
	웨딩 및 뷔페	5,090.2	43,911.8	52,333.3	330,000	.	.
	기타	5,547.9	42,083.3	147,500	334,705.9	11,963.6	20,000
전체		5,126.3	38,889.4	81,283.9	387,448.1	8,900	20,000

【 표 6 】 아르바이트 현황 - 부당경험시 대처방법

(단위: %)

		참고 계속 일함	일을 그만 둠	개인 적으로 고용주에 항의	친구· 지인에게 도움 요청	가족에게 도움 요청	고용 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상당소나 민간 단체에게 도움 요청	교사· 교육청에 도움 요청
학력	학교 밖	88.5	13.5	1.9	0.0	0.0	0.0	0.0	0.0
	중학교	28.6	57.1	28.6	7.1	7.1	0.0	0.0	0.0
	고등학교	64.5	30.8	14.2	10.1	6.5	3.0	1.8	1.2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74.8	23.5	9.2	5.0	5.0	1.7	0.8	0.0
	중위층	58.9	34.7	16.8	12.6	5.3	3.2	1.1	2.1
	상위층	68.2	27.3	13.6	0.0	4.5	0.0	4.5	0.0
근무지	도심권	57.9	52.6	10.5	0.0	0.0	5.3	5.3	5.3
	동북권	61.1	33.3	14.8	7.4	3.7	3.7	0.0	0.0
	서북권	82.5	22.5	17.5	5.0	5.0	2.5	2.5	0.0
	서남권	67.8	23.7	8.5	13.6	6.8	1.7	0.0	0.0
	동남권	63.6	25.5	14.5	5.5	7.3	0.0	1.8	1.8
	기타	88.9	22.2	0.0	11.1	0.0	0.0	0.0	0.0
업종	편의점	93.3	10.0	3.3	3.3	3.3	6.7	3.3	0.0
	커피전문점	50.0	25.0	12.5	25.0	0.0	12.5	12.5	12.5
	음식점	64.8	22.2	11.1	13.0	9.3	1.9	1.9	0.0
	패스트푸드점	84.1	22.7	11.4	6.8	2.3	0.0	0.0	0.0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81.8	27.3	9.1	0.0	18.2	0.0	0.0	9.1
	의류점	33.3	33.3	66.7	0.0	0.0	0.0	0.0	0.0
	뷰티화장품점	100.0	0.0	0.0	0.0	0.0	0.0	0.0	0.0
	미용실	0.0	100.0	50.0	0.0	0.0	0.0	0.0	0.0
	주유소	50.0	50.0	0.0	0.0	0.0	0.0	0.0	0.0
	PC방	50.0	41.7	16.7	0.0	0.0	8.3	0.0	0.0
	호프집소주방	75.0	25.0	25.0	0.0	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17.6	70.6	17.6	5.9	11.8	0.0	0.0	0.0
	웨딩 및 뷔페	55.0	40.0	20.0	10.0	0.0	0.0	0.0	0.0
	기타	75.0	25.0	10.7	7.1	3.6	0.0	0.0	0.0
전체	67.8	28.4	12.7	7.6	5.1	2.1	1.3	0.8	

【 표 7 】 아르바이트 현황 - 산재경험 여부

(단위: %)

		있다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했다	비용이 들지 않음	산재 처리를 했다	본인과 고용주가 반반씩 나누어 부담했다
학력	학교 밖	3.6	25.0	75.0	0.0	0.0	0.0
	중학교	3.3	100.0	0.0	0.0	0.0	0.0
	고등학교	8.5	52.9	20.6	11.8	8.8	5.9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8.6	63.2	21.1	15.8	0.0	0.0
	중위층	7.2	36.8	31.6	5.3	15.8	10.5
	상위층	1.6	100.0	0.0	0.0	0.0	0.0
근무지	도심권	6.8	66.7	0.0	33.3	0.0	0.0
	동북권	6.9	44.4	22.2	11.1	11.1	11.1
	서북권	7.1	50.0	50.0	0.0	0.0	0.0
	서남권	5.3	28.6	42.9	28.6	0.0	0.0
	동남권	10.4	64.3	14.3	0.0	14.3	7.1
	기타	0.0	0.0	0.0	0.0	0.0	0.0
업종	편의점	3.7	0.0	50.0	0.0	50.0	0.0
	커피전문점	12.5	66.7	33.3	0.0	0.0	0.0
	음식점	5.3	57.1	28.6	14.3	0.0	0.0
	패스트푸드점	14.5	50.0	8.3	25.0	0.0	16.7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21.1	25.0	25.0	0.0	50.0	0.0
	의류점	0.0	0.0	0.0	0.0	0.0	0.0
	뷰티화장품점	0.0	0.0	0.0	0.0	0.0	0.0
	미용실	0.0	0.0	0.0	0.0	0.0	0.0
	주유소	27.3	0.0	100.0	0.0	0.0	0.0
	PC방	0.0	0.0	0.0	0.0	0.0	0.0
	호프집소주방	0.0	0.0	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2.1	100.0	0.0	0.0	0.0	0.0
	웨딩 및 뷔페	7.5	100.0	0.0	0.0	0.0	0.0
	기타	3.7	66.7	33.3	0.0	0.0	0.0
	전체		7.2	51.3	25.6	10.3	7.7

【 표 8 】 아르바이트 현황 -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경험

(단위: %)

		사업주로부터				상급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손님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따돌림	폭행	폭언	성희롱	따돌림	폭행	폭언	성희롱	따돌림	폭행
학력	학교 밖	9.0	4.5	0.9	0.0	10.8	3.6	5.4	0.0	29.7	10.8	0.0	2.7
	중학교	6.7	3.3	0.0	0.0	0.0	0.0	0.0	0.0	0.0	0.0	3.3	0.0
	고등학교	4.8	1.0	0.5	0.3	5.3	1.0	0.5	0.0	14.5	2.8	0.0	0.5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6.8	2.3	0.9	0.5	8.2	0.9	2.3	0.0	20.9	5.9	0.5	1.8
	중위층	4.9	1.9	0.0	0.0	4.9	2.3	0.8	0.0	14.5	3.8	0.0	0.0
	상위층	4.9	0.0	1.6	0.0	3.3	0.0	1.6	0.0	13.1	0.0	0.0	1.6
근무지	도심권	4.6	0.0	0.0	0.0	9.1	0.0	2.3	0.0	11.4	2.3	0.0	0.0
	동북권	3.1	1.5	0.0	0.0	2.3	0.8	0.8	0.0	14.5	3.8	0.0	0.8
	서북권	8.3	1.2	0.0	0.0	10.7	1.2	3.6	0.0	28.6	8.3	0.0	1.2
	서남권	3.0	0.8	0.8	0.8	4.5	0.8	0.8	0.0	16.5	3.8	0.8	1.5
	동남권	9.7	4.5	1.5	0.0	8.2	3.7	1.5	0.0	14.2	3.7	0.0	0.8
	기타	5.6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업종	편의점	1.9	0.0	0.0	0.0	1.9	0.0	0.0	0.0	24.1	1.9	0.0	0.0
	커피전문점	8.3	4.2	4.2	0.0	8.3	4.2	4.2	0.0	16.7	4.2	0.0	0.0
	음식점	5.3	0.8	0.8	0.0	3.0	0.8	1.5	0.0	13.6	3.0	0.8	0.8
	패스트푸드점	8.4	0.0	0.0	0.0	14.5	0.0	2.4	0.0	30.1	3.6	0.0	0.0
	제빵제과	10.5	5.3	5.3	0.0	15.8	0.0	0.0	0.0	21.1	10.5	0.0	0.0
	아이스크림점												
	의류점	12.5	12.5	0.0	0.0	12.5	0.0	0.0	0.0	12.5	0.0	0.0	0.0
	뷰티화장품점	0.0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미용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유소	18.2	0.0	0.0	0.0	27.3	27.3	18.2	0.0	36.4	27.3	0.0	0.0
	PC방	6.3	18.8	0.0	0.0	0.0	0.0	0.0	0.0	43.8	18.8	0.0	18.8
	호프집소주방	0.0	0.0	0.0	0.0	0.0	0.0	0.0	0.0	2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2.1	2.1	0.0	0.0	0.0	0.0	0.0	0.0	4.3	4.3	0.0	0.0
	웨딩 및 뷔페	9.4	1.9	0.0	0.0	7.6	1.9	0.0	0.0	9.4	1.9	0.0	0.0
기타	2.5	1.2	0.0	1.2	3.7	2.5	1.2	0.0	8.6	3.7	0.0	1.2	
전체		5.7	1.8	0.6	0.2	6.1	1.5	1.5	0.0	16.9	4.2	0.2	0.9

【 표 9 】 아르바이트 현황 - 성희롱 피해 유형

(단위: %)

		외모·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에 대한 의도적 유포	술자리에 서 술시중 강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줌	성적인 관계 강요
학력	학교 밖	38.5	46.2	46.2	38.5	23.1	0.0	15.4	0.0
	중학교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고등학교	69.2	46.2	15.4	7.7	7.7	15.4	0.0	7.7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42.9	35.7	35.7	21.4	28.6	7.1	0.0	7.1
	중위층	69.2	61.5	30.8	23.1	0.0	7.7	15.4	0.0
	상위층	0.0	0.0	0.0	0.0	0.0	0.0	0.0	0.0
근무지	도심권	0.0	100.0	0.0	0.0	0.0	0.0	0.0	0.0
	동북권	50.0	66.7	50.0	50.0	16.7	0.0	16.7	0.0
	서북권	42.9	42.9	28.6	14.3	14.3	0.0	0.0	0.0
	서남권	80.0	40.0	40.0	0.0	20.0	0.0	20.0	0.0
	동남권	62.5	37.5	25.0	25.0	12.5	25.0	0.0	12.5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업종	편의점	0.0	100.0	0.0	0.0	0.0	0.0	0.0	0.0
	커피전문점	100.0	0.0	0.0	0.0	0.0	0.0	0.0	0.0
	음식점	75.0	50.0	25.0	0.0	0.0	0.0	0.0	0.0
	패스트푸드점	66.7	33.3	0.0	0.0	0.0	0.0	0.0	0.0
	제빵제과	0.0	0.0	50.0	100.0	0.0	0.0	0.0	0.0
	아이스크림점	0.0	0.0	50.0	100.0	0.0	0.0	0.0	0.0
	의류점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뷰티화장품점	0.0	0.0	0.0	0.0	0.0	0.0	0.0	0.0
	미용실	0.0	0.0	0.0	0.0	0.0	0.0	0.0	0.0
	주유소	100.0	100.0	66.7	66.7	0.0	0.0	66.7	0.0
	PC방	0.0	66.7	100.0	0.0	100.0	0.0	0.0	0.0
	호프집소주방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33.3	0.0	0.0	66.7	0.0	0.0	0.0	0.0
	웨딩 및 뷔페	50.0	0.0	0.0	0.0	0.0	50.0	0.0	0.0
	기타	75.0	75.0	25.0	0.0	25.0	25.0	0.0	25.0
전체	55.6	48.1	33.3	22.2	14.8	7.4	7.4	3.7	

표 10 아르바이트 현황 -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법

(단위: %)

		참고 계속 일했다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학력	학교 밖	76.9	30.8	30.8	0.0
	중학교	0.0	100.0	0.0	0.0
	고등학교	69.2	23.1	7.7	7.7
	기타	0.0	0.0	0.0	0.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64.3	35.7	7.1	0.0
	중위층	76.9	23.1	30.8	7.7
	상위층	0.0	0.0	0.0	0.0
근무지	도심권	100.0	0.0	0.0	0.0
	동북권	33.3	66.7	16.7	0.0
	서북권	100.0	0.0	14.3	0.0
	서남권	80.0	20.0	40.0	0.0
	동남권	62.5	37.5	12.5	12.5
	기타	0.0	0.0	0.0	0.0
업종	편의점	100.0	0.0	0.0	0.0
	커피전문점	100.0	0.0	0.0	0.0
	음식점	100.0	25.0	0.0	0.0
	패스트푸드점	66.7	33.3	0.0	0.0
	제빵제과	50.0	50.0	0.0	0.0
	아이스크림점				
	의류점	0.0	100.0	0.0	0.0
	뷰티화장품점	0.0	0.0	0.0	0.0
	미용실	0.0	0.0	0.0	0.0
	주유소	100.0	0.0	100.0	0.0
	PC방	66.7	66.7	0.0	0.0
	호프집소주방	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66.7	33.3	33.3	0.0
	웨딩 및 뷔페	100.0	0.0	0.0	0.0
기타	25.0	25.0	25.0	25.0	
전체		70.4	29.6	18.5	3.7

【 표 11 】 아르바이트 현황 - 아르바이트 경험 후 인식(긍정적 영향)

(단위: %)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5점 평균
학력	학교 밖	0.9	13.5	37.8	45.9	1.8	3.34
	중학교	3.3	10.0	53.3	26.7	6.7	3.23
	고등학교	0.8	6.3	44.6	43.6	4.8	3.45
	기타	0.0	0.0	75.0	25.0	0.0	3.25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1.8	8.6	43.2	42.7	3.6	3.38
	중위층	0.4	6.8	45.6	42.6	4.6	3.44
	상위층	0.0	9.8	39.3	45.9	4.9	3.46
업종	편의점	0.0	14.8	50.0	33.3	1.9	3.22
	커피전문점	4.2	0.0	75.0	16.7	4.2	3.17
	음식점	0.0	5.3	45.5	44.7	4.5	3.48
	패스트푸드점	1.2	8.4	41.0	45.8	3.6	3.42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0.0	5.3	42.1	52.6	0.0	3.47
	의류점	0.0	25.0	37.5	25.0	12.5	3.25
	뷰티화장품점	0.0	16.7	33.3	33.3	16.7	3.50
	미용실	0.0	20.0	40.0	40.0	0.0	3.20
	주유소	0.0	18.2	36.4	45.5	0.0	3.27
	PC방	0.0	25.0	25.0	50.0	0.0	3.25
	호프집소주방	0.0	0.0	60.0	40.0	0.0	3.40
	스포츠서비스업	2.1	10.6	48.9	36.2	2.1	3.26
	웨딩 및 뷔페	1.9	0.0	43.4	47.2	7.5	3.58
	기타	1.2	6.2	34.6	51.9	6.2	3.56
전체		0.9	7.9	43.9	43.0	4.2	3.42

【 표 12 】 아르바이트 현황 - 아르바이트 경험 후 인식(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5점 평균
학력	학교 밖	1.8	18.0	45.9	28.8	5.4	3.18
	중학교	10.0	10.0	36.7	33.3	10.0	3.23
	고등학교	2.8	14.3	40.6	34.1	8.3	3.31
	기타	0.0	25.0	25.0	25.0	25.0	3.5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3.2	17.3	36.4	34.1	9.1	3.29
	중위층	2.7	13.3	46.0	31.2	6.8	3.26
	상위층	3.3	13.1	39.3	36.1	8.2	3.33
업종	편의점	0.0	7.4	51.9	33.3	7.4	3.41
	커피전문점	4.2	4.2	50.0	29.2	12.5	3.42
	음식점	2.3	14.4	43.2	32.6	7.6	3.29
	패스트푸드점	2.4	18.1	32.5	37.3	9.6	3.34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0.0	15.8	36.8	42.1	5.3	3.37
	의류점	12.5	37.5	25.0	12.5	12.5	2.75
	뷰티화장품점	0.0	33.3	33.3	16.7	16.7	3.17
	미용실	0.0	0.0	40.0	40.0	20.0	3.80
	주유소	0.0	27.3	45.5	27.3	0.0	3.00
	PC방	12.5	12.5	68.8	6.3	0.0	2.69
	호프집소주방	20.0	40.0	20.0	0.0	20.0	2.60
	스포츠서비스업	2.1	21.3	42.6	27.7	6.4	3.15
	웨딩 및 뷔페	1.9	13.2	37.7	41.5	5.7	3.36
	기타	4.9	12.3	38.3	35.8	8.6	3.31
전체		2.9	14.9	41.4	32.9	7.9	3.28

【 표 13 】 아르바이트 현황 - 아르바이트 경험 후 인식(돈, 노동의 가치 인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5점 평균
학력	학교 밖	0.9	5.4	31.5	42.3	19.8	3.75
	중학교	3.3	0.0	10.0	30.0	56.7	4.37
	고등학교	0.0	0.5	16.8	44.4	38.3	4.21
	기타	0.0	0.0	0.0	25.0	75.0	4.75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0.9	3.2	18.6	45.0	32.3	4.05
	중위층	0.0	0.4	22.1	41.8	35.7	4.13
	상위층	0.0	0.0	9.8	41.0	49.2	4.39
업종	편의점	0.0	0.0	29.6	44.4	25.9	3.96
	커피전문점	4.2	0.0	37.5	33.3	25.0	3.75
	음식점	0.0	3.8	14.4	43.2	38.6	4.17
	패스트푸드점	0.0	1.2	13.3	47.0	38.6	4.23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0.0	0.0	26.3	42.1	31.6	4.05
	의류점	0.0	0.0	0.0	50.0	50.0	4.50
	뷰티화장품점	0.0	0.0	33.3	33.3	33.3	4.00
	미용실	0.0	0.0	0.0	40.0	60.0	4.60
	주유소	0.0	0.0	81.8	9.1	9.1	3.27
	PC방	0.0	12.5	50.0	37.5	0.0	3.25
	호프집소주방	0.0	0.0	40.0	40.0	20.0	3.80
	스포츠서비스업	0.0	0.0	8.5	53.2	38.3	4.30
	웨딩 및 뷔페	0.0	0.0	13.2	45.3	41.5	4.28
	기타	1.2	0.0	16.0	39.5	43.2	4.23
전체		0.4	1.5	19.3	43.0	35.8	4.13

【 표 14 】 아르바이트 현황 - 아르바이트 경험 후 인식(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5점 평균
학력	학교 밖	0.9	6.3	33.3	52.3	7.2	3.59
	중학교	3.3	0.0	26.7	43.3	26.7	3.90
	고등학교	0.0	2.5	25.1	49.1	23.3	3.93
	기타	0.0	0.0	75.0	25.0	0.0	3.25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0.9	4.5	28.6	47.7	18.2	3.78
	중위층	0.0	2.7	28.9	50.2	18.3	3.84
	상위층	0.0	0.0	14.8	50.8	34.4	4.20
업종	편의점	0.0	1.9	35.2	50.0	13.0	3.74
	커피전문점	4.2	0.0	41.7	25.0	29.2	3.75
	음식점	0.0	2.3	28.0	49.2	20.5	3.88
	패스트푸드점	0.0	1.2	13.3	67.5	18.1	4.02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0.0	5.3	5.3	63.2	26.3	4.11
	의류점	0.0	0.0	37.5	37.5	25.0	3.88
	뷰티화장품점	0.0	16.7	16.7	33.3	33.3	3.83
	미용실	0.0	0.0	20.0	80.0	0.0	3.80
	주유소	0.0	9.1	36.4	45.5	9.1	3.55
	PC방	0.0	25.0	37.5	18.8	18.8	3.31
	호프집소주방	0.0	0.0	60.0	40.0	0.0	3.40
	스포츠서비스업	0.0	4.3	29.8	53.2	12.8	3.74
	웨딩 및 뷔페	0.0	1.9	24.5	45.3	28.3	4.00
	기타	1.2	2.5	30.9	42.0	23.5	3.84
전체		0.4	3.1	27.2	49.3	20.0	3.85

【 표 15 】 아르바이트 현황 - 정책 효과

(단위: %, 점)

		노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				현장 관리·감독 강화				홍보물·매뉴얼 보급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학력	학교 밖	23.4	33.3	43.2	3.20	15.3	49.5	35.1	3.31	15.3	45.0	39.6	3.26
	중학교	26.7	43.3	30.0	3.00	33.3	40.0	26.7	2.83	33.3	43.3	23.3	2.87
	고등학교	15.0	51.6	33.3	3.20	22.1	42.1	35.8	3.17	27.6	46.1	26.3	2.97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24.1	42.3	33.6	3.08	25.9	39.5	34.5	3.13	28.6	40.9	30.5	3.00
	중위층	12.5	52.5	35.0	3.24	16.7	47.5	35.7	3.24	22.8	49.4	27.8	3.06
	상위층	14.8	44.3	41.0	3.33	24.6	41.0	34.4	3.10	27.9	45.9	26.2	2.93
업종	편의점	18.5	48.1	33.3	3.17	25.9	48.1	25.9	3.02	25.9	53.7	20.4	2.91
	커피전문점	16.7	50.0	33.3	3.21	20.8	37.5	41.7	3.25	16.7	58.3	25.0	3.13
	음식점	16.7	47.7	35.6	3.21	18.9	40.2	40.9	3.30	21.2	42.4	36.4	3.16
	패스트푸드점	14.5	51.8	33.7	3.24	20.5	38.6	41.0	3.30	31.3	42.2	26.5	2.96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10.5	42.1	47.4	3.37	21.1	26.3	52.6	3.47	21.1	36.8	42.1	3.21
	의류점	50.0	25.0	25.0	2.75	12.5	37.5	50.0	3.25	25.0	62.5	12.5	2.88
	뷰티화장품점	0.0	33.3	66.7	3.83	0.0	50.0	50.0	3.83	16.7	50.0	33.3	3.50
	미용실	0.0	80.0	20.0	3.20	0.0	60.0	40.0	3.40	0.0	40.0	60.0	3.60
	주유소	36.4	18.2	45.5	3.09	9.1	54.5	36.4	3.27	27.3	36.4	36.4	3.09
	PC방	25.0	37.5	37.5	3.13	6.3	62.5	31.3	3.25	12.5	37.5	50.0	3.38
	호프집소주방	20.0	60.0	20.0	3.00	0.0	80.0	20.0	3.20	20.0	60.0	20.0	3.00
	스포츠서비스업	19.1	48.9	31.9	3.06	27.7	51.1	21.3	2.83	23.4	55.3	21.3	2.91
	웨딩 및 뷔페	13.2	54.7	32.1	3.17	20.8	49.1	30.2	3.11	28.3	41.5	30.2	3.02
	기타	19.8	43.2	37.0	3.17	29.6	40.7	29.6	3.00	35.8	44.4	19.8	2.78
	전체	17.5	47.4	35.1	3.19	21.3	43.6	35.1	3.18	25.7	45.6	28.7	3.02

【 표 16 】 아르바이트 현황 - 정책 효과(계속)

(단위: %)

		캠페인				청년 권리장전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업종 선정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학력	학교 밖	16.2	54.1	29.7	3.22	15.3	37.8	46.8	3.32	17.1	36.9	45.9	3.35
	중학교	26.7	60.0	13.3	2.80	26.7	60.0	13.3	2.80	26.7	46.7	26.7	2.93
	고등학교	26.1	48.6	25.3	2.99	23.1	47.9	29.1	3.08	15.3	42.9	41.9	3.31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26.8	48.2	25.0	2.98	27.3	41.8	30.9	3.02	22.3	37.7	40.0	3.21
	중위층	21.3	52.5	26.2	3.07	15.6	52.1	32.3	3.20	11.8	46.8	41.4	3.34
	상위층	26.2	49.2	24.6	2.98	27.9	39.3	32.8	3.03	16.4	34.4	49.2	3.39
업종	편의점	24.1	51.9	24.1	3.00	27.8	42.6	29.6	3.04	25.9	42.6	31.5	3.15
	커피전문점	25.0	50.0	25.0	3.00	20.8	54.2	25.0	3.08	16.7	50.0	33.3	3.29
	음식점	24.2	46.2	29.5	3.12	16.7	43.9	39.4	3.26	16.7	40.2	43.2	3.31
	패스트푸드점	27.7	45.8	26.5	3.01	30.1	38.6	31.3	3.04	15.7	34.9	49.4	3.41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26.3	26.3	47.4	3.21	31.6	42.1	26.3	3.05	26.3	15.8	57.9	3.21
	의류점	12.5	62.5	25.0	3.13	12.5	62.5	25.0	3.13	12.5	62.5	25.0	3.13
	뷰티화장품점	0.0	83.3	16.7	3.33	0.0	66.7	33.3	3.67	0.0	33.3	66.7	4.00
	미용실	0.0	100.0	0.0	3.00	0.0	60.0	40.0	3.40	0.0	80.0	20.0	3.20
	주유소	0.0	72.7	27.3	3.27	0.0	27.3	72.7	3.73	0.0	54.5	45.5	3.45
	PC방	6.3	87.5	6.3	3.00	0.0	50.0	50.0	3.50	12.5	37.5	50.0	3.38
	호프집소주방	0.0	100.0	0.0	3.00	0.0	40.0	60.0	3.60	0.0	80.0	20.0	3.20
	스포츠서비스업	25.5	42.6	31.9	2.98	19.1	48.9	31.9	3.06	17.0	42.6	40.4	3.21
	웨딩 및 뷔페	22.6	56.6	20.8	3.00	20.8	56.6	22.6	3.06	15.1	49.1	35.8	3.34
	기타	32.1	46.9	21.0	2.84	29.6	50.6	19.8	2.81	16.0	42.0	42.0	3.22
	전체	24.1	50.4	25.6	3.02	21.7	46.5	31.8	3.11	16.5	41.7	41.7	3.29

표 17 아르바이트 현황 - 정책 효과(계속)

(단위: %)

		무료 건강검진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5점 평균
학력	학교 밖	9.9	36.0	54.1	3.52	18.0	34.2	47.7	3.34	13.5	50.5	36.0	3.28
	중학교	23.3	43.3	33.3	3.10	23.3	56.7	20.0	2.90	23.3	56.7	20.0	3.00
	고등학교	19.3	37.1	43.6	3.34	18.0	44.9	37.1	3.23	21.3	47.9	30.8	3.1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19.5	34.5	45.9	3.37	25.0	35.5	39.5	3.15	23.2	49.5	27.3	3.03
	중위층	15.6	40.7	43.7	3.35	12.2	51.3	36.5	3.29	15.6	51.0	33.5	3.22
	상위층	18.0	32.8	49.2	3.46	23.0	34.4	42.6	3.30	26.2	36.1	37.7	3.11
업종	편의점	18.5	48.1	33.3	3.17	24.1	46.3	29.6	3.06	18.5	53.7	27.8	3.09
	커피전문점	12.5	50.0	37.5	3.38	16.7	50.0	33.3	3.33	16.7	54.2	29.2	3.17
	음식점	16.7	32.6	50.8	3.45	22.7	37.9	39.4	3.20	25.0	49.2	25.8	3.02
	패스트푸드점	15.7	26.5	57.8	3.58	15.7	38.6	45.8	3.33	18.1	42.2	39.8	3.27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21.1	31.6	47.4	3.37	31.6	31.6	36.8	3.00	26.3	31.6	42.1	3.11
	의류점	25.0	37.5	37.5	3.13	12.5	50.0	37.5	3.13	12.5	50.0	37.5	3.38
	뷰티화장품점	0.0	66.7	33.3	3.67	0.0	50.0	50.0	3.83	0.0	50.0	50.0	3.67
	미용실	0.0	60.0	40.0	3.40	20.0	40.0	40.0	3.20	20.0	60.0	20.0	3.00
	주유소	18.2	27.3	54.5	3.64	0.0	54.5	45.5	3.73	0.0	63.6	36.4	3.45
	PC방	0.0	56.3	43.8	3.63	6.3	43.8	50.0	3.56	0.0	75.0	25.0	3.31
	호프집소주방	0.0	80.0	20.0	3.20	0.0	60.0	40.0	3.60	0.0	100.0	0.0	3.00
	스포츠서비스업	23.4	42.6	34.0	3.09	23.4	46.8	29.8	3.04	14.9	48.9	36.2	3.21
	웨딩 및 뷔페	22.6	43.4	34.0	3.25	13.2	49.1	37.7	3.30	17.0	54.7	28.3	3.15
	기타	19.8	30.9	49.4	3.32	17.3	44.4	38.3	3.21	28.4	38.3	33.3	3.04
	전체	17.5	37.3	45.2	3.37	18.6	43.0	38.4	3.23	19.9	48.7	31.4	3.13

【 표 18 】 아르바이트 현황 -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 순위

(단위: %)

1순위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제공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정부가 직접 아르바이트 정보제공과 알선	안심 알바 모니터링단 운영	정기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 권익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학력	학교 밖	38.7	10.8	21.6	2.7	2.7	5.4
	중학교	46.7	20.0	10.0	10.0	3.3	3.3
	고등학교	46.9	18.0	7.5	7.0	4.5	3.8
	기타	25.0	25.0	25.0	0.0	0.0	0.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47.3	15.0	11.8	4.1	4.1	3.2
	중위층	41.4	17.5	10.6	8.4	4.2	4.2
	상위층	52.5	19.7	6.6	4.9	3.3	6.6
업종	편의점	44.4	0.0	11.1	3.7	3.7	13.0
	커피전문점	16.7	20.8	16.7	8.3	4.2	12.5
	음식점	47.0	15.2	9.8	8.3	0.0	3.0
	패스트푸드점	43.4	19.3	9.6	4.8	4.8	4.8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10.5	10.5	31.6	10.5	21.1	0.0
	의류점	50.0	0.0	25.0	12.5	12.5	0.0
	뷰티화장품점	50.0	50.0	0.0	0.0	0.0	0.0
	미용실	80.0	20.0	0.0	0.0	0.0	0.0
	주유소	36.4	0.0	45.5	18.2	0.0	0.0
	PC방	50.0	25.0	6.3	6.3	0.0	0.0
	호프집소주방	60.0	20.0	0.0	2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55.3	17.0	6.4	2.1	4.3	4.3
	웨딩 및 뷔페	50.9	18.9	7.5	3.8	9.4	3.8
	기타	46.9	25.9	7.4	6.2	3.7	0.0
전체	45.0	16.7	10.7	6.3	4.0	4.0	

【 표 19 】 아르바이트 현황 -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 순위(계속)

(단위: %)

1순위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의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	고용주, 아르바이트 청소년, 교사 대상 인권 교육	아르바이트와 향후 진로와 연계 강화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신고센터 등의 확대	청소년 놀이공간·문화공간 확대	기타
학력	학교 밖	4.5	1.8	7.2	2.7	1.8	0.0
	중학교	3.3	0.0	0.0	3.3	0.0	0.0
	고등학교	3.3	3.0	1.5	2.0	2.3	0.3
	기타	0.0	25.0	0.0	0.0	0.0	0.0
주관적 경제 수준	하위층	3.6	0.9	4.5	1.8	3.6	0.0
	중위층	3.4	4.9	1.5	2.7	1.1	0.0
	상위층	3.3	0.0	0.0	1.6	0.0	1.6
업종	편의점	11.1	3.7	5.6	1.9	1.9	0.0
	커피전문점	0.0	8.3	0.0	4.2	8.3	0.0
	음식점	5.3	3.0	2.3	3.8	2.3	0.0
	패스트푸드점	1.2	2.4	6.0	2.4	1.2	0.0
	제빵제과	0.0	5.3	5.3	5.3	0.0	0.0
	아이스크림점	0.0	0.0	0.0	0.0	0.0	0.0
	의류점	0.0	0.0	0.0	0.0	0.0	0.0
	뷰티화장품점	0.0	0.0	0.0	0.0	0.0	0.0
	미용실	0.0	0.0	0.0	0.0	0.0	0.0
	주유소	0.0	0.0	0.0	0.0	0.0	0.0
	PC방	12.5	0.0	0.0	0.0	0.0	0.0
	호프집소주방	0.0	0.0	0.0	0.0	0.0	0.0
	스포츠서비스업	4.3	2.1	0.0	0.0	4.3	0.0
	웨딩 및 뷔페	1.9	0.0	1.9	1.9	0.0	0.0
기타	0.0	3.7	1.2	1.2	2.5	1.2	
전체		3.5	2.8	2.6	2.2	2.0	0.2

2014 정책연구-09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정책방안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김송이
발행일 2014년 12월
인쇄처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30-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